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90-14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2017. 8





# 발 간 사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아, 무역의 발전이 지속적인 국가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 교토협약 등 국제무역환경은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관세행정으로 인해 수출입기업은 성실신고 의지가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기업의 동반자로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정확한 납세신고 뿐만 아니라, 수출입절차 전반에 대하여 성실신고 방법을 분야별로 보다 상세하게 수록한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으로 변경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수출입기업 여러분들께서 수출입통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침서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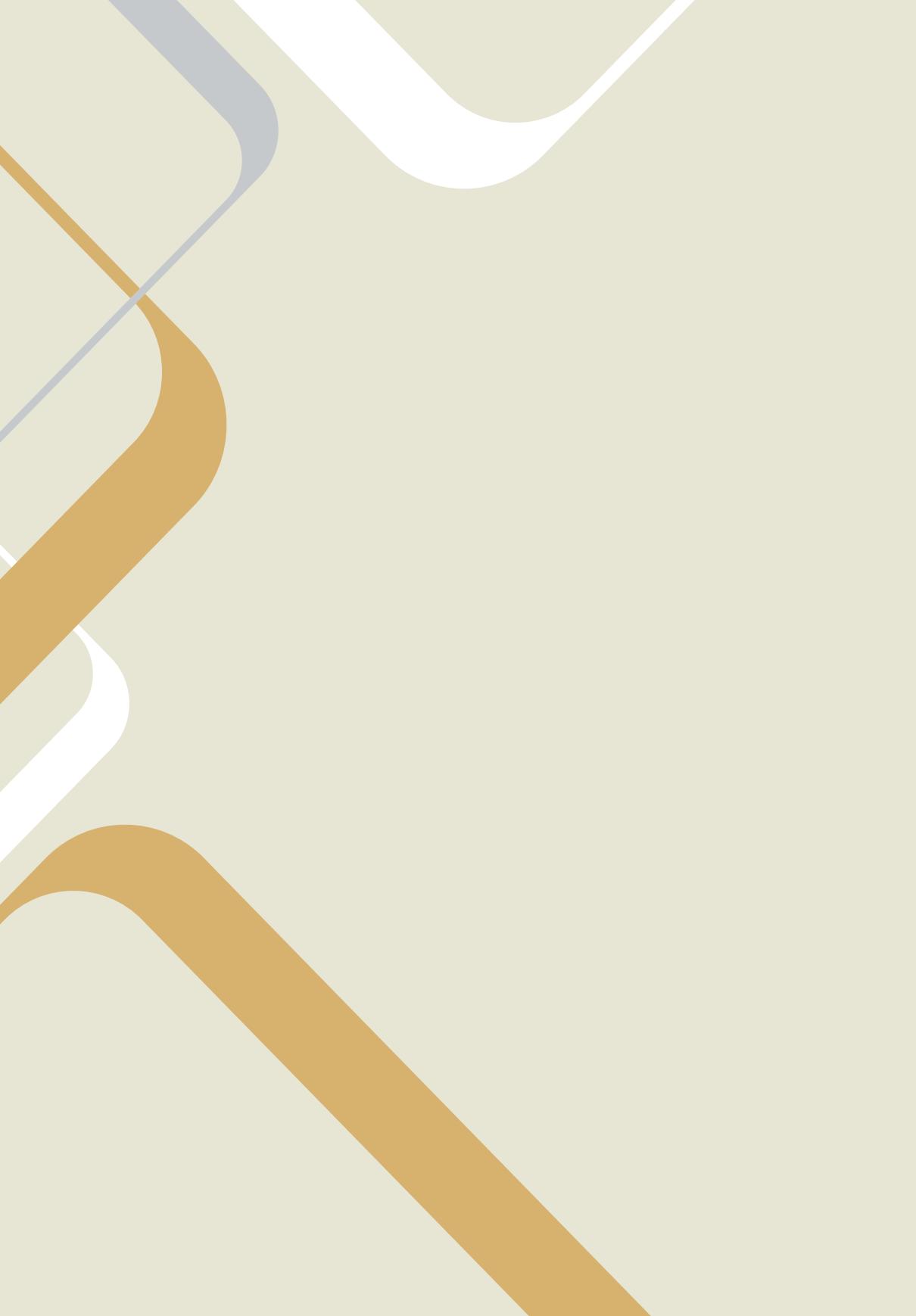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역거래를 영위하는 가운데 경제 활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 운영의 소중한 재원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관 세 청 장 김 영 문





# 들어가기

## 성실신고란 ...

수입신고는 수입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자는 스스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납부할 세액과 수입요건 등을 신고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세관은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통관 후에도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신고한 사항에 오류가 있어 통관 후 세관으로부터 세액을 추징당하거나 사법처리 등을 받는 경우 수입자는 판매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행정제재를 받게 되어 기업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기업은 관세법과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들을 성실하게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수출입기업과의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여 관세제도를 안내하거나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 준비 단계부터 오류를 점검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이 알아야 할 관세에 관한 사항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2017년도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성실신고 가이드북』은 정확한 납세신고뿐만 아니라, 수출입절차 전반에 대한 성실신고 방법을 분야별로 보다 상세하게 수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책자는 수출입기업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록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세법 또는 관계 법령을 참고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수록사항에 대하여는 책자 내용 중 「문의처」 또는 『125 관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5번)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성실신고의 필요성

1. 성실신고는 기업경영의 기본입니다	13
----------------------	----

## II.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1. 품목분류 미리 확인받으면 편해요	17
2. 과세가격 미리 확인받으세요	21
3.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안내	24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28
5. 원산지 사전심사로 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	31
6. 관세 종합상담 해드립니다	32

## III. 수출입통관 안내

1. 수입통관 안내	35
2. 수출통관 안내	44
3. 특송물품 · 우편물 통관 안내	48
4. 가격신고 안내	52
5. 납세신고와 납부방법	54
6. 관세감면과 사후관리	57
7.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60

## IV. FTA 활용 안내

1.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66
2. 원산지결정기준, 꼭 확인하세요	68
3.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활용의 필수입니다	69
4. 원산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71
5. YES FTA 전문교육	74

## V. 기업부담 완화제도

1. 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77
2. 관세환급, 꼭 챙겨 주세요	81

3. 분할납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85
4.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86
5. New Start Plan 2017	88
6. 해외통관 애로 해소해 드려요	91
7. 일자리 창출기업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93

## VI. 성실신고 이행 확인

1. 기업부담이 완화되는 보정제도	97
2. 성실신고 확인하는 관세조사	99
3.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102
4. AEO 종합심사	104
5. 원산지 표시 확인	105
6. FTA 특혜 확인하는 원산지검증	108

## VII. 성실신고 불이행시

1.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115
2. 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117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119
4. 통관적법성 위반사례에 유의하세요	120

## VIII. 납세자 권리보호

1.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127
2. FTA 원산지검증시 납세자 권리보호 받으세요	130
3.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132
4.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133
5. 사후구제 절차도 알아두세요	134

## 부 록

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	135
2.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141
3.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187
4.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399
5. 관세·수출입업무 관련 연락처 모음	405

# I

## 성실신고의 필요성

01

성실신고는 기업경영의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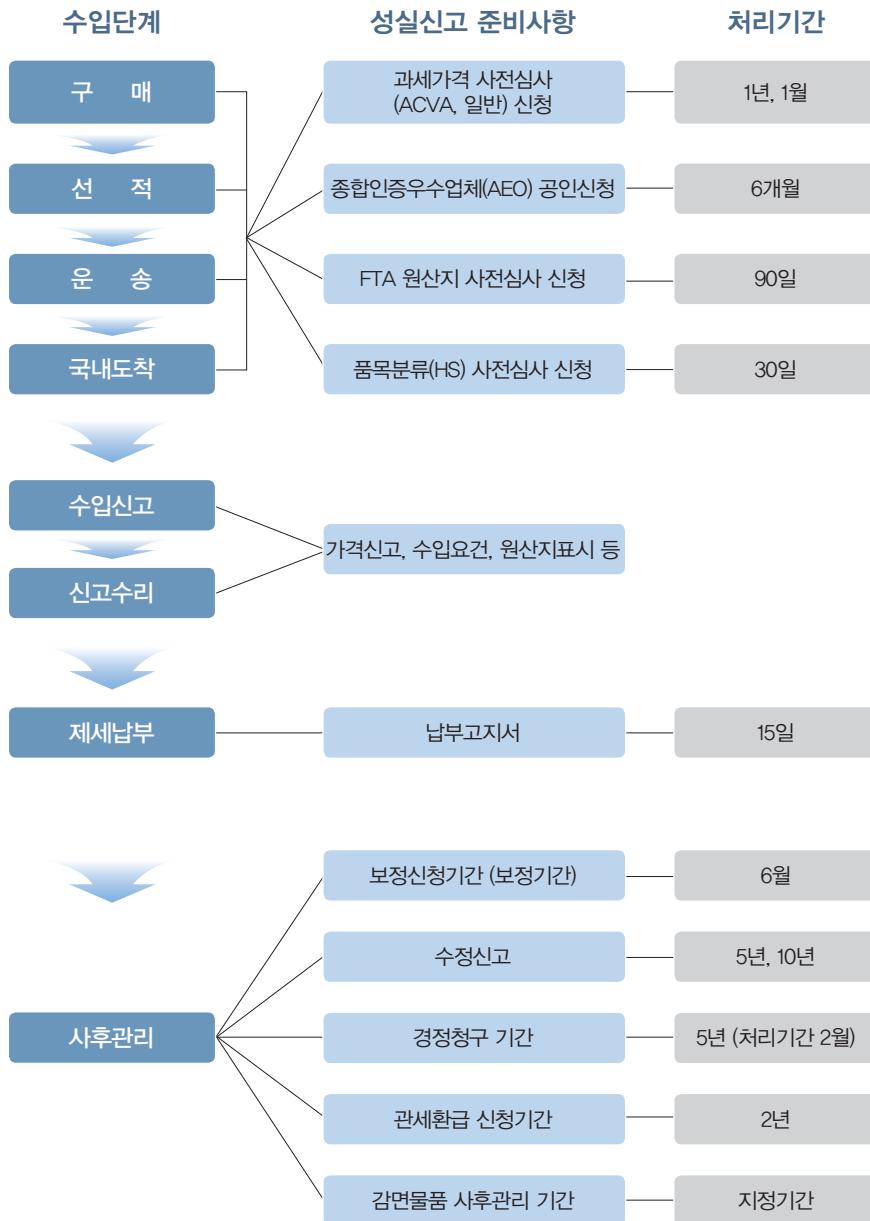
01

## 성실신고는 기업경영의 기본입니다

## 관세의 성실신고는 스스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수입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 세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세관장은 통관단계에서 국민보건·사회안전·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 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 신고오류로 통관 후 관세 등을 추징당하거나 행정·사법상 제재 등을 받는 경우 수입자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세관의 엄격한 통관 관리로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수입자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 준비단계부터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고객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 ▶ 또한, 관련 부서간에 거래가격, 외환, 통관요건 등 수입정보를 서로 공유하여야 하며,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관세사 등에게 정확한 수입거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수입자의 성실한 관세신고는 기업의 이미지를 한 단계 상향시킬 수 있는 기회 이자 관세당국과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 ■■■ 무역거래를 준비하면서 관세 성실신고도 준비하세요.



## II

# 통관 이전 성실신고 안내

- 01 품목분류 미리 확인받으면 편해요
- 02 과세가격 미리 확인받으세요
- 03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안내
- 0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 05 원산지 사전심사로 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
- 06 관세 종합상담 해드립니다





01

## 품목분류 미리 확인받으면 편해요

## III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됩니다.
- WTO에 가입된 회원국은 HS 체약국이 되며,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

- HS코드**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이며, 관세법에서 별표 관세율표에 HS코드를 반영·시행
-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 HSK(HS of KOREA)는 한국의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이며 HS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한 10단위 분류체계를 갖춤 (EU-8단위, 일본-9단위)

## III 품목분류표 기본구조



### ☰ 품목분류사전심사의 의의

- ▶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수출입 하려는 자가 수출입 하려는 물품이 HS품목분류 표상 어느 번호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 회신받는 제도입니다.

### ☰ 사전심사신청자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대상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입니다.

### ☰ 사전심사 신청시기

- ▶ 동일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 사전심사 분석수수료

- ▶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구성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신청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III 사전심사 처리기한

- ▶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 조기심사 신청 대상

-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사전심사 신청하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지연 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 제출된 신청서와 결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요구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II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된 품목분류 번호는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관세법시행령 제107조의 품목분류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품목분류의 변경사실을 통지합니다.
- ▶ 다만, 이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로 수출·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품목분류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II 사전심사신청 준비와 심사절차

### ▶ 신청인 준비사항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1부
- 물품설명서 1부(용도설명서, 성분함량표 및 제조공정도 포함)
- 견본 1점(분말제품 및 액상제품 – 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분말 500g 이상, 액상 500ml 이상)  
※ 견본제출이 어려운 기계류 등은 사유서와 대체사진 3매 제출

### ▶ 신청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우편, 직접 접수
  - 관세평가분류원(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214, ☎ 042-714-7535, Fax 042-936-3528)

## III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처리 절차



02

## 과세가격 미리 확인받으세요

## III 관세평가

- ▶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가격과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II 과세가격 결정방법

- ▶ 관세법 제30조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하여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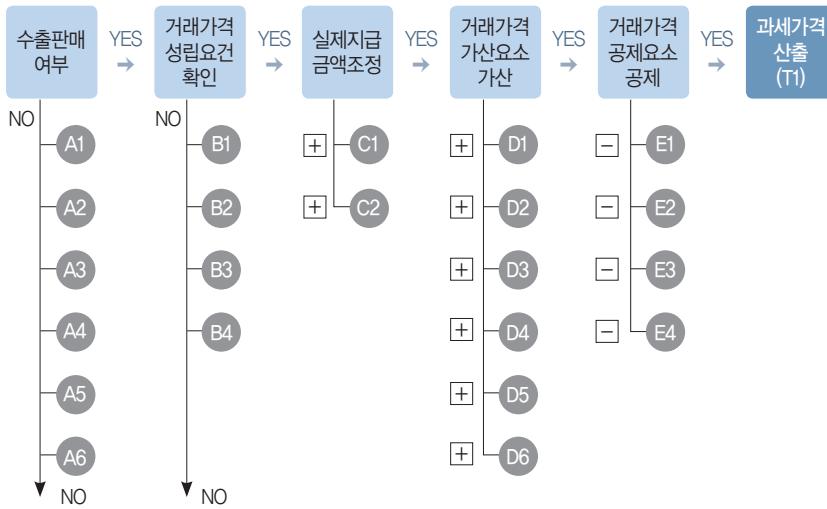
## 거래가격 가산요소

- ① 수수료 및 중개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②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 ③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 ④ 권리사용료 (Royalty)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는 제외한다)
- ⑤ 사후귀속이익
- ⑥ 운임 및 보험료

- ▶ 관세법 제30조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산정가격(제5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으로 제4방법, 제5방법 적용순서는 바꿀 수 있음)

과세가격 결정방법 체계도



기타의 과세가격  
T2, T3, T4, T5, T6의  
순차적 적용

T1 : 실제지급금액을 기초한 과세가격  
T2 : 동종 ·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  
T3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한 과세가격  
T4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T5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T6 : 합리적인 과세가격

C1 : 별도로 지급한 금액  
(채무변제액, 상계액)  
C2 : 간접지급금액

A1 : 무상 수입물품이 아님  
A2 : 판매위탁 수입물품이 아님  
A3 : 수출자 책임판매물품이 아님  
A4 :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아님  
A5 : 유 · 무상 임대차물품이 아님  
A6 : 송화주 부담 파기물품이 아님

D1 : 수수료 및 증개료  
D2 : 용기 및 포장비용  
D3 : 생산지원비용  
D4 :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D5 : 사후귀속이익  
D6 : 운임 및 보험료

B1 : 수입물품의 사용 · 처분의 제한 없음  
B2 : 특별한 조건 · 사정으로 가격에 영향 없음  
B3 :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없음  
B4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1 : 수입후 설치 등 비용  
E2 : 수입 이후의 운송비용  
E3 : 수입국 제세 · 공과금  
E4 : 연불이자

## III 과세가격 심사제도를 활용하세요.

-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독립당사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 APR: Advance Pricing Rule)와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특수관계 사전심사;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로 구분됩니다.

### 【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비교】

구 분	일반 사전심사(APR)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심사대상	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심사기간	30일	1년
시행시기	1990. 12. 31	2008. 1. 1
신청자격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사·관계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세자 * 1회성 수입물품은 APR로 신청
심사절차	일방 결정	납세자 협의 → 동의 → 승인
심사담당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본부세관)
주요 심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지급금액 및 가산·공제요소 확인</li> <li>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 (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 귀속이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li> <li>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제6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li> <li>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li> <li>과세가격 적정성 여부</li> </ul>
잠정신고	적용대상 아님	신청시점에 잠정가격신고하고, 승인내용으로 확정가격신고
가산세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승인기간 가산세 면제</li> <li>승인내역으로 신청이전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10% 면제</li> </ul>
유효기간	3년 (확인물품에 한함)	3년 (승인내역과 동일 거래물품)
사후관리	해당없음	연례보고서 제출
법적근거	관세법 제37조제1항제1, 2호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03

##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안내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 ▶ 관세 과세가격의 1차적인 기초는 거래가격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 다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의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독점대리인 등의 경우에도 '특수관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자로 간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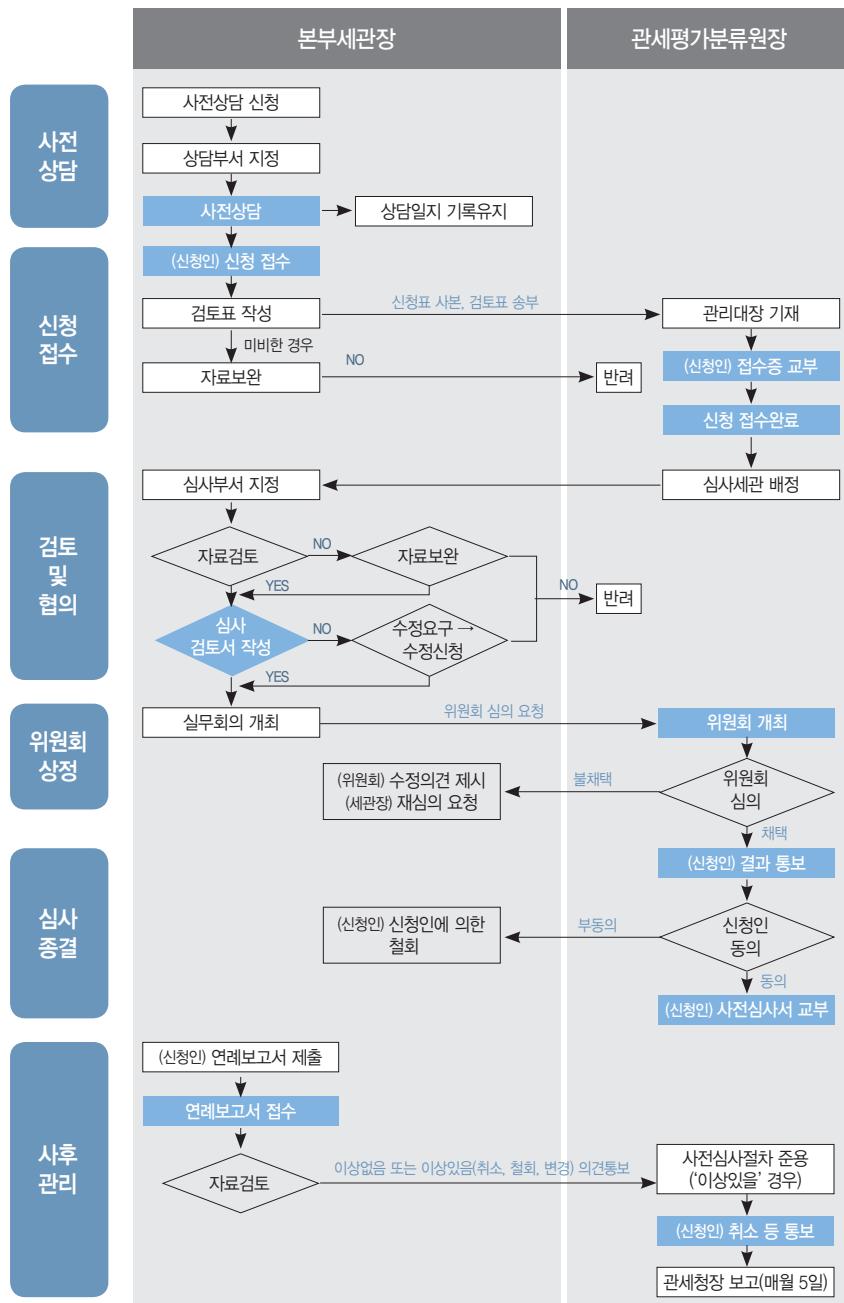
### ■■■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의 의의

- ▶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입니다.

### ■■■ ACVA 제도는 납세자 · 과세당국 모두 유익합니다.



## ACVA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CVA 이용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 ACVA 신청물품은 신청시점부터 승인시점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승인내역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 납부가 면제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ACVA 사전심사기간 동안 세관의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ACVA 업체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4
- ☎ 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32-452-3312
- ☎ 서울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2-510-1218
- ☎ 부산본부세관 심사총괄과 051-620-6313
- ☎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21
- ☎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72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품목분류/관세평가 > ACVA 및 관세평가자료실

## 04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 III AEO의 개념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 III AEO의 혜택

- ▶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 III AEO 공인신청

- ▶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 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 ▶ AEO 공인신청은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sup>\*</sup>를 첨부하여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①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III AEO 공인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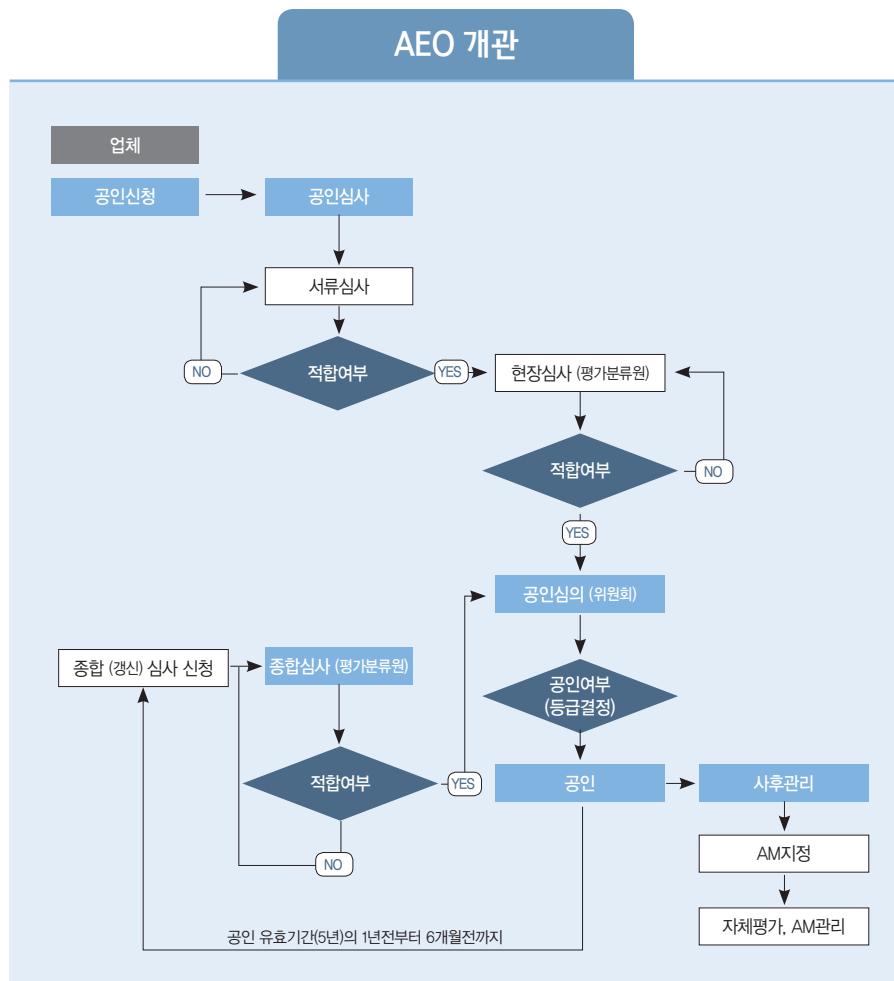
- ▶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84

한국AEO진흥협회 02-701-3325



05

## 원산지 사전심사로 안전하게 FTA 활용하세요

## III 원산지 사전심사 처리 절차도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제출 (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li> <li>수수료 : 3만원</li> </ul>
접수	신청서류 미비여부 확인	접수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류 확인</li> </ul>
	보정 및 반려	접수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정 : 5일이상의 기간</li> <li>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반려</li> </ul>
	사전신청 접수처리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및 수수료 납부 확인</li> </ul>
검토 결정	신청내용 사전심사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0일 이내 법정처리</li> </ul>
	보정 및 반려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정 : 5일이상의 기간</li> <li>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반려</li> </ul>
	담당부서 심사 · 검토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초 담당부서 결과를 취합하여 통지 · 공표</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리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li> </ul>
	위원회 상정 · 검토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상정 : 담당부서에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 (예 : 원산지확인위원회)</li> </ul>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li> <li>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li> </ul>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 등 사전심사 공표시스템 (FTA 포털)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li> </ul>
사후 관리	이의제기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li> <li>이의제기 기간 : 받은날로부터 30일</li> </ul>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li> <li>보정요구 가능 : 20일 이내</li> </ul>
	사전심사 변경	신청인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실관계, 상황변경의 등의 경우 사전심사내용 변경 · 철회</li> </ul>

06

## 관세 종합상담 해드립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에 대한 모든 분야(수출입 통관, FTA, 품목분류, 평가·감면, 특송물품·휴대품 통관, 보세화물, 환급 등)에 걸쳐 “one-call,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 (해외: 82-2-3438-5199)
- 2014.12. 밀수신고센터와 관세청 125콜센터로 통합운영되어 밀수신고는 “10”번을, 관세상담은 “20”번을 누르면 연결됩니다.
-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가능하며(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야간, 휴일에는 ARS로 사전예약을 받아 다음날 우선 상담해 드립니다.

### 인터넷상담을 원하시면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al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상담코너에서 상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같은 홈페이지 인터넷상담코너의 ① 상담사례조회(Q&A) / ② 자주하는질문(FAQ)을 검색하여 유사상담사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 전화예약(02-3438-5113) 후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2동 706호

### III

## 수출입통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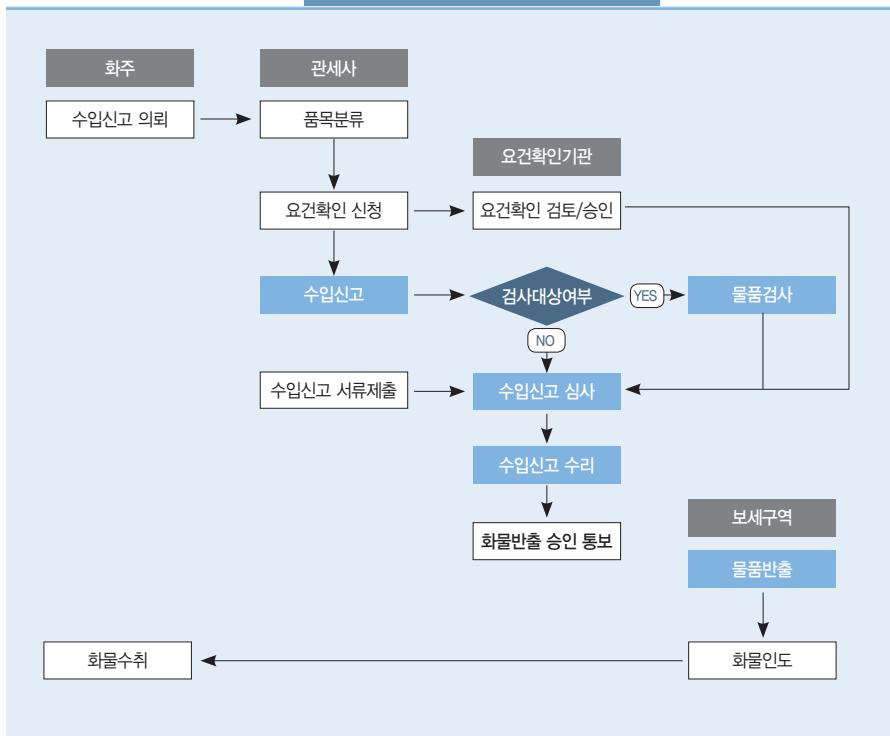
- 01 [수입통관 안내](#)
- 02 [수출통관 안내](#)
- 03 [특송물품 · 우편물 통관 안내](#)
- 04 [가격신고 안내](#)
- 05 [납세신고와 납부방법](#)
- 06 [관세감면과 사후관리](#)
- 07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01 수입통관 안내

### 수입 개관



### III 수입통관

- ▶ **수입통관**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III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 ▶ **신고방법** : 관세청 전산시스템(INTERNET<sup>\*</sup>)에 자료전송  
※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
-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화주)
-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①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②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 III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편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 III 신고수리

-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완요구 사유

- ①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 ②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③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 통관보류 사유

- ①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관세법칙령으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④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 ⑤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 ▶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III 물품반출

## ▶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

## III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기타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III. 수출입통관 안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해당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한약재  (라) 동물용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 보고서</li> <li>○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li> <li>○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li> <li>○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ul>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li> </ul>
(3)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li> </ul>
(4)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삭제</li> </ul>
(5)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li> </ul>
(6)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 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li> </ul>
(7) 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li> </ul>
(8) 축산물위생관리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소장 포함)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li> </ul>
(9)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나)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확인서</li> <li>○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li> <li>○ 제조자·수입업자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li> </ul>
(10)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li> </ul>
(11) 「오존층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li> </ul>
(12)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li> <li>○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li> </ul>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14) 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취급제한물질 (나) 취급금지물품 (다) 탈크 (라) 유독물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 ○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취급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 확인증
(15)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16)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1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8) 아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수입허가서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0)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 검사대상물품	○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종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21)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22)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가) 식량작물종자 (나) 채소종자 (다) 버섯종균 (라) 약용종자 (마) 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 요건확인서 ○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 요건확인서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 III. 수출입통관 안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23) 화장품법 해당물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수입 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가) 의료기기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 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나) 동물용 의료기기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2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7)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공산품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28)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29)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가) 석면함유제품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의 확인서
(나) 제조등 금지물질 (다) 안전인증대상제품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 심사결과 적합확인서
(30) 「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3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32)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신고확인서
(33) 전파법 해당물품 (가)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 (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3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중 고위험병원체	○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당물품중 고압가스용기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li> <li>○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li> </ul>

### III 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세요.

▶ 현행 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및 근거
국정관세율	기본관세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잠정관세율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
	탄력관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5조(제73조 제외)에 근거
협정관세율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

▶ 관세율의 적용 순위에 유의하세요.

순위	적용 관세율	비고
1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2	편의관세, 국제협력관세	3, 4, 5, 6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단, 국제협력관세 중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는 예외
3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단, 할당관세는 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4	일반특혜관세	
5	잠정관세	
6	기본관세	

## ■■■ 특정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간이세율

-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 (1)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관세가 무세인 경우는 제외)
- 탁송품 또는 별송품

#### (2) 간이세율적용 제외물품

-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 관세법의 범칙 행위에 관련된 물품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화주가 수입신고시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물품

### ▶ 합의에 의한 세율

-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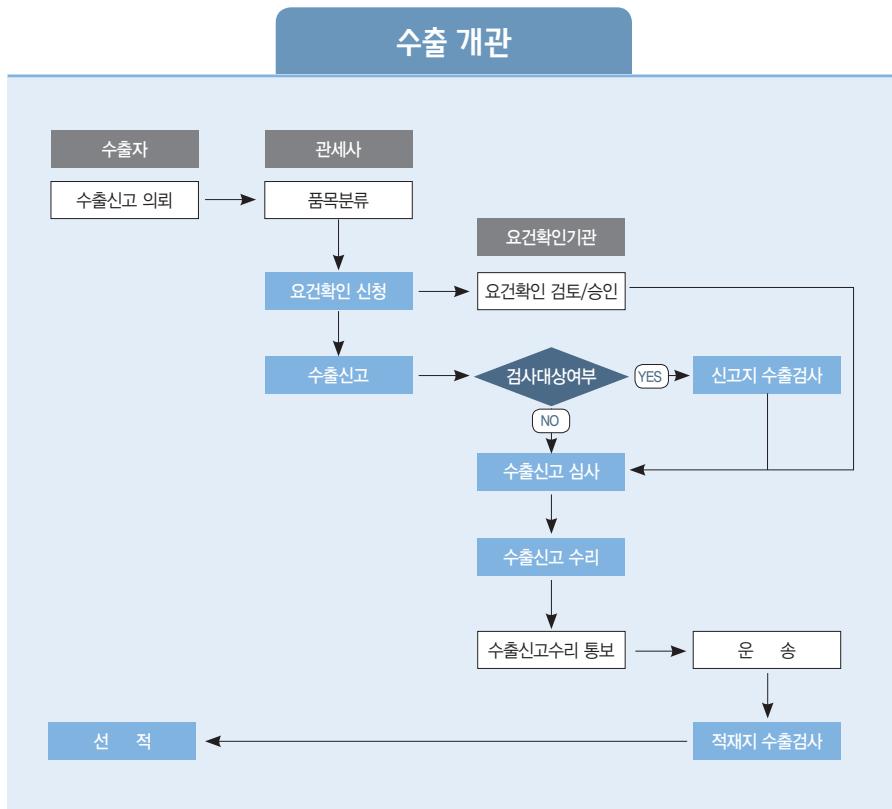
### ▶ 용도세율

-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통관 흐름도



## 02 수출통관 안내



### III 수출신고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 수출신고시 관세법 ·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 ■■■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혐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 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2017.4월)
-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수출신고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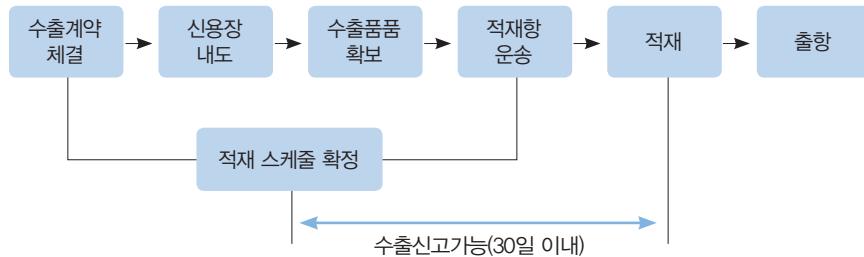
-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대상 물품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2)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7)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9) 원자력안전법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0)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1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삼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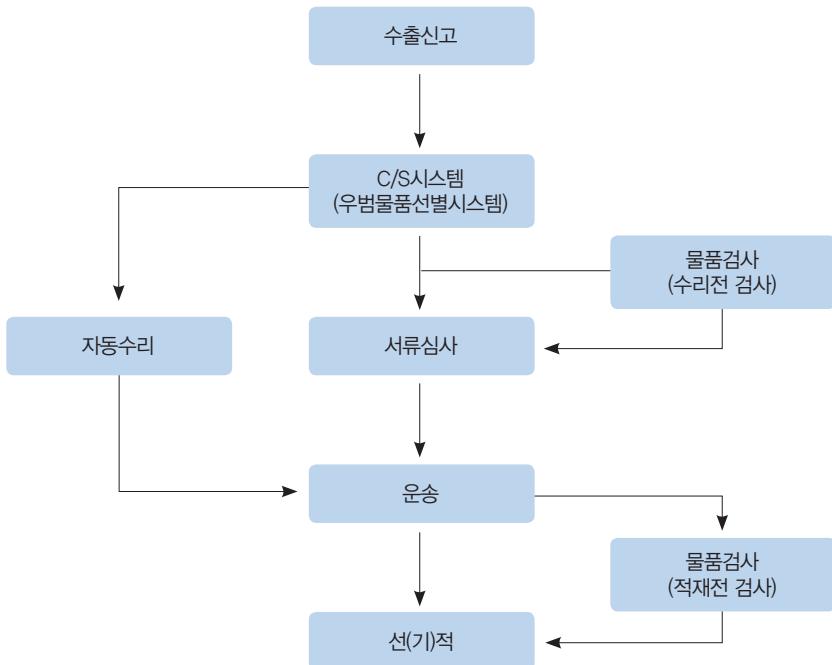
## III 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

- ▶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 수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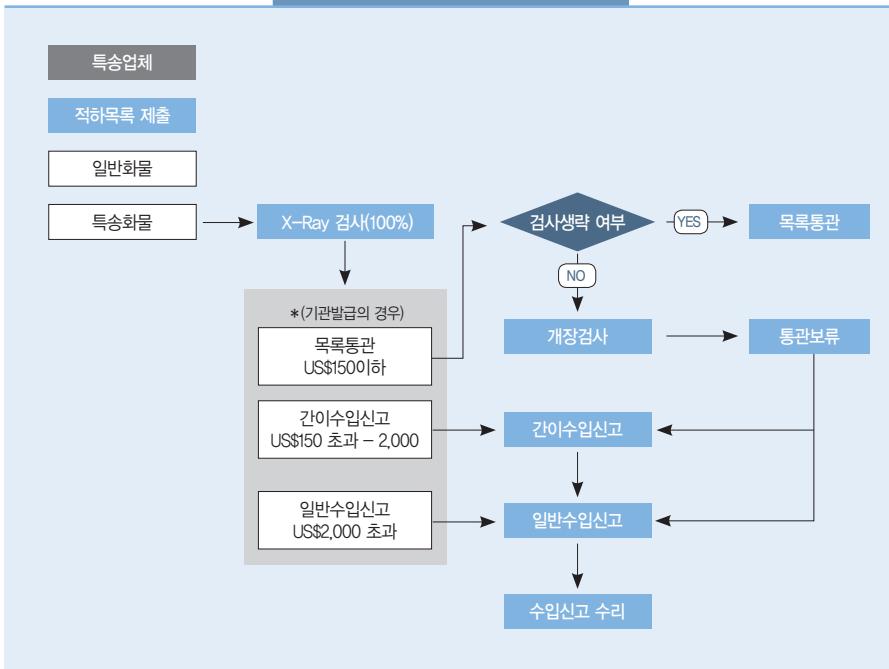
### ▶ 수출통관 흐름도



03

## 특송물품 · 우편물 통관 안내

### 특송물품 수입개관



### III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다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 · 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III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 ▶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 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 없습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 · 주류 · 담배류 ⑧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대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 ▶ 간이수입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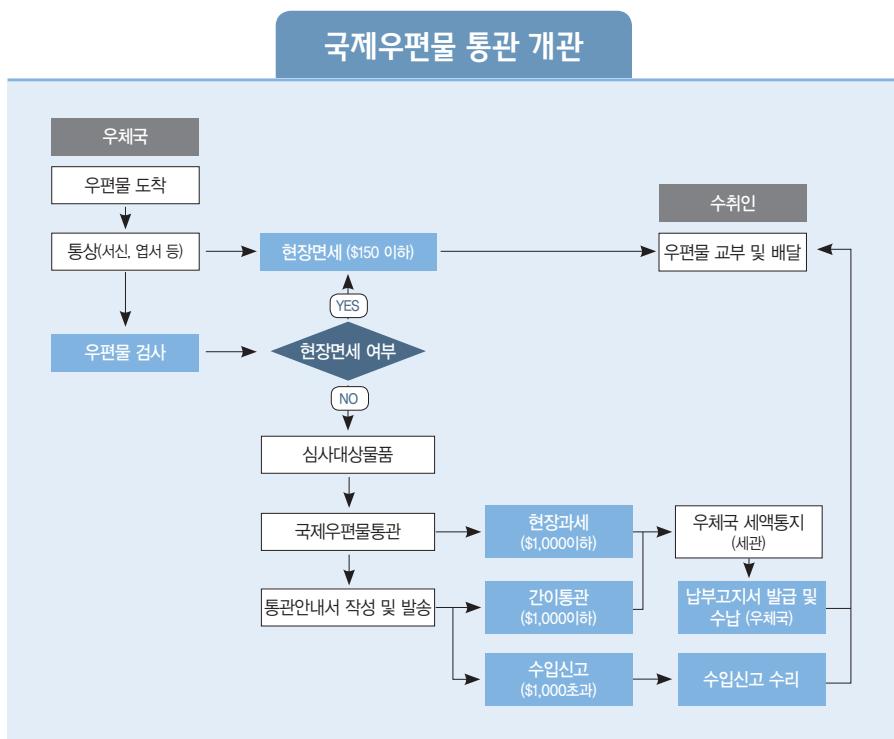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 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III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III 우편물의 통관절차

- ▶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III 우편물의 수입신고방법

### ▶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일반수입신고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 · 허가 · 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

- ①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②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③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④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물품
- ⑤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 ⑥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04

## 가격신고 안내

### III 가격신고

-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가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련되는 자료 등입니다.

### III 다음과 같은 경우 가격신고를 생략합니다.

- ▶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 ▶ 과세가격결정에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기관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주천을 받은 물품에 한함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9.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항
-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분할신고한 물품은 제외)
  - 종량세 적용물품 (단,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은 제외)

## III 가격신고 필수신고대상

-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 관세 부과·징수 물품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체납자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농·수산물 등)
- 과세가격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상계, 간접지급 등)이 있는 경우
- 관세법 제30조제3항 1호(처분사용제한), 2호(조건·사정)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

## III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하세요

- ▶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유·곡물·광석 등 1차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수입물품 가격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가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지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금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 APA 승인업체일 것
  - \*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 ▶ ACVA 또는 APA 승인서
-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제4방법)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 \*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 ▶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05

## 납세신고와 납부방법

### ■■■ 납세신고

-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 전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 ▶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 ■■■ 다음 사항을 납세신고합니다.

- ①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 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 ② 관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 ③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 ④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 ■■■ 납세신고는 사후심사가 원칙입니다.

- ▶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한다.

## ■■■ 다음의 경우 세관장이 부과고지하게 됩니다.

- ① 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제1호부터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③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⑥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 납세제도와 납부기한

- ▶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III. 수출입통관 안내

- ▶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 납기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 III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제도

- ▶ 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II 납부방법별 납부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납부제도		주요목적	납부기한	법적근거
원칙	일반적인 납세	-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관세법 제9조제1항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즉시반출제도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예외	납세 정정 제도	보정 신청	부족세액 납부	관세법 제38조의2제4항
	수정 신고	부족세액 납부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예외	월별납부제도	납세편의, 금융 비용 절감	일반적인 납세신고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	관세법 제9조제3항
	징수유예제도	재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관세법 제10조, 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
	분할 납부 제도			관세법 제107조제1항
	특정 물품 등	산업시설건설, 중소기업지원 등	분할납부승인일부터 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관세법 제107조제2항
	일괄납부제도	수출지원	일괄납부기간(6월 범위내) 종료일의 다음달 15일	환급특례법 제5조
	납기전 징수제도	조세채권 확보	세관장이 정하는 날	국세징수법 제14조

## 06 관세감면과 사후관리

### 관세감면은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 관세감면은 수입물품의 용도 및 상태, 적용법령 등에 따라 다릅니다.

- ▶ 동일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세감면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관세감면의 근거와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법	조문	내용	감면율
관세법	제88조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100%
	제89조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100%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80%(50%)
	제91조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100%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100%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100%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100%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30%(50%)
	제96조	여행자휴대품 · 이시물품 등의 감면세	100%
	제97조	재수출면세	100%
	제98조	재수출감면세	30~85%
	제99조	재수입면세	100%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	손상감세	가치감소분
	제101조	해외임기공물품 등의 감세	수출가격분
	제118조	관세의 경감	50%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100%(50%)
	제121조의3	외국인투자 자본재 관세감면	100%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면제	100%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관세면제	100%
기타	제126조의7	금거래소 공급 수입 금지금 관세면제	100%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 기계 · 장비 등 관세면제	100%
협정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FTA관세특례법 제8조	
		SOFA, 국제민간항공협정, 각 국과의 협정 등	

## ☰ 감면받은 물품은 일정기간 세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 용도세율 또는 관세감면을 받거나 분할납부 중인 물품은 정책의 실효성과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사후관리받습니다.

## ☰ 사후관리는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07

##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신고는 관세법에 의거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 ▶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지식재산권의 신고가 TIPA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신고방법은 인터넷신고(TIPA 지식재산권 신고 관리시스템(<http://www.e-tipa.org/>)), 방문(우편)신고가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 ■■■ 지식재산권 신고 후 통관단계에서의 보호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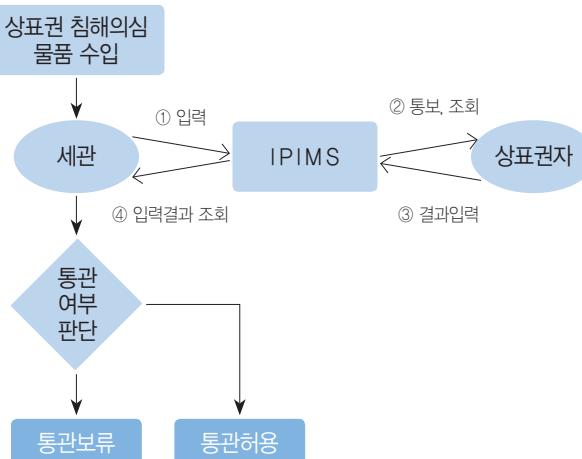


###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한 TIP

- IPIMS 이용을 통한 지재권 침해여부 확인
  - TIPA 지식재산권 신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후 관세청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에 연계 등록하시면 보호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IPIMS(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세관과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침해물품 수입정보 및 감정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IPIMS 이용자는 SMS, E-mail을 통해 침해물품 수입사실을 세관으로부터 통보받게 되며,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IPIMS에 감정결과를 등록하면, 세관에서는 침해 물품에 대한 신속한 국경조치가 가능합니다.



- IPIMS 이용 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 업무처리 > IPIMS



문의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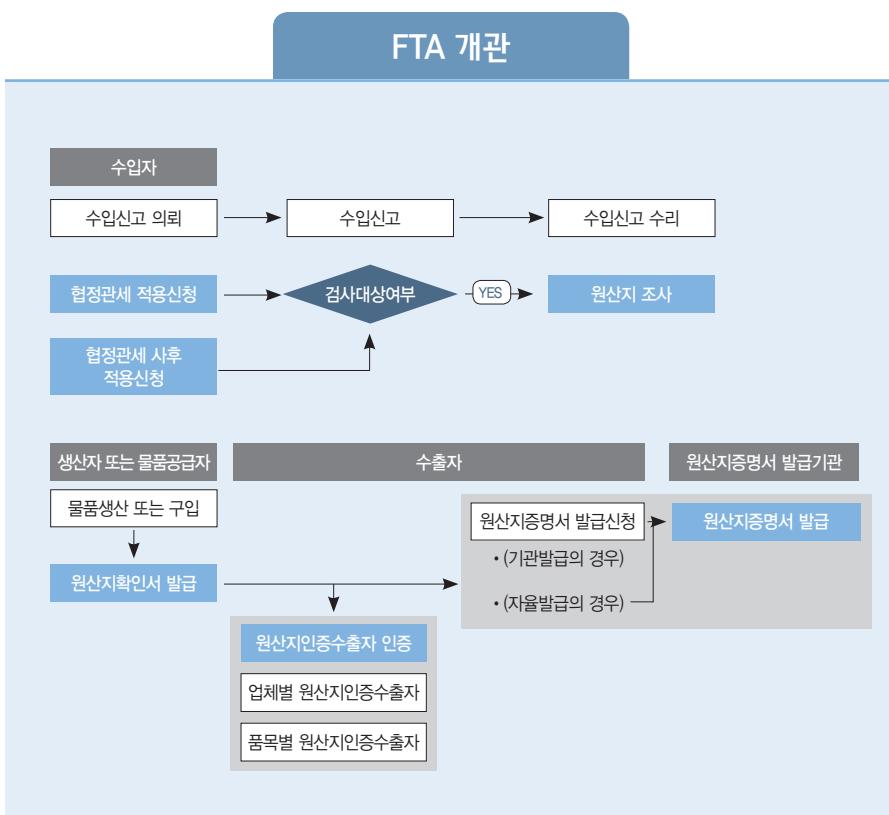
# IV

## FTA 활용 안내

- 01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 02 원산지결정기준, 꼭 확인하세요
- 03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활용의 필수입니다
- 04 원산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 05 YES FTA 전문교육







01

## FTA 수출입 100% 활용하기

### III 수출통관시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 III 수입통관시 FTA 혜택을 받기위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02

## 원산지결정기준, 꼭 확인하세요

### 원산지결정기준의 필요성

- FTA는 체결국가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을 부여
-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이 필요함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YES FTA 포털(<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 한국어 →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조회할 협정명 선택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 관세청에서 무료로 배포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원산지 판정가능

### 원산지결정기준의 구분

-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  
※ 일반기준은 기본원칙과 분야별 특례(보충적 기준)로 구분
  - 품목별기준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각의 규정  
⇒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 둘다 충족 필요



문의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042-481-3228, 3206

## 03

##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활용의 필수입니다

## III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개념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III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

-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신청업체의 주요 품목(2개~5개) 위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 업체의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을 심사하여 인정합니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HS 6단위 품목이 인증받으려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업체별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협정별 해당 품목(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① 원산지증명능력 ② 법규 준수도 ③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①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 III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

-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세안·베트남·싱가포르·인도와의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만 제출하고, 서류제출과 현지확인 면제 등 심사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EFTA FTA에서는 인증신청시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수출자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이 부여됩니다.

### III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심사

업무 절차	신청인
<p>1. 인증 신청/접수 (UNI-PASS 또는 서면접수)</p> <p>↓</p> <p>2. 신청서 접수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p> <p>↓</p> <p>3. 서면 심사 (필요시 보정요구/현지확인)</p> <p>↓</p> <p>4. 인증서 교부 (20일 이내)</p> <p>↓</p> <p>5. 인증변경 신고/수리 (7일 이내)</p> <p>↓</p> <p>6. 유효기간 연장신청</p>	<p>1. 구비서류</p> <p>① 인증 신청서</p> <p>②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p> <p>③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포괄)확인서</li> <li>- 국내제조확인서 등</li> </ul> <p>④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p> <p>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내역</p> <p>⑥ 기타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li> </ul> <p>3. 보정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p> <p>5. 인증사항 변경 신고</p> <p>(대표자성명 · 주소 · 사업자등록 번호 ·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시)</p> <p>6. 인증만료일 30일 이전 연장신청</p> <p>7. 인증유지 여부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기간내 2회 자율점검 실시 및 세관 선별 관리</li> </ul> <p>8. 기간 내 시정</p> <p>9. 청문 시 소명자료 제출</p>
<p>7. 인증수출자 사후관리</p> <p>↓</p> <p>8. 시정명령(30일 이상)</p> <p>↓</p> <p>9. 인증취소(청문)</p>	<p>인증요건 미충족 시</p> <p>법규준수요건 미충족 시</p>

## 4 원산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 ▶ 인증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인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 서류는 전자문서로 전송하면 됩니다.
- ▶ 인증신청 세관은 각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및 평택세관이며, 인증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 세관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이상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정 요구 및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의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04

## 원산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 ■■■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 원산지 증명서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기관발급하거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 자율발급 할 수 있습니다.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 분	기관발급 국가	자율발급 국가
협정명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자 : 칠레, 페루, EU, 터키</li> <li>수출자 또는 생산자 : EFTA,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li> <li>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 미국</li> </ul>

\* (EU)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

### III 각 협정에서 정한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첨부서류
신규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li> <li>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li> <li>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li> <li>원산지소명서 &lt;근거&gt;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li> </ol>
재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유서 &lt;근거&gt;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9항</li> </ol>
정정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증명서 원본</li> <li>정정사유 입증서류</li> <li>사유서 &lt;근거&gt;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9항</li> </ol>

- ▶ (자율발급)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협정상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명권자의 서명 · 날인으로 발급하고 원산지증명서 대장 관리

## 4 원산지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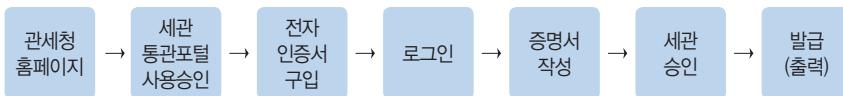
- \* 수출자는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 변경 · 추가 :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 · 부서명 · 직책 · 성명 · 지정일 및  
 지정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 기관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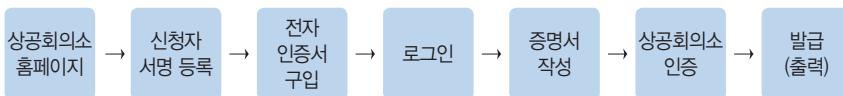
#### ● 세관 발급

온라인



####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온라인



#### ●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 ▶ 자율발급



05

## YES FTA 전문교육

### YES FTA 전문교육 사업 목적

-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 ▶ FTA관세특례법령(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세청이 FTA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 지역별, 업종별로 실시하는 무료교육

### 사업기간

- ▶ 2017. 3. 28 ~ 12. 8(약 9개월)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실무자 · 임직원, 미래인재(특성화고 · 대학생 등), 창업자 등

### 사업내용

- ▶ (일반분야) 실무자 · 구직자 대상의 단계별 실무이론교육 실시 및 CEO 대상의 동향 교육 등 FTA 전반에 대한 종합 교육(4개 과정)
- ▶ (특화분야) 검증, 인증, FTA-PASS 등 특정분야별 역량강화(3개 과정)
- ▶ (수요자 맞춤형분야) 업종별(공단별) 특성에 따른 교육, 현장방문 업체별 취약 분야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방식의 교육(3개 과정)

### 운영기관

- ▶ 주관 : 관세청 / 수행사 : 국제원산지정보원, 신한관세법인



문의 및 교육신청

- ☎ 문의 YES FTA 교육지원센터 ☎ 1544-5702, E-mail : yesftaedu@origin.or.kr
-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www.yesftaedu.or.kr>(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V

## 기업부담 완화제도

- 01 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 02 관세환급, 꼭 챙겨 주세요
- 03 분할납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04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 05 New Start Plan 2017
- 06 해외통관 애로 해소해 드려요
- 07 일자리 창출기업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 01 보세공장제도 활용하세요

### III 보세공장 개요

- ▶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 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III 보세공장 업무 처리 절차

- ▶ 업무절차(종합)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반입원재료별 사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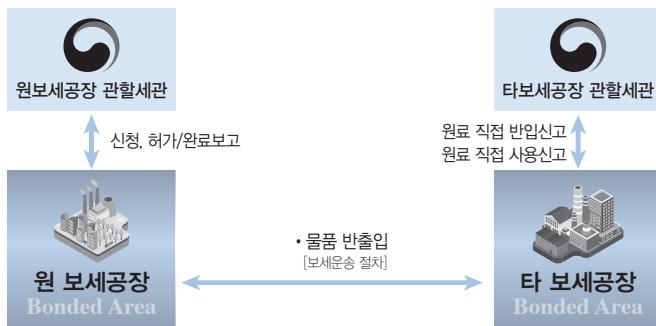
▶ 장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무역이나 국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타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공장 이외 다른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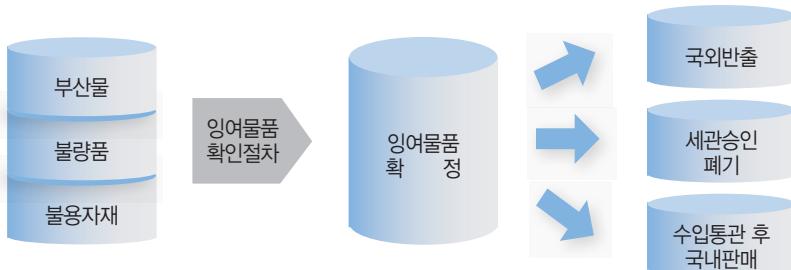
### III 과세적용시기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 또는 원료과세 적용 신청은 원재료의 “사용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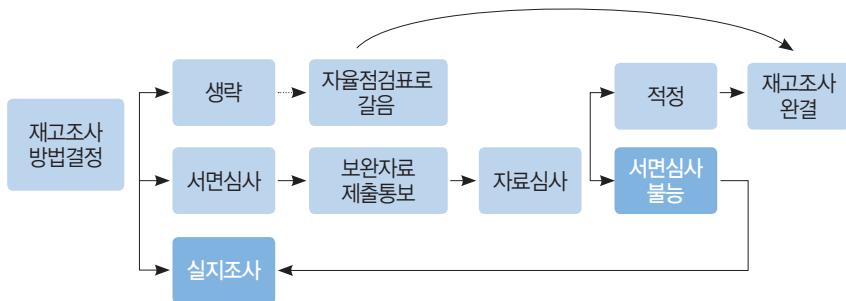
### III 잉여물품 처리절차

-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물품은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고, 폐기 후 잔존물이 실적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함



### III 소요량관리 및 재고조사

- 운영인은 생산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재고관리 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세관장에게 제출
-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심사하여 재고조사 생략,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여부를 결정



#### 문의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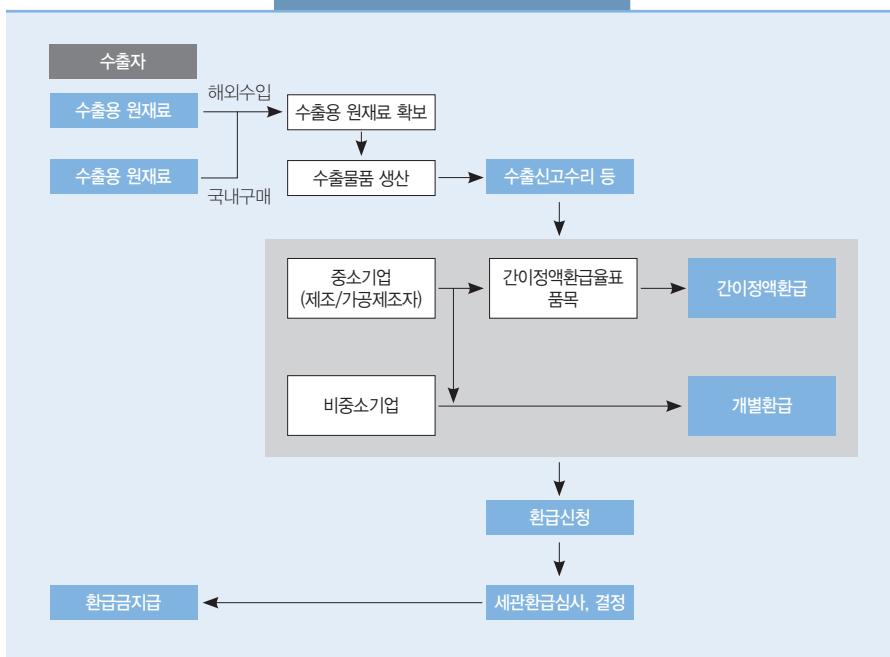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 「관세법」 제189조(원료과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 「관세법 시행령」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 「관세법 시행령」 제207조(재고조사)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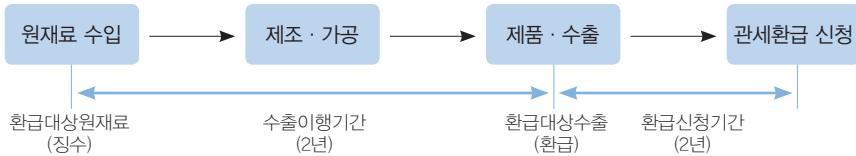
## 02 관세환급, 꼭챙겨 주세요

### 관세환급 개관



■■■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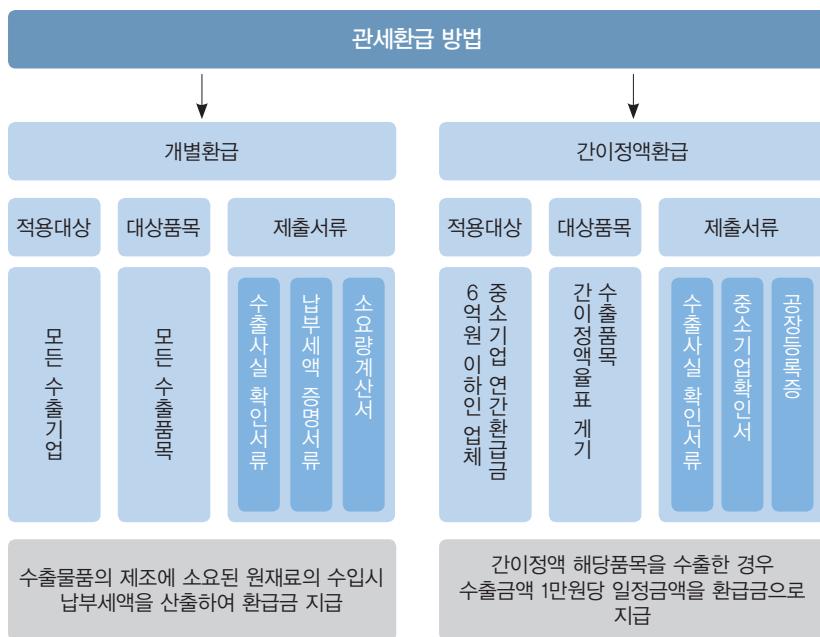


III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li> <li>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환급</li> <li>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li> </ul>

-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②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
- ▶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2 관세환급, 꼭 챙겨 주세요



## III 개별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문의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03

## 분할납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III 관세분할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 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 분할납부기간

-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의 별표4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04

##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법 제50조의2)

#### 부가세 납부유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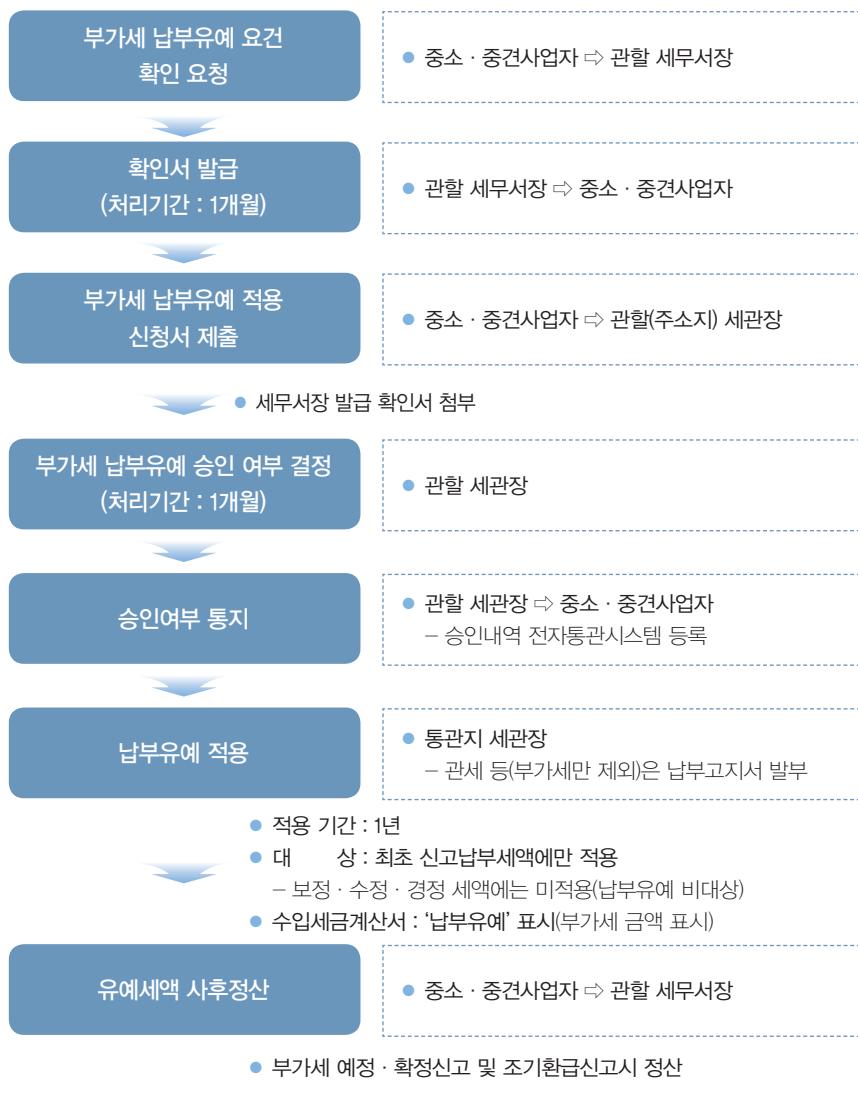


- ▶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 ① 중소·중견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0조)
- ② (중소)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중견)수출액 비중 50% 이상
- ③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 ④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⑤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법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 4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하세요

▶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 05 New Start Plan 2017

### ☰ 추진 배경

- ▶ 관세청은 내수회복과 수출지원 정책을 반영한 「New Start Plan」을 추진함으로써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 주요 내용

#### ▶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하여 2016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피해 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환급신청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지급 요청하여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 환급 규정 정비로 수출산업 지원

- 제조 · 가공과정을 거친 후 국내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가능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합니다.
-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은 후 FTA협정관세 적용받는 경우 이미 환급받은 금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협정관세 적용일로 변경합니다.
- 환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해산하는 경우 환급신청권리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게 허용합니다.

## ▶ 수출 환급 지원

- 연중 과다납부 세액에 대해 세관장이 확인하여 직권으로 환급합니다.
- 수출신고건에 대해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실시간 자동 안내합니다.
- 신규 수출품목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지정(2017년, 신규 212개)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체납자 회생 지원

-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체납처분 유예받은 기업은 수입통관 허용, 체납처분 및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합니다.
- 분할납부 중인 세액을 체납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잔여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유지(체납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 납기연장 · 분할납부

- 2016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 가능합니다.

	다음 호의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	<p>①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 있으며,          ②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 사실 없을 것. 다만, 체납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체납 제외          ③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p>
추가 요건	<p>다음 호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p> <p>①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체 또는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              나. 장애인 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          ②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 계획 승인기업</p>

## V. 기업부담 완화제도

- 추징세액 및 과태료 납부 부과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추징세액에 대해 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 가능합니다.

공통 요건	다음 호의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li><li>② 관련 물품이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이 아닐 것</li></ul>
추가 요건	다음 호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중소기업 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 실적 1억불 이하</li><li>나. 장애인 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li></ul></li><li>②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 계획 승인기업</li></ul>



###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 06 해외통관 애로 해소해 드려요

### III 추진 배경

- ▶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해 단계적 해소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합니다.

### III 주요 내용

#### ▶ 문제점 파악 및 전담팀 구성(인지 · 예방)

- 국내 및 해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관 장벽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지역별/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하여 정기 설명회 개최 및 통관애로 상담, 홍보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로 구성된 『통관애로 현지 기동팀』을 가동하여 중소 · 중견기업 중심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 통관애로 해소 지원(직접 대응)

- 통관규제 다발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관세관이 미파견된 통관분쟁 다발 지역(중국 칭다오, 대련 등)에 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분쟁대상 기업 맞춤형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FTA 특혜 배제, 과도한 세금부과와 관련된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소 지원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여 지원합니다.

#### ▶ 제도 · 시스템 개선(대응능력 저변 확대)

- AEO기업에 통관절차 혜택을 교역국 간 부여하는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고,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로 통관애로 빈발국가와 세관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나갑니다.

### 【불임】 주요 통관애로 해소사례

#### ① 수출 중소기업의 FTA 특혜 배제위기 해소

(내용) C사 상해법인은 베트남에서 차량용 카메라 렌즈 등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해 왔으나, 상해해관은 동 물품의 한국경유를 이유로 특혜 배제 통보

(활동) ① 상해 관세관 피해사실 확인 ② 검토결과 인천공항에서 추가 가공없이 환적 ③ 인천공항세관 과거 환적 건에 대한 미가공 증명서 발급 ④ 상해해관에 관련자료 제출, 해명 ⇒ 상해해관 관세 미추징 결정(11억원 절감)

#### ② 중소기업 수출계약 무산위기 해결

(내용)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는 미국 B사와 2천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 측이 AEO 인증획득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계약 무산 위기

(활동) ① 관세청 긴급지원팀 편성 ② 신속한 심사진행으로 AEO 공인인증 조기 완료(인증절차를 3개월로 단축) ⇒ 2천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정상 체결

#### ③ 우리 수출 주력품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승소

(내용) S전자가 수출하는 「갤럭시 기어」에 대해 인도·터키·태국 등에서 시계(관세 4~6%)로 분류하여 관세 부과

(활동) ① 사실관계 확인 ②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대응논리 개발 ③ WCO HS위원회 안건 상정 ④ 2차에 걸친 위원회를 통해 무선통신기기(관세율 0%)로 결정 ⇒ 연간 약 150억원 이상의 관세비용 절감

#### ④ 현지기동팀 파견을 통해 외국세관의 왜곡된 품목분류 정정

(내용) H사의 수출물품(가스절연 개폐장치, 0%)을 인도세관에서 회로단속용 개폐기(관세 5%)로 분류하여 통관보류 및 관세(총 1,300만불) 추징 통보

(활동) ① 수출업체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②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청 분류의견서 제공 ③ 현지 기동팀 파견, 인도 세관당국 면담 및 협조 요청 ④ 우리측 품목분류 의견 수용 ⇒ 가스절연개폐장치(0%)로 분류, 약 150억원 비용절감

#### ⑤ 세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관지체 해소

(내용) L사 수출 LCD TV 부품에 대해 폴란드 관세청이 기상, 전산시스템 불안정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 약 10만대의 LCD TV 생산라인 가동 차질 위기

(활동) ① 긴급 처리사안으로 분류, 현지 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 ② 수작업 통관 등 현지 관세청 설득 논리 개발 ③ 관세청장 서신 발송 ④ 현지 기동팀 파견, 현지 세관 협조 요청 ⇒ 즉시통관으로 기업손실 50억원 방지

07

## 일자리 창출기업은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 III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 ▶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정지원 방안으로서 2013년부터 시행

## III 관세조사 유예를 위한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20% 이상인 성실수출입기업으로 2016년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를 전년대비 2~4% 이상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한 법인

※ 청년근로자(15~29세 이하),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2016 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5천만불~1억불
일자리 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4% 이상

## III 관세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 ▶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 신청
- ▶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상세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메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73



# VI

## 성실신고 이행 확인

- 01  기업부담이 완화되는 보정제도
- 02  성실신고 확인하는 관세조사
- 03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 04  AEO 종합심사
- 05  원산지 표시 확인
- 06  FTA 특혜 확인하는 원산지검증





## 01 기업부담이 완화되는 보정제도

### ■■■ 보정제도는 조기 세액확정으로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합니다.

- ▶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 사후 세액심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조기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 및 기업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 ■■■ 세액에 변경이 있는 보정·수정·경정제도는 신고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 ⇒ '보정신청'
- ▶ 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 '수정신고'
- ▶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 '경정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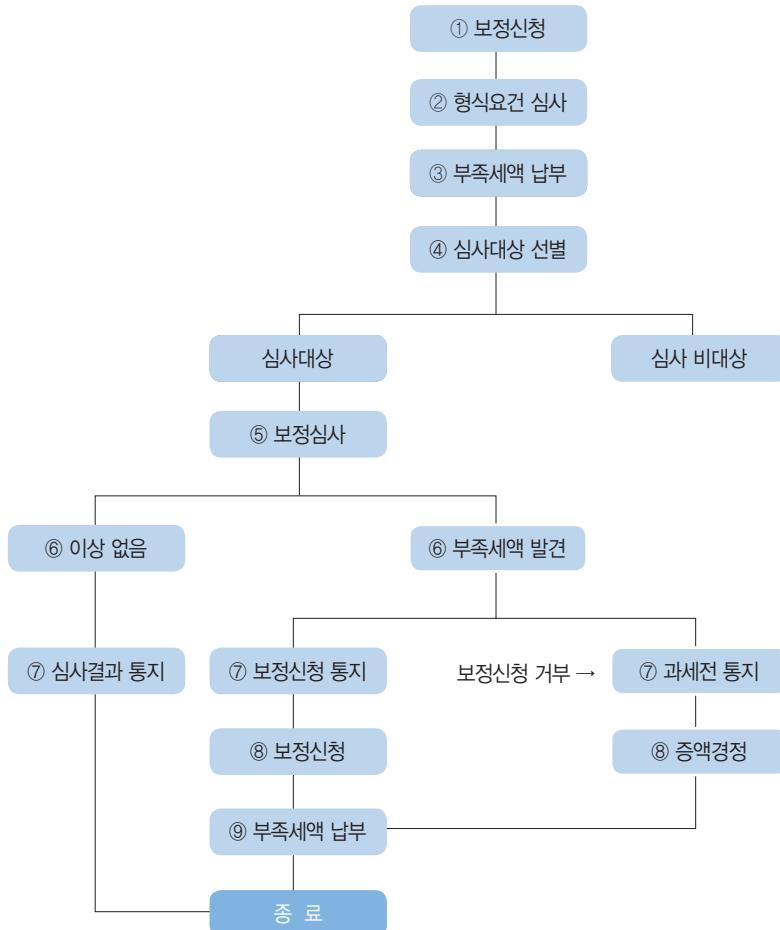
구분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고시기	납부한 날로부터 6월 이내(보정기간)	보정기간 이후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
증액여부	증액	증액	감액
보정이자	○	×	×
가산세	×	○	×
납부기한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	해당 없음

\* 관세부과제척기간 : 5년 또는 10년(관세포탈, 부정환급 등)

- ▶ 보정이자 산정기간을 명확히 개정하였습니다.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세액 납부일까지</li> </ul>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li> </ul>

## ■■■ 보정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문의처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58

## 02 성실신고 확인하는 관세조사

### 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은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되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	기획심사 (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li> <li>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li> <li>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한 경우</li> <li>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li> <li>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li> </ul>

-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기업심사가 아닌 AEO 공인심사와 AEO 공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EO 공인업체		非AEO 업체	
공인/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심사 실시 후 AEO로 공인</li> <li>AEO 공인 후 3~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li> <li>민·관 합동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기업</li> <li>4~5년 주기 정기심사</li> <li>세액, 외환, 통관요건 등 전부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업체</li> <li>특정사안 수시심사</li> <li>조사부서 공조심사</li> </ul>	

## ☰ 관세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관세조사를 위한 TIP

- 관세조사 전에 「관세조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세조사 준비를 위하여 조사개시 10일전에 심사기간, 심사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심사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조사착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기타 관세조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심사착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관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는 기업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하며, 언제든지 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실시합니다.
  - 대상업체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 · 방법 ·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일 이내로 실시하며,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1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조사는 관세오류 예방을 위한 기회입니다.
  - 관세조사가 종료되면 관세조사 결과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문의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73, 기획심사팀 042-481-7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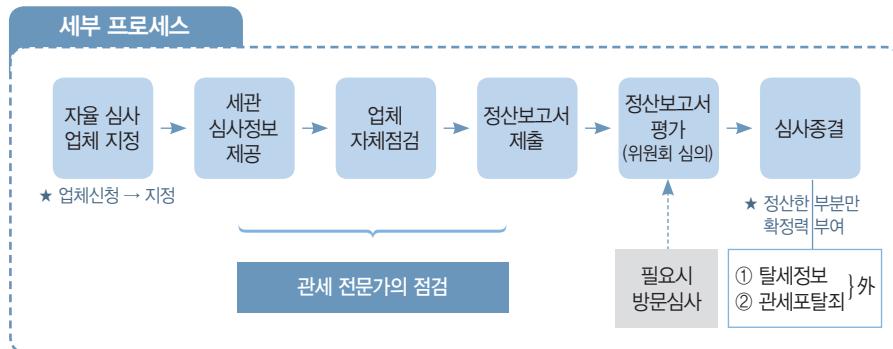
## 03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과세관청'간 협치를 통해 과세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 ▶ 기업이 직전 회계연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매년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의 심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 정산 절차

- ▶ 매년 1월경 AEO기업 중 정산기업 모집을 공고하며, 심사인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합니다.
- ▶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이 제공한 탈루위험 정보를 포함하여, 직전 회계연도에 수출입신고한 내역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환급, 보세공장, 외환 분야에 대하여 자율점검합니다.
- ▶ 자율점검 내용에 대하여 확인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최종 결과를 통지합니다.
- ▶ 정산결과 통보서를 받은 정산업체는 보정·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연도로 유보 가능합니다.



### III 정산기업 혜택

- ▶ 허위·부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조사가 면제됩니다.
- ▶ 정산결과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 매년 공인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84

## 04

## AEO 종합심사

### III AEO 사후관리와 종합심사

- ▶ AEO 사후관리는 공인 자격 유지를 위한 것으로, 공인 후 갱신기간까지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정기 자체평가 실시, 갱신·종합심사 실시 등 AEO 공인 후의 모든 활동을 통칭합니다.
- ▶ 기업상담전문관(AM)은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의 AEO기업 지원 담당직원을 말하며, 일정기간 심사 경험 또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직원 중에서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 ▶ 종합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84, 한국AEO진흥협회 02-701-3325

## 05 원산지 표시 확인

###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

###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표시방법을 확인하세요.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물품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개기된 수입물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원산지 : 국명”, “국명 산 (產)”,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li> <li>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li> <li>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올바른 원산지표시 Tip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수입품목의 약 55%</li> <li>- HS 4단위 품목기준 총 1,224개 중 674개 (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li> </ul>	

-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 기준 또는 기공공정기준 적용</li> <li>- 다만, 단순가공 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li> </ul> </li> </ul>

##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과 위반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통관·유통단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 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 조치

구분	제재조치	내 용			
통관단계	통관제한 및 시정명령	▶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정정한 후 통관 허용			
유통단계	보세구역 반입명령	▶ 수입신고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 -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 허용			
통관 및 유통단계	과징금 부과 (최대 3억원)	위반 유형 허위, 손상, 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위반 미표시	1차 (통관단계) 시정명령 (유통단계) - 미판매분 : 시정명령 - 판매분 : 과징금(30%경감)	2차 시정명령 과징금	3차 시정명령 과징금(50%기준) 시정명령 과징금(30%기준)
통관 및 유통단계	고발·송치 의뢰 (징역 5년, 벌금 1억원 이하)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유통단계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원산지표시 단속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은 관세청 외에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수행합니다.

## 올바른 원산지 표시 TIP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대외무역관리 규정」별표8)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는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產)”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원산지 판정 기준)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원산지는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러한 방식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표시 가능)
  - 다른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
- 원산지 판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그리고 단순가공여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 참조
-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은 관세청,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문의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44, 기획심사팀 042-481-789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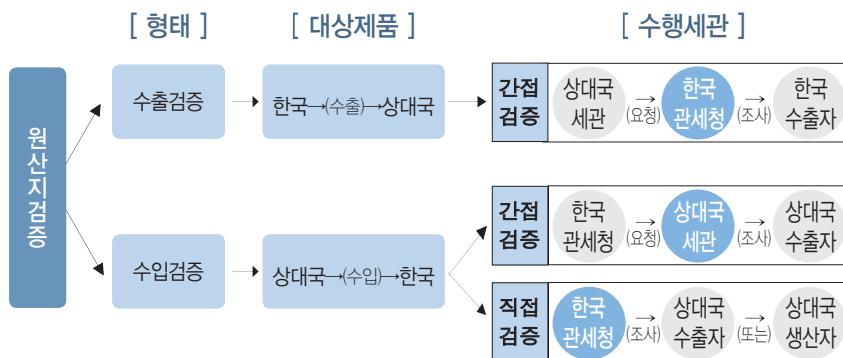
## FTA 특혜 확인하는 원산지검증

### 원산지검증은 FTA 특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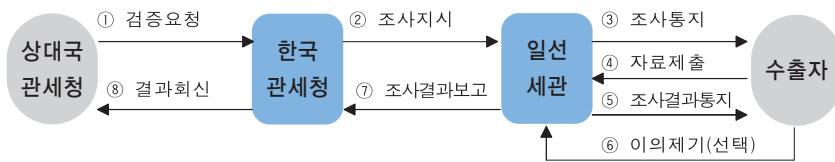
-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말합니다.

### 원산지검증의 대상에 따라 크게 수입물품 원산지조사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로 구별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FTA 세율을 적용 받은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원산지 조사 수행 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을 직접 조사하는 직접검증과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 등에 검증을 의뢰하여 수출국 세관 등이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됩니다.



- 수출물품 원산지조사는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검증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조사를 말합니다.



▶ 원산지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FTA 협정별로 다릅니다.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기한
한·칠레	-	1.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30일
한·싱가포르 (순차적용)		1. 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생산자에게 정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한·EFTA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검증참관 가능)	-	10개월
한·아세안 (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2개월 (최대 6개월)
한·인도 (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3개월 (최대 6개월)
한·EU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한·페루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1. 수출국 세관을 통해 수출자에게 서면자료 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직접) 30일 (간접) 150일
한·미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섬유·의류제품만 해당)	1. 수출자에게 서면 질의 2. 수출자 사업장 방문조사	-
한·터키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필요시 검증참관 가능)	-	10개월
한·호주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 요청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30일
한·캐나다	-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30일
한·중 (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6개월
한·베트남 (순차적용)	1.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등의 필요)	6개월
한·뉴질랜드	-	1. 수출자에게 서면질의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90일
한·콜롬비아	수출국 세관에 검증요청	1. 수출자에게 서면요청 2. 수출자 방문조사 (수출당사국 세관 참관)	(직접) 30일 (간접) 150일

## ■■■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취합니다.

- ▶ 원산지검증 결과 수입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요구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수출자·생산자 직접(서면·현지) 조사
  -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회신기한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지조사 등의 요청에 대해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지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해 접근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등을 직접조사하거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간접조사를 요청한 결과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원산지 결정기준, 직접운송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④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⑤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조사대상자의 부도, 폐업,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⑦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 FTA 특혜 확인하는 원산지검증

-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있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한 동종동질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원산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구 분	위반 내용	처분
벌금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li> <li>용도외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li> <li>원산지 입증서류 등을 미 보관한 경우</li> </ul>	2천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li> </ul>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li> <li>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li> </ul>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 받고도 세액정정,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li> </ul>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VII

# 성실신고 불이행시

- 01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02 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 0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04 통관적법성 위반사례에 유의하세요





## 01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 ■■■ 세액보정

-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수정신고

-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
- ▶ 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경정청구

-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III 경정

-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 ▶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납세고지합니다.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명칭	정정	정정안내 직권정정	보정신청	보정통지	수정신고	경정
주체	납세의무자	세관장	납세의무자	세관장	납세의무자	세관장
조치 시기	납세신고(수입신고) 시점부터 신고납부 전까지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		보정기간 경과 다음날부터 제척기간 도래시까지	
변경 사유	과다/과소 신고		과소 납세		과소 납세	과다/ 과소납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직권정정은 납세와 관계없는 수입신고사항만 가능</li><li>정정안내에 불응시 세관장 직권경정 가능</li><li>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li></ul>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02

## 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 III 납세고지 및 강제징수

-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부족세액을 납세고지하게 됩니다.
-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 합니다.

## III 관세형벌

-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의뢰합니다.
- 주요 관세법상 형벌규정

## 【주요 관세법상 형벌규정】

주요 관세범죄	위반 내용	처벌
금지품 수출입	수출입금지품(음란물 등 공공질서 침해 물품, 정부 기밀 누설물품, 위조 화폐·채권 등)을 수출입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밀수출입물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밀수입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밀수출	수출(반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
관세포탈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수입제한회피 분할수입	수입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완성품·불완전품으로 수입거나 분할하여 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부정수입	수입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요 관세범죄	위반 내용	처벌
부정수출	수출 요건을 미구비 또는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감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면탈한) 관세 액의 5배 이하 벌금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가격조작죄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신고, 수정·보정신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이하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밀수품취득 등	밀수품(혹은 부정수출입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li> <li>- 밀수품 몰수(몰수 불가시 시가 추징)</li> </ul>

\* 시가는 범칙행위 당시 국내 도매가격을 의미

## ||| 과태료

- ▶ 각종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77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에서도 각종 위반행위시에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서 관세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관세형별과는 다릅니다.

## ||| 가산세와 가산금

- ▶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03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기본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sup>\*</sup>을 하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임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관세법 제28조제2항)하는 경우, 관세법상 보정(관세법 제38조의2제1, 2항) · 수정(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 경정청구(관세법 제38조의3제2, 3항)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관세법 제38조의4제1항)의 경우, 관세를 환급(관세법 제46조)하거나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관세법 제47조)하는 경우,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의 경우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 다만, 위 '①, ②'의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

## 04

## 통관적법성 위반사례에 유의하세요

### 개요

- ▶ 관세조사 시 주요 심사 분야와 통관요건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업체 스스로 점검하여 수입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유형별 점검 법규】

유형	관련 법
주요 심사 분야	관세법
	관세환경특례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관련법
통관요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화장품법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법령

### 단순·동일 사안 빈번 적발 사례

- ▶ 현재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의 단순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추징되고 있으며, 단순한 사안이 빈번·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유류할증료나 수수료 등 관세의 단순사안은 수입자 또는 협력업체(관세사, 운송인 등)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입업체는 신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업무매뉴얼 마련, 통관부서, 재무부서, 구매부서 및 협력업체(관세사 등) 간의 긴밀한 연락망 구축과 함께 비용 지급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I 통관적법성 점검사항입니다.

- ▶ 세관장은 법 위반을 적발 시 세액추징,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그 외 관계기관에 적발사실을 통보합니다.
- 통관단계에서 수출입승인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물품뿐만 아니라,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통합공고상 수출입승인물품도 자주 적발되므로 수출입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 ▶ 통관요건은 통합공고에서 보건·식품위생 분야 9개법, 사회안전 분야 15개법, 환경보전 분야 12개법, 농수축산 분야 13개법 및 기타 7개법으로 구분하여 56개, 통합공고 계기되지 않은 10개 법령을 포함하여 총 66개 법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주제별 통관요건 관련 66개 법령】

통관요건	보건·식품위생(9), 사회안전(15), 환경보전(12), 농수축산보호(13), 기타(7), 비계기(10)
------	--

#### 보건·식품위생(9)

1. 약사법, 3. 화장품법, 4. 식품위생법, 5. 검역법, 32. 축산물 위생관리법,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7. 의료기기법, 48. 인체조직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사회 안전(15)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현재 폐지, 15번 법령에 통합), 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6. 계량에 관한 법률, 17.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18. 원자력안전법, 19. 전파법, 25. 자동차관리법, 26. 산업안전 보건법, 28. 건설기계관리법, 3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35. 방위사업법, 3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5.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6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환경 보전(12)

6. 화학물질관리법(6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 대기환경 보전법, 24. 소음·진동 관리법, 2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 먹는 물 관리법,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2. 하수도법, 5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폐기물관리법,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농수축산 보호(13)

7. 양곡관리법, 8. 비료관리법, 9. 농약관리법,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11. 식물방역법, 12. 종자산업법, 13. 축산법, 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7. 수산업법, 5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51. 사료관리법, 5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7)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1.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3. 주세법, 44. 지방세법, 4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9.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이상 통합공고 계기법령 번호순

### 통합공고 비계기 법령(1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석면 안전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이상 세관장확인대상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소금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심사분야 주요 적발사례이므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 생산지원비용 신고 누락

- 해외 현지공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생산), 위탁생산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세 누락 형태로서, 물품의 수입 시 수입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 동 물품의 수입을 위해 별도로 제공한 물품 또는 금액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 로열티 등 권리사용료 신고 누락

- 수입물품 자체의 가격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 기술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에 있어서도, 동 권리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다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않은 경우입니다.

### ▶ 조건 · 사정에 의한 영향

- 수입거래를 하면서 당해 수입거래와는 별도의 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조건 또는 사정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을 미친 만큼 조정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수입물품의 처분 · 사용상의 제한

-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약정 등에 의해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을 둠으로 인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특수관계로 인한 저가신고

-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 ▶ 무상 수입물품 저가신고

-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상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나,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품목분류 신고오류

- 수입물품은 품목분류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저세율로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부당환급

- 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으면서 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통관요건 미구비

- 물품의 수출입시 이행하여야 할 허가·승인·추천·증명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원산지표시 위반

- 수입물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품 등에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해야 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의처

관세청 기획심사팀 042-481-7893

## VIII

# 납세자 권리보호

- 01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권리は 보호됩니다
- 02 FTA 원산지검증시 납세자 권리보호 받으세요
- 03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 04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05 사후구제 절차도 알아두세요





01

## 관세조사시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 III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관세법 제111조제1항)

-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함  
⇒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음

## III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관세법 제111조제2항)

- 해당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III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 관세사나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III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관세법 제113조)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다만,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제외

### ☰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관세법 제114조제1항)

- ▶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위임자 포함)에게 조사 시작 10일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함  
(예외) ①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②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관세조사 연기신청(관세법 제114조제2항)

- ▶ 납세자는 다음 사유로 조사받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에게 연기신청할 수 있음
  - ①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②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는 경우
  - ④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관세법 제115조)

- ▶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납세자에게 통고처분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폐업한 경우,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관세법 제116조)

-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7조)

-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 이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함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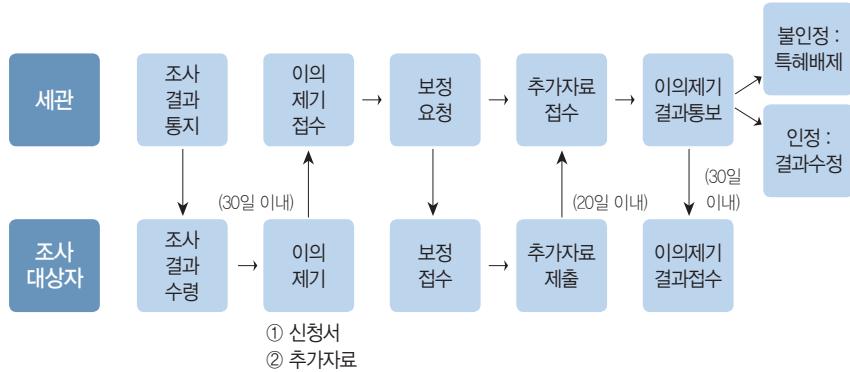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73

02 FTA 원산지검증시 납세자 권리보호 받으세요

### ■■■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원산지 조사 결과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 합니다.
  - 또한, 이의제기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시 필요한 서류

- ① 이의제기 신청서
- ②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서류
- ③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 ④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 ⑤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III 원산지검증 결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구제(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종류	제기기간	재결청	심리기관(소관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관장 관세청장 (청구금액 5억원 이상)	관세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세청장	관세심사위원회
심판청구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회의
감사원심사청구	90일 이내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 ▶ 싱가포르·칠레·호주·캐나다·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해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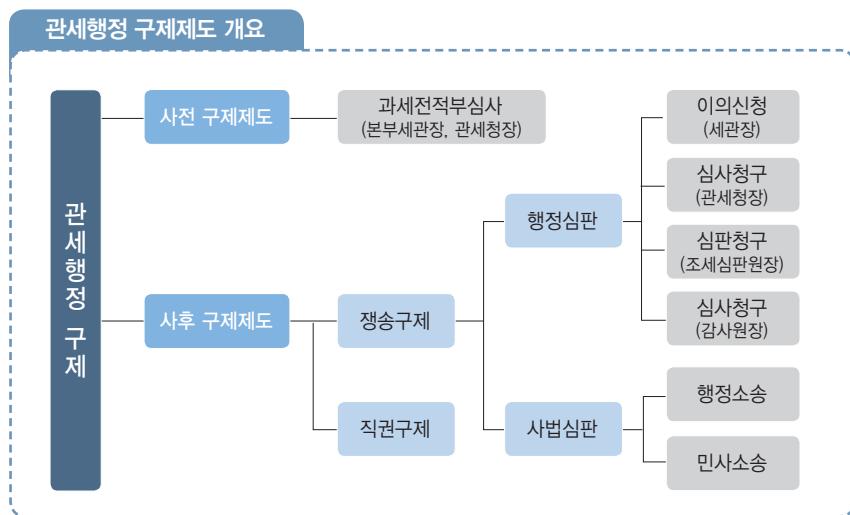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042-481-3213

03

## 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 III 관세행정의 권리구제제도

- ▶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사후구제절차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구에 의해서 개시</li> <li>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li> <li>대심구조, 위원회 심의, 결과가 처분청을 기속함</li> </ul>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적 행정절차</li> <li>처분유보(제척기간 도래분 예외)</li> <li>심사결정 자체가 아닌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불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적 행정절차</li> <li>집행부정지원칙</li> </ul>

## 04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III 과세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 ▶ 세관장은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3월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III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요건

- ▶ (청구기간)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 (청구기관) 원칙적으로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하며,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III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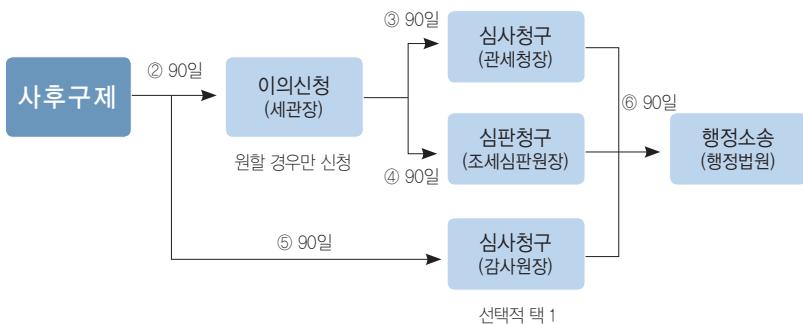
- ▶ 세관장은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고지를 유예하게 되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는 없습니다.
-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 III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결정의 효과

-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하게 기속력 등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 ▶ 청구인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자체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05 사후구제 절차도 알아두세요

- ▶ 세관의 관세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권리구제」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 구제절차별 청구기간과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절차	청구기간	신청기관	결정기간	비 고
①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본부세관장 관세청장	30일	(관세청장) 5억원 이상
② 이의신청	90일	세관장	30일	원하는 경우
③ 심사청구	90일	관세청장	90일	선택적 택 1
④ 감사원심사청구	90일	감사원장	3개월	
⑤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원장	90일	
⑥ 행정소송	90일	행정법원	–	3심제

## 부록1

###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





## 01 >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

생산, 계약, 구매, 운송, 통관, 판매 등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위험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과세위험 : 'o' 과세오류 위험있음, 'x' 과세오류 위험없음, 'n' 과세와 관련없음

구분	내용	과세위험	기타 위험	위험관리
생산	생산자의 생산원가	o		
	이윤 및 일반경비	o		
	생산지원비용(물품, 용역)	o		
	수출보조금	n	상계관세 부과	
계약 구매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o		
	비정상적 광고선전비, 경영서비스	o		
	채무변제	o		
	판매조건에 의한 의무적 해외훈련비	o		
	별도의 간접지급금	o		과세가격 사전심사 (APR/ACVA)
	일반 상거래 가격할인	x		
	누락된 선금금	o		
포장	권리사용료(royalty and licence fee)	o		
	원산지 증명서 하위 발급	o	추징	규정 준수
	별도지급 용기 및 포장비용 (노무비 · 자재비 포함)	o		성실신고
운송	원산지 표시(허위 · 오인 · 손상변경 · 부정적 · 미표시)	n	행정제재, 처벌	규정준수
	운임(수출국내 운송, 국제운송 포함)	o		성실신고
	보험료	o		성실신고
	수출통관비용	o		성실신고

부록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

구분	내용	과세위험	기타 위험	위험관리
입항 하역	본선 하역준비 완료될 때까지 소요 비용	○		성실신고
	본선 하역준비 완료이후 비용	×		
	통관수수료	×		
	수입국 제세 · 공과금	×		
	품목분류 오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저가신고	○		APR, ACVA, 기업내부 과세 정보 공유
	관세 부정감면	○		감면요건 확인
	가산 또는 제2방법 이하 적용	○		성실신고
통관	–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닌 경우(무상수입 물품, 판매위탁수입물품, 수출자책임판매물품,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물품, 송화주부담 파기물품) 미조정	○		
	– 조건 · 사정(타물품 구매조건하에 가격결정, 판매 자의 타물품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 기 사용물품 반환 조건, 반제품 공급후 원제품 일부 수령조건, 구상무역, 보상거래 등)에 의한 가격 영향 미조정	○		
	– 처분 · 사용상의 제한(광고용, 전시용, 교육용,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 등)에 의한 가격 영향 미조정	○		
	특수관계의 가격 영향 미조정	○		ACVA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	통관보류	성실신고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미구비	n	통관보류	AEO
	관리대상화물 지정 및 수입통관 검사 강화	n	물품검사	
	지재권 보호	n	통관보류	병행수입

구분	내용	과세위험	기타 위험	위험관리
외환	채권 미회수, 무역가장 자금이동, 채권·채무 상계 미신고, 당사자 이외 지급수령 미신고(환치기, 제3자 지급수령),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수령 미신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n	행정제재, 처벌	외환당국 신고
납세	FTA 특혜 관세 부당 수혜	o		원산지 증명
	운송,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 용기 및 포장비용 신고 누락	o		성실신고
부족	부족 신고분 세액보정	o	기간이자 부과	6개월 이내
	부족 납세분 수정신고	o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경정청구	o	과다납부	5년 이내
국내 운송	수입 이후의 운송비용	x		
	보험료	x		
설치	수입후 설치, 정비, 유지 등 비용	x		
국내 판매	통상의 수수료(위탁물품)	x		
	이윤 및 일반경비(구매물품)	x		
	사후귀속이익(subsequent proceeds)	o		잠정가격신고
	감면물품 사후관리	n	감면액 추정	사후관리 준수
관세 조사	수출입의 요건 미구비 및 절차 미준수 - 보건·식품위생, 사회안전, 환경보전, 농수축산보호 등 66개 법령 위반(세관장확인 대상 수입요건 포함)	n		정확한 HS분류 수입요건 확인
	과세가격 신고누락 등	o		APR, ACVA
	원산지표시단속, 종합심사, 외환조사, 범죄조사	n	행정제재, 처벌	법규준수
권리 구제	부당한 과세처분, 부당한 행정처분	n		구제제도 이용

부록1. 단계별 성실신고 점검표로 자율점검하기

구분	내용	과세위험	기타 위험	위험관리
수출	부당 과다환급	○	행정제재, 처벌	소요량 계산 등 오류점검
	외국세관당국의 원산지조사 또는 검증 요청	n	수출거래선 상실	인증수출자 제도
	수입국의 높은 세관검사를 및 통관지체	n		AEO

## 부록2

#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상반기)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하반기)





##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01 › FTA 활용·지원

02 › 통관·물류 개선

03 › 세정지원

04 › 권리구제



## 01 › FTA 활용·지원

### III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 대상 품목 확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2개 품목(룰김, 마른 김)</li> <li>• 〈신설〉</li> </ul> </li> </ul> <p>※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꿀, 다시마 등 81개 품목</li> <li>• (축산물) 소, 돼지 등 5개 품목</li> </ul> </li> </ul>

▶ [기대효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빙관련 비용 연간 560억 원 절감

▶ [시행일] 2016. 11. 30.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

### III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시 사본제출 허용대상 협정 확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세안 FTA</li> </ul>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한-베트남 FTA</li> </ul>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의 정정 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C/O 원본을 회수하여 세관에 제출해야하는 민원불편\* 해소

\* 상대국에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회수에 따른 시간 지연(약 10일) 발생

▶ [시행일] 2016. 12. 27. (「FTA관세특례법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5조 개정)

##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산지 증명서(C/O) 제출 생략(한-중 FTA) 및 사본 제출도 허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으로 C/O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li><li>• C/O 원본 대신 사본제출 허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C/O 원본을 스캔한 것 또는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가능</li></ul></li></ul></li></ul>

- ▶ [기대효과] C/O 원본 분실 · 훼손에 따른 협정관세 미적용 예방 및 서류 제출을 위한 세관방문비용 등 절감(약 106억원 절감)
- ▶ [시 행 일] 2016. 12. 27.('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개정)

## ■■■ 한-중 FTA C/O 원본 제출 생략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042-481-3203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FTA 신청시 C/O 원본 제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 모든 FTA 신청시 사전 C/O 원본 제출</li><li>• (한)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또는 '사후신청'시 C/O 원본 제출</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FTA 신청시 C/O 원본 제출 전면 생략<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 내 C/O 자료 교환시, 양국 모두 C/O 제출 생략</li></ul></li></ul>

- ▶ [기대효과] C/O 원본제출 면제 및 간이심사로 물류비용 연간 6,245억원 절감
- ▶ [시 행 일] 2016. 12. 28.

### III FTA 협정관세율표 품목번호 개정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별 협정관세율표(15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S(K) 2017 개정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 개정</li> </ul> </li> </ul>

▶ [기대효과] 총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에 HS(K)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FTA 활용 촉진(FTA별 HS 10단위 기준 12,232개 품목)

▶ [시행일] 2017. 1. 1. (FTA관세법 시행령」별표 15개 개정)

### III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수출검사위원회</li> </ul> </li> </ul>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ul> </li> </ul> <p>•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p>

▶ [기대효과] 인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수입업체 FTA 활용 애로 사전 예방

▶ [시행일] 2017. 1. 1. (FTA관세법 시행규칙」제8조 개정)

###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절차 개선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출자가 원산지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원하는 경우 당초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원산지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정정이 가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본 회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先정정발급 後원본제출 가능</li></ul>

-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의 정정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 상대국에 송부한 원산지증명서 회수에 따른 시간 지연 발생

- ▶ [시 행 일] 2017. 1. 1.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정)

### ■■■ YES FTA 기동대 운영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6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이동센터'(상담버스) 운영(대형버스 1대 운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부(직할) 세관별로 중소영세기업 신속 방문지원을 위한 'YES FTA 기동대' 편성 · 운영(승합차량 6대로 확대 개편)</li></ul>

- ▶ [기대효과] FTA상담버스 확대 개편 운용(대형버스 1 ⇒ 승합 6)을 통해 중소 기업 밀집공단의 접근성 확대 및 전국의 기업 상담 수요 동시 대응

- ▶ [시 행 일] 2017. 2월

## 02 &gt; 통관 · 물류 개선

## ■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대 지정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733

현 행	개 선
<p>■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지물질(60종), 제한물질(12종)</li> <li>유독물질(309종)</li> </ul> </li> <li>수출입승인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 생략</li> <li>수입신고시 화학물질명만 기재</li> </ul> <p>■ 전자파 적합성 평가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파 적합성평가대상(HSK 88개)</li> </ul> <p>■ 축산물 검역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생략)</li> <li>(수입) (생략)</li> </ul> <p>■ 식물 검역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생략)</li> </ul>	<p>■ 세관장 확 대상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li> <li>유독물질(517종) 확대</li> </ul> </li> <li>모든 화학물질(유독물질 제외) 자가사용목적 수입시 요건확인</li> <li>화학물질별 관리번호(CAS번호) 병기</li> </ul> <p>■ 전자파 적합성 평가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용품 안전인증물품 추가(HSK 355개)</li> </ul> <p>■ 축산물 검역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쇠고기 등 추가</li> <li>(수입) 카드한 양모 추가</li> </ul> <p>■ 식물 검역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양봉용 벌집 추가</li> </ul>

▶ **(기대효과)** 유독물질, 전기용품, 지정검역물 등 신규 지정을 통해 국민건강 · 안전성 확보

\* [수입] (現) 36개 법령, 6,662개 → (改) 34개 법령, 7,162개

\* [수출] (現) 12개 법령, 1,363개 → (改) 12개 법령, 1,389개

▶ **(시 행 일)** 2017. 1.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 ■■■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6

현 행	개 선
〈신 설〉	<p>■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세법 제246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li></ul>

- ▶ [기대효과] 세관검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수출입업체의 피해 및 불편 최소화
- ▶ [시 행 일] 2017. 1. 1. (『관세법』제246조의2 신설,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 ■■■ 관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제한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 행	개 선
■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신 설〉	<p>■ 관세사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적용 대상자 제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단행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li><li>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ul>

- ▶ [기대효과]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공직에서 배제된 자 등에 대한 배제기준 추가로 관세사 시험제도의 신뢰도 증가
- ▶ [시 행 일] 2017. 1. 1. (『관세사법』제6조의2제3항 신설)

### ■■■ 세율불균형 관세감면율 축소 기간 유예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행	개선																																																						
<p>■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기간 및 감면율</th> </tr> <tr> <th>2015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제조장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기간 및 감면율</th> </tr> <tr> <th>2016년</th><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60%</td><td>40%</td><td>20%</td><td>0%</td><td>0%</td></tr> </tbody> </table>	기간 및 감면율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0%	80%	60%	40%	20%	기간 및 감면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0%	40%	20%	0%	0%	<p>■ 반도체 제조장비 및 항공기(부분품 포함)에 대한 감면축소 일정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기간 및 감면율</th> </tr> <tr> <th>2017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 </tr> </thead> <tbody> <tr> <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제조장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기간 및 감면율</th> </tr> <tr> <th>2017년</th><th>2018년</th><th>2019년</th> </tr> </thead> <tbody> <tr> <td>40%</td><td>20%</td><td>0%</td></tr> </tbody> </table>	기간 및 감면율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0%	80%	60%	40%	20%	기간 및 감면율			2017년	2018년	2019년	40%	20%	0%
기간 및 감면율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0%	80%	60%	40%	20%																																																			
기간 및 감면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0%	40%	20%	0%	0%																																																			
기간 및 감면율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0%	80%	60%	40%	20%																																																			
기간 및 감면율																																																							
2017년	2018년	2019년																																																					
40%	20%	0%																																																					

▶ [기대효과] 세율불균형 감면율 축소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도체등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조세지원 형평성 제고

▶ [시 행 일] 2017. 1. 1. 「관세법」부칙 제11602호(2013.1.1) 제14조 개정)

### ■■■ 희귀병 치료 지원을 위한 관세 면제 품목 확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행	개선
<p>■ 희귀병 치료관련 관세면제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li> </ul>	<p>■ 희귀병 치료관련 관세면제 품목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제</li> </ul>

▶ [기대효과] 고가의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희귀병 보유환자의 치료비 부담 감소

▶ [시 행 일] 2017. 1. 1.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별표 개정)

### III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 기계등 감면세 적용 연장 등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자동화 감면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9개 품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자동화 감면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9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자동화 감면 적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12. 31.까지 한시 적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자동화 감면 적용 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12. 31. 한시 연장</li> </ul> </li> </ul>

- ▶ [기대효과] 금년도 한시 적용인 감면기간을 2년간 추가 연장하고, 감면품목을 79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국내 투자 지원
- ▶ [시 행 일] 2017. 1. 1.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2의4 개정)

### III 중소·중견기업이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차등 인상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1만분의 5</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액 2천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li> </ul> </li> <li>• 매출액 2천억원 이상 1조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억원+(2천억초과 금액의 1천분의 5)</li> </ul> </li> <li>• 매출액 1조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li> </ul> </li> </ul> </li> </ul>

- ▶ [기대효과] 매출액 대비 특허수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 창출
- ▶ [시 행 일] 2017. 1. 1.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개정)

## ■■■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요건확인 생략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3

현행	개선
<p>■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 시마다 요건확인</p> <p>※ 2015년도 보세공장 원재료의 요건확인 건수(1,661건)</p>	<p>■ 보세공장원재료 사용신고 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요건확인 생략</p> <p>– 마약, 총기 등 일부 요건을 갖추도록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외</p>

- ▶ [기대효과] 연간 요건승인신청 및 요건확인 업무등 약 9억원의 기업 및 요건기관 규제비용 절감
- ▶ [시행일] 2017. 1. 1. (『관세법』 제186조제2항 개정)

## ■■■ 보세구역에서 검역으로 채취하여 사용한 견본품 비과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7

현행	개선
<p>■ 보세구역에서 채취 후 사용 · 소비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채취한 견본품</li> </ul> <p>〈신설〉</p>	<p>■ 보세구역에서 채취 후 사용 · 소비된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하여 채취한 견본품</li> <li>• 검역, 검사 등 법률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채취한 견본품</li> </ul>

- ▶ [기대효과] 관계공무원의 검역 · 검사 등 공무수행 필요에 의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
- ▶ [시행일] 2017. 1. 1. (『관세법』 제161조 개정)

###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7

현 행	개 선
<p>■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li><li>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li><li>1년 이상 반입 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li></ul>	<p>■ 특허취소 기준 완화</p> <p>(좌 동)</p> <p>(좌 동)</p> <p>• 2년이상 반입 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p>

- ▶ **[기대효과]** 일시적인 자금부담으로 반입실적이 없는 보세창고업체에 대하여 특허취소기한 연장을 통해 보세구역 운영인의 부담 완화
- ▶ **[시 행 일]** 2017. 1. 1. (『관세법』 제178조 개정)

### ■■■ 연장까르네를 통한 A.T.A. 까르네 재수출기간 연장 허용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30

현 행	개 선
<p>■ A.T.A.까르네 재수출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증서 유효기간 – 1년</li></ul> <p>〈신 설〉</p>	<p>■ A.T.A.까르네 재수출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증서 유효기간 – (좌 동)</li><li>연장까르네 허용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li></ul>

- ▶ **[기대효과]** 재수출기간을 최장 2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간 무역 및 문화 교류 활성화
- ▶ **[시 행 일]** 2017. 1. 10. (『A.T.A. 까르네고시』 제12조 개정예정)

## ■■■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확대 및 재지정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5

현 행	개 선
<p>■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1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 황기, 뱀장어,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당 (설텁팅), 냉동옥돔, 직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가리비, 둠, 냉동꽁치, 김치, 식염, 식용 천일염, 맥주보리, 팥, 인삼제품, 흉삼</li> <li>· 명태(냉장·냉동 포함)</li> </ul> <p>〈신 설〉</p>	<p>■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8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냉장명태</li> <li>· 냉동꽃게, 대두, 참깨분, 참깨,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li> </ul>

▶ [기대효과] 국내 유통단계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도모

▶ [시 행 일] 2017. 2.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별표 1 개정)

## ■■■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원칙 예외사유 확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현 행	개 선
<p>■ 직접운송원칙*의 예외</p> <p>* 물류 법인이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시설·장비로 운송 등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 후 선적지나 적재 선박·항공기가 변경된 경우</li> <li>· 재해 등으로 운송 장비 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등</li> </ul> <p>〈신 설〉</p>	<p>■ 직접운송 원칙의 예외 추가</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의 수출입 신고 후 화주가 직접 운송 또는 다른 운송인에게 운송위탁을 하는 경우</li> </ul>

▶ [기대효과] 직접운송의무의 완화를 통한 규제 합리화

▶ [시 행 일] 2017년 2월 예정(「관세사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예정)

## ■■■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 물품' 추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6

현 행	개 선
<p>■ 통관 후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무미이행 물품</li><li>•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li><li>• 지식재산권 침해물품</li></ul>	<p>■ 통관 후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물품</li></ul>
<p>〈신 설〉</p>	

▶ **[기대효과]** 유통중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sup>\*</sup>'을 보세구역으로 회수하여 시정조치, 폐기, 반송 등의 조치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기대

\*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지 부착)한 물품

▶ **[시 행 일]** 20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개정예정)

## ■■■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등 확대 실시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23

현행	개선
<p>■ 보세공장원재료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li> <li>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단, 기계·기구의 작동 등 간접 투입요소는 제외)</li> <li>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li> </ul>	<p>■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세공장에서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제품</li> </ul> <p>(현행과 같음)</p> <p>〈삭제〉</p>

▶ **(기대효과)** 보세공장에서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IT산업의 연 매출 약 6천억원\*의 비용 절감 및 물류비용 약 300억원\*\* 절감

\* 11,810억(유망 IT업체(16개사) 2015년도 전체매출액) × 0.58(증가계수) = 6,849억원

\*\* 통관료 24.2억원, 보관료/운송료 334억원

- 통관료 : 32,278건(년간 수출입 패키징, 검사 건수) × 75천원(평균 수출입통관료) = 24.2억원

- 보관료/운송료 : 32,278건 × 1,034,574원(평균 보관/운송료) = 334억원

▶ **(시행일)** 20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개정예정)

### ■■■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7

현 행	개 선
〈신 설〉	<p>■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난 및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li><li>•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li></ul> <p>*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수출신고 전 반입의무 대상에서 제외 가능</p>

- ▶ [기대효과] 우범성이 높은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수출을 사전에 방지
- ▶ [시 행 일] 2017. 2월(「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의2 개정)

### ■■■ 보세판매장(면세점) 신규특허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042-481-7821

현 행	개 선
〈신 설〉	<p>■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 감점 근거 도입</li></ul> <p>*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공정거래법」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 제한</li></ul> <p>*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 상품가격이나 용역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등</p>

- ▶ [기대효과] 면세점산업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 ▶ [시 행 일] 20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개정예정)

## ■■■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입법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2

현 행	개 선
<p>■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신고 및 침해 우려 물품 통관보류 제도를 관세법에 규정하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간접신청절차 등은 관세청 고시**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신고사항(관세법 시행령 제2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li> <li>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li> <li>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li> <li>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li> <li>**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유효기간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년)</li> </ul> </li> <li>- 간접신청 절차</li> <li>- 신고 효력상실 사유*</li> </ul> </li> <li>*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 무효 · 말소, 신고자 권리상실사실과 다르게 신고, 신고자의 신고 철회 등</li> </ul> </li> </ul>	<p>■ 관세청 고시로 규정된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p>

▶ [기대효과]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 도모

▶ [시 행 일] 2017. 2월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37조 개정)

## ■■■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2

현 행	개 선
<p>■ 통관보류 기간 : 10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 제소시 연장 가능</li> </ul> <p>〈신 설〉</p>	<p>■ 연장 가능 사유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시</li> </ul>

▶ [기대효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시 행 일] 2017. 2월예정(「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개정)

### III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적용 법규 변경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644

현 행	개 선
<p>■ 농산물 등 원산지표시 적용 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외무역법」 적용</li></ul>	<p>■ 농산물 등 원산지표시 적용 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적용</li></ul>
<p>■ 원산지 위반행위 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외무역법」 적용</li><li>-(과징금) 3억원 이하 부과</li><li>-(벌칙)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li></ul>	<p>■ 원산지 위반행위 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적용</li><li>-(과징금) 2년간 2회 이상 위반자 ⇒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금액 부과</li><li>-(벌칙)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li></ul>

▶ **[기대효과]**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법을 적용토록 하여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적용법률

(기준)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개정)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하여 적용

▶ **[시 행 일]** 2017. 6. 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공포, 2016.12. 2.)

## ■■■ 반복 수입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확대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6

현행	개선
<p>■ 전자통관심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O 기업신고물품</li> </ul>	<p>■ 전자통관심사 대상 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반복수입거래 사전등록 물품</li> </ul>
〈신설〉	

- ▶ **[기대효과]** 동일계약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별 관리를 통한 신속통관 지원으로 기업의 물류시간 단축 및 심사업무 효율성 강화
- (거래등록) 반복거래여부, 업체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의 반복거래 신청을 받아 품목별 「반복거래등록번호」부여
  - (통관) 수입자가 「반복거래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등록내역과 신고내역이 시스템상 전자통관심사 확인 후 즉시 수리
  - (사후심사) 「반복거래등록번호」별 거래단위 사후심사
- ▶ **[시 행 일]** 2017년 6월 예정(「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예정)

## 03 > 세정지원

### III 개별소비세율 조정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현 행	개 선																
<p>■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열제리(7%)</li> <li>•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순발열량 5,500kcal/kg 이상</td><td>27원/kg</td></tr> <tr> <td>순발열량 5,500kcal/kg 미만 5,000kcal/kg 이상</td><td>24원/kg</td></tr> <tr> <td>순발열량 5,000kcal/kg 미만</td><td>21원/kg</td></tr> </tbody> </table>	구분	세율	순발열량 5,500kcal/kg 이상	27원/kg	순발열량 5,500kcal/kg 미만 5,000kcal/kg 이상	24원/kg	순발열량 5,000kcal/kg 미만	21원/kg	<p>■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6원/kg)</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순발열량 5,500kcal/kg 이상</td><td>33원/kg</td></tr> <tr> <td>순발열량 5,500kcal/kg 미만 5,000kcal/kg 이상</td><td>30원/kg</td></tr> <tr> <td>순발열량 5,000kcal/kg 미만</td><td>27원/kg</td></tr> </tbody> </table>	구분	세율	순발열량 5,500kcal/kg 이상	33원/kg	순발열량 5,500kcal/kg 미만 5,000kcal/kg 이상	30원/kg	순발열량 5,000kcal/kg 미만	27원/kg
구분	세율																
순발열량 5,500kcal/kg 이상	27원/kg																
순발열량 5,500kcal/kg 미만 5,000kcal/kg 이상	24원/kg																
순발열량 5,000kcal/kg 미만	21원/kg																
구분	세율																
순발열량 5,500kcal/kg 이상	33원/kg																
순발열량 5,500kcal/kg 미만 5,000kcal/kg 이상	30원/kg																
순발열량 5,000kcal/kg 미만	27원/kg																

▶ [기대효과] 개별소비세 합리적 조정 적용

▶ [시 행 일] 2017. 1. 1.(로열제리), 2017. 4. 1.(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정)

### III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준 간소화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84

현 행	개 선
<p>■ AEO 공인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531개</li> </ul>	<p>■ AEO 공인기준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462개(△6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기준 통폐합</li> </ul> </li> </ul>

▶ [기대효과] 공인기준 간소화로 AEO 공인소요기간 단축(△2개월) 및 연 394억 경제적 효과 창출

▶ [시 행 일] 2017. 1.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

### III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2

현행	개선
<p>■ 관세조사의 사전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지내용 : 대상, 사유 등</li> <li>통지예외 : 범칙사건, 증거인멸 우려 등</li> </ul> </li> </ul>	<p>■ 관세조사의 사전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 전으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현행과 같음)</li> </ul> </li> </ul>

- ▶ [기대효과] 관세조사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및 과세당국의 신뢰성 제고
- ▶ [시행일] 2017. 1. 1. (『관세법』 제114조 개정)

### III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7

현행	개선
<p>■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가격 :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 포장비, 권리사용료, 운송비 등</li> <li>-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되어 있는 경우</li> <li>※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음</li> </ul> </li> </ul>	<p>■ 특수관계자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 방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되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관장이 수입자(특수관계자)에게 구분·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제출 요구</li> <li>② 기한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산금액 전부를 가산요소로 봄</li> <li>· 다만, 수입자 요청 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제2방법 이하)</li> </ul> </li> </ul> </li> </ul> <p>* 법 시행 후 최초 수입통관 분부터 적용</p>

- ▶ [기대효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근거 마련
- ▶ [시행일] 2017. 1. 1. (『관세법』 제37조의4 개정)

## ■■■ HS 2017을 반영한 관세율표 개정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738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6,710개 세율 품목</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을 반영하여 별표 관세율표 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6,890개 세율 품목(180개 순증)</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2,243개 품목</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을 반영하여 HSK (10단위) 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2,232개 품목(11개 순감)</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HS 해설서(별표1), HS품목분류의견서(별표2)<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을 반영하여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li><li>■ (시행일) 2017.1.1.<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li><li>(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li><li>(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li></ul></li></ul>

- ▶ [기대효과] 국제협약과 통일된 국내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
- ▶ [시 행 일] 2017. 1. 1.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개정)

### ■■■ 환급특례법과 관세법의 충당규정 보완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현행	개선
<p>■ 환급금의 충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급특례법에 의해 결정된 환급금을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체납된 관세등에 충당 가능</li> </ul>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li> </ul>	<p>■ 환급금의 충당규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확정가격신고로 발생된 납부세액을 환급특례법의 환급세액으로 충당</li> </ul>

▶ [기대효과]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상계가능 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 [시행일] 2017. 1월(「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개정)

### ■■■ 환급금 충당내역 업체 통보 기능 개발

관세청 정보관리과 042-481-7796

현행	개선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금으로 관세 등 충당 시 충당내역 미통보</li> </ul>	<p>■ 환급금 충당내역 통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납된 관세 등을 환급금으로 충당 후 업체에 충당내역 통보</li> </ul>

▶ [기대효과] 환급금 처리내역을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게 통보함으로써 민원 편의 증진

▶ [시행일] 2017. 1월(전자통관시스템 개선)

### III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3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대상 물품의 설치 · 사용 장소 반입 기한</li> </ul> <p>* 할당관세·관세감면 등 적용 물품이 요건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통관 이후에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수리 후 1개월 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득이한 반입 지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 승인시 반입 기한 연장</li> </ul> <p>* (예 : 특수배관 등 대형 설비) 분리 운송 후 일부 재조립해 반입 → 1개월 이상 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수리 후 최대 3개월 내</li> </ul>

▶ [기대효과] 사후관리 대상 기업 부담 경감

▶ [시 행 일] 20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 제129조 개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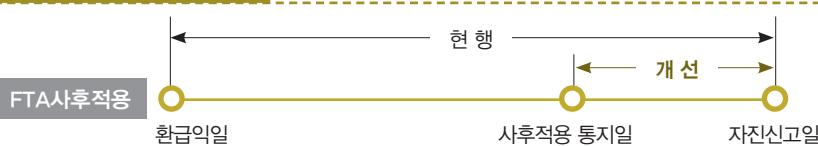
### III FTA협정 사후적용 시 가산금의 징수 기산일 변경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5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다환급 가산금 기산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한 날의 다음 날</li> </ul>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다환급 가산금 기산일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시는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날</li> </ul>

▶ [기대효과] 수입자가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기 전까지,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와 환급받은 금액은 정당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부과

#### 과다환급 가산금 기산일 비교



▶ [시 행 일] 2017년 2월 예정(「관세환특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개정예정)

### ■■■ 수출자 등 사망·합병 시 상속인 등에게 환급신청권 승계 신설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5

현 행	개 선
<p>■ 환급신청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li> </ul> <p>〈신 설〉</p>	<p>■ 환급신청인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자 등이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 해당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li> </ul>

▶ [기대효과] 실질적인 권리자가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 [시 행 일] 2017년 2월 예정(「관세환특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개정예정)

### ■■■ 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5

현 행	개 선
<p>■ 원재료 수입 후 2년(수출이행기간) 이내 제품 수출시 관세등 환급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이내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불산입</li> </ul> <p>※ 수출이행기간 연장 효과</p>	<p>■ 수출이행기간 불산입 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관장의 사전승인 시 불산입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li> </ul>

▶ [기대효과]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통한 수출 지원

▶ [시 행 일] 2017년 2월 예정(「관세환특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예정)

## ■■■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추가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1

현 행	개 선
<p>■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명 등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개 기관이 47종 자료 제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자치부) 부동산·회원권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 설〉</li> <li>〈신 설〉</li> <li>〈신 설〉</li> <li>〈신 설〉</li> </ul> </li> </ul> </li> </ul>	<p>■ 제출기관 및 제출자료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기관·8종 자료 추가(24기관 55종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자치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내역</li> <li>(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li> <li>(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li> <li>(법원행정처) 부동산 소유권, 전세권 및 저당권 등기 자료</li> <li>(금융회사) 금융거래내역</li> </ul> </li> </ul>

- ▶ [기대효과] 체납된 관세의 징수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
- ▶ [시 행 일] 2017.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별표3 개정)

## ■■■ 체납된 내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 확대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1

현 행	개 선
<p>■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만 체납되었을 것</li> <li>체납된 내국세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li> <li>체납된 내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li> </ul>	<p>■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경우</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삭제〉</p>

- ▶ [기대효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재산자료의 활용을 통한 체납 정리의 효율성 제고
- ▶ [시 행 일] 2017년 2월 예정(「관세법 시행령」제1조의2 개정예정)

###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현행	개선
<p>■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li> </ul> <p>〈신설〉</p>	<p>■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과 같음)</li> <li>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li> </ul>

▶ [기대효과]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를 통한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관리 지원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시행일] 2017. 4. 1.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2항 개정)

### ■■■ 국세 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이 실시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2

현행	개선
〈신설〉	<p>■ 국세 체납자의 수입품(휴대품 포함)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p> <p>* 「국세징수법」 제30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해서 통관보류*</li> <li>* 「관세법」 제237조</li> </ul>

▶ [기대효과] 국세체납자의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범정부 조세체납관리체계 구축

▶ [시행일] 2017. 4.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2, 「관세법」 제237조 개정)

## 04) 권리구제

### III 경정청구 처리기한 경과시 불복청구 근거 명확화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현 행	개 선
<p>■ 경정청구 처리기간 경과시 불복청구 〈신설〉</p>	<p>■ 경정청구 처리기간 경과시 불복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 마련</li></ul>

- ▶ [기대효과] 납세의무자 권리구제 강화
- ▶ [시행일] 2017. 1. 1. (『관세법』 제38조의3 개정)

### III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의 각하 근거 명확화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현 행	개 선
<p>■ 심사청구 각하 근거 명확화 〈신설〉</p>	<p>■ 심사청구 각하 근거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각하 결정 사유에 포함</li></ul>

- ▶ [기대효과] 결정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 미비점 보완
- ▶ [시행일] 2017. 1. 1. (『관세법』 제128조 개정)

## ■■■ 관세 소액사건에 대한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현행	개선
<p>■ 청구대리인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li> </ul>	<p>■ 청구대리인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사, 관세사 뿐만 아니라 친족을 대리인으로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족)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li> </ul> </li> </ul> <p>*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p>

▶ [기대효과] 납세의무자 권리구제 강화

▶ [시 행 일] 2017. 1. 1. 「관세법」 제126조제2항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신설예정)



부록2  
2017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 ■■■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제도 도입

(법인심사과 042-481-785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은 잠정가격신고 대상 아님</p>	<p>■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후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li> </ul> <p>*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p>

- ▶ [기대효과] 다국적기업에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
- ▶ [시행일] 2017. 7. 1.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8조 및 제51조 개정)

### ■■■ 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

(법인심사과 042-481-798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전년도 수입액 1억불 이하 기업 중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 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li> <li>수입규모별 4~10% 이상 일자리창출 예정 기업</li> </ul>	<p>■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로 관세조사 유예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20% 이상 기업</li> <li>수입규모별 2~4% 이상 일자리창출 예정 기업</li> </ul>

- ▶ [기대효과]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실업문제 완화 및 경제 활력 제고
- ▶ [시행일] 2017년 7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요건 검토 후 관세조사 유예 기업 선정)

###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방법 명확화

(법인심사과 042-481-785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방법 불명확	■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 방법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li></ul>

▶ [기대효과] 민원인 혼란 및 불필요한 행정업무 방지

▶ [시 행 일] 2017. 7. 1.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3)

### ■■■ 임시개청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 납부절차 개선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임시개청 · 파출검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행주기) 매일</li><li>• (납부기한) 발행일의 다음 날</li></ul>	■ 임시개청 · 파출검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행주기) 월 1회 통합발행</li><li>• (납부기한) 발행일로부터 15일</li></ul>

▶ [기대효과] 납세의무자의 납부편의 제고

▶ [시 행 일] 2017. 7. 17.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2017. 7. 19. 이후 발행될 고지서부터 적용)

### ■■■ 소액체납자에 대한 월별납부요건 완화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월별납부 승인 배제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납액 규모 관계없이 월별납부 배제</li> </ul>	<p>■ 월별납부 승인 배제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납액 3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별납부 배제요건에서 제외</li> </ul>

▶ [기대효과] 약 5천여 소액 체납업체의 월별납부 이용(연간 약 9,000억원)시, 이자비용 40억원 절감

▶ [시 행 일] 2017. 6. 15.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 ■■■ 중국산 에이치 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 추가

(세원심사과 042-481-77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표 1 제6호</li> </ul> </li> </ul>	<p>■ 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표 1 제6호</li> </ul> </li> </ul>

▶ [기대효과] 중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 중 가격수정을 약속한 업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대상업체로 등록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유도

▶ [시 행 일] 2017. 7. 19.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개정)

###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 대상 조정

(통관기획과 042-481-781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감면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34개 품목 운영</li></ul>	<p>■ 감면 대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33개 품목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외)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li><li>- (추가)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li></ul></li></ul>

▶ [기대효과]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

▶ [시 행 일] 2017. 7. 19.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1 개정)

### ■■■ 특송화물에 대한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

(특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신 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법성이 없는 물품을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 및 수리</li></ul>	<p>■ 스마트 통관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법성이 없는 물품을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 및 수리</li></ul>

▶ [기대효과] 해외직구물품 급증으로 인한 특송화물 처리 지연 해소

▶ [시 행 일] 2017. 7. 24. (시범 운영 : 특송센터 입주 4개 업체)

※ 확대 실시 예정(2017년 10월 잠정)

2017. 7. 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 ■■■ 원상태수출 절차 간소화로 수출지원

(통관기획과 042-481-780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원상태수출시 수입내역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상태 수출시 수입한 때 납부한 관세 등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신고서 항목에 수입신고번호 등 기재</li> </ul> </li> </ul>	<p>■ 원상태수출 절차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실 수출기업에 원상태 수출신고시 납부한 관세 등 증명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신고서 항목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할증명서 등 수입관련 증빙 내역 기재 생략 가능</li> </ul> </li> </ul>

▶ [기대효과] 성실 수출기업의 원상태수출시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지원

▶ [시 행 일] 2017년 하반기(「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

## ■■■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통관기획과 042-481-781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염, 천일염(비식용), 대두유(비식용), 볶어(금밀복), 천일염(식용), 가리비, 둠,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보리, 인삼제품, 홍삼, 팥,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작약(식품용), 황금(식품용),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명태, 건고추, 새우, 냉장명태,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설탕), 냉동꽁치, 김치,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li> </ul>	<p>■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일염(비식용), 대두유(비식용), 볶어(금밀복), 천일염(식용), 가리비, 둠,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냉동조기,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팥,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작약(식품용), 황금(식품용),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명태,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설탕), 냉동꽁치, 김치,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냉장갈치,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li> <li>(삭제) 식염, 보리, 인삼제품, 홍삼</li> </ul> </li> </ul>

▶ **[기대효과]**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시 행 일]** 2017. 8. 1.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품목		지정기간
재지정	냉동조기	2017.8.1 ~ 2018.7.31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신규지정	냉장갈치	2017.10.1 ~ 2019.1.31
	냉동멸치	
	냉동기름치	
	꽃가루	

### ■■■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전산화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b>■ 보세운송수단 신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세운송신고필증에 수기기록 및 상호 교환 · 보관</li><li>*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제9호, 제12호</li></ul>	<b>■ 보세운송수단 신고 전산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세운송수단정보(차량번호)를 화물 반출 전까지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으로 전송</li></ul>

▶ **[기대효과]** 보세운송수단 신고를 전산화하여 해당 서류 교환절차 및 보관 의무 완화

▶ **[시 행 일]** 2017. 8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2조 개정 및 별지 서식 제9-2호 신설 예정)

### ■■■ 종합보세구역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신청서 서식 개정

(수출입물류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기대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시 행 일] 2017. 10월(「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

### ■■■ 세관장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

(통관기획과 042-481-789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요건확인 수작업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관공무원이 수출입신고서류 심사시 수출입요건을 수작업으로 확인</li> </ul>	■ 요건확인 전자심사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자적으로 상호대시하여 수출입요건 심사</li> </ul>

▶ [기대효과] 신속·정확한 요건확인으로 신속통관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

▶ [시 행 일] 2017. 10월(「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9조 개정 예정)

### ■■■ 한–칠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FTA집행기획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칠레 FTA C/O 작성시 HS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HS 2007 기준으로 C/O 5번란(HS코드) 및 6번란(Preference Criterion) 작성</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칠레 FTA C/O 작성시 HS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HS 2012 기준으로 C/O 5번란(HS코드) 및 6번란(Preference Criterion) 작성</li></ul></li></ul>

- ▶ [기대효과] HS 2012기준에 따른 C/O작성으로 수출자의 편의제고
- ▶ [시 행 일] 2017. 7.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원산지규정) 개정 교환각서』 발효)

### ■■■ 협정관세 사후적용시 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

(FTA집행기획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증빙자료* 서면제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납세신고정정신청(경정청구)</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증빙자료 전자제출</li></ul>

- ▶ [기대효과] 신속한 협정관세 적용으로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비용 절감
- ▶ [시 행 일] 2017. 10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

##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b>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 최대 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천만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1천만원(법 제32조제2항)</li> </ul> </li> <li>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율을 20%로 규정</li> </ul> <p>* 자진신고, 중소기업(1회 감경으로 한정), 기타 경미한 과실 등</p>	<p><b>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상향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 최대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1억원(법 제32조제1항), 5천만원(법 제32조제2항), 3천만원(법 제32조제3항), 1천만원(법 제32조제4항)*으로 세분화 및 상향조정</li> </ul> </li> <li>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율을 50%로 확대 및 과태료 금액의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진신고, 중소기업, 기타 경미한 과실 등</li> </ul> </li> </ul>

▶ [기대효과]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상향조정으로 수출입기업의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 [시 행 일] 2017. 7. 18.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4 개정)

## ■■■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각각 과태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만원(또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li> </ul> </li> </ul> <p>※ (예시) 법 16조에 따른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없이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천만원씩 6회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로 총 6백만원(100만원X6) 부과</li> </ul> </li> <li>1천만원씩 4회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로 총 4백만원(100만원X4) 부과</li> </ul> </li> </ul>	<p>■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금액의 2%(또는 4%)</li> <li>다만,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총 위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과태료 100만원(또는 200만원) 부과</li> </ul> </li> </ul> <p>※ (예시) 법 16조에 따른 한국은행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없이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천만원씩 6회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반금액의 4%인 240만원(40만원X6) 부과</li> </ul> </li> <li>1천만원씩 4회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천만원 미만(4천만원)으로 200만원 부과</li> </ul> </li> </ul>

-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불복 절차, 체납처분 등 행정낭비 요소 제거 및 과태료 납부 이행율 제고
- 수개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었던 불합리 개선

- ▶ [시 행 일] 2017. 7. 1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별표4 제2호 사목~하목 개정)

## ■■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 추진

(국제협력팀 042-481-79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규〉	<p>■ 해외 통관장벽 타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체계 구축(▲문제점 파악 및 전담팀 구성, ▲통관 애로 해소 지원, ▲제도 및 시스템 개선)</li> <li>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을 위해 현지 기동팀 파견</li> </ul>

▶ [기대효과]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적기 해소·통상 지원

\* 해외 통관애로 현황 : 407건(2014) → 444건(2015)→461건(2016)

▶ [시 행 일] 2017. 9월 ~ 11월(잠정)

## ■■ 한-호주, 한-UAE AEO MRA 체결

(심사정책과 042-481-786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도미니카, 인도, 대만, 태국</li> </ul> </li> </ul> <p>〈추가〉</p>	<p>■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li> <li>호주, UAE</li> </ul> </li> </ul>

▶ [기대효과] AEO기업 통관혜택\*로 호주, UAE 수출 확대 기대

\* (MRA 혜택) 검사율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조치 등

▶ [시 행 일] 2017. 7. 6. 체결

## ■■■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Help-Desk) 상담서비스 개선

(정보관리과 042-481-775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상담 서비스(Help-Desk)</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스템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전산 관련 문의를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응대</li></ul>	<p>■ Help-Desk 상담창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콜백(Call-back) 서비스) 먼저 걸려온 전화 응대로 인해 전화상담 연결이 지연될 경우,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 처리</li><li>(인터넷) UNI-PASS에 즉문·즉답 가능한 게시판(Q&amp;A) 신설</li></ul>

- ▶ [기대효과] •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 전화상담 연결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불만 해소

\* 상담원 전화연결 대기시간 지연(평균 1분 20초)으로 응답포기율(월평균 8~10%) 지속 발생 (응답포기율 = 통화포기건수 / 총 통화시도건수)

-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Help-Desk) 상담서비스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 [시 행 일] 2017. 10월

## 부록3

# 업무분야별 상세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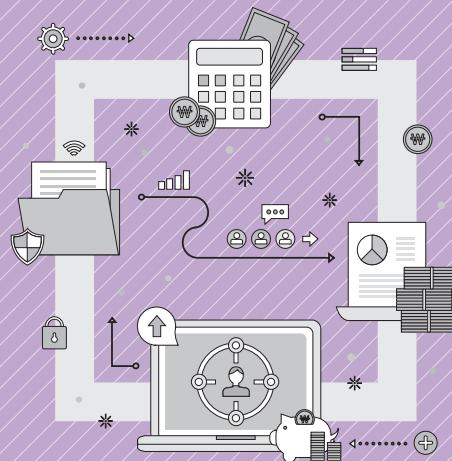
수출입통관 안내

FTA 활용 안내

관세부과·징수와 환급

관세조사 안내

납세자권리구제 안내





## 수출입통관 안내

- 01 › 일반 수입통관 절차
- 02 › 수출통관 절차
- 03 › 특송물 · 우편물 수출입통관
- 04 ›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
- 05 › 관세감면 ·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 06 › 원산지 표시
- 07 ›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01 > 일반 수입통관 절차

### ■■■ 수입통관 개요

#### ▶ 목적

- 수입통관단계에서 적법·적당한 수입신고는 자체 없이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로 줄이고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

#### ▶ 용어의 정의

- 심사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한 것
- 물품검사란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

### ■■■ 수입신고

#### ▶ 신고의 시기

- 수입의 신고는 통상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가능하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도 수입신고(입항전 신고, 출항전 신고) 가능

-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 가능
  - 출항전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관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점, 해상화물은 관세법 제140조에 따른 하역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
  - 입항전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관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적하목록 제출시점, 해상화물은 관세법 제140조에 따른 하역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
  -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 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

#### ▶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의 요건

-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는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물품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대상에서 제외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다만, 당해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법령의 시행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제외)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 【수입신고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 비교】

구 분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신고시기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의 경우 1일전) 으로 선박(항공기) 출항후 입항(하선[기] 신고)전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전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도착후
신고대상 물품	-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 일본·중국·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 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도착예정 보세구역 관할세관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세관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선박(항공기)이 출항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 수리 시기	검사 생략	적하목록 제출후	적하목록 제출후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검사 대상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 ▶ 신고세관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함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당해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함.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신고인

-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물품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함

### ▶ 신고의 효력발생 시점

-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서가 통관지세관에 접수된 시점

### ▶ 신고시 제출서류

-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각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하거나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입시 제출서류

-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시 제출)
-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 선하증권(B/L)부분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부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 · 수량을 기재,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검사 · 검역 · 허가 · 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수입요건 구비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
-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할당 · 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 · 치어의 번식 · 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류제출해야 하는 경우

### 종이서류 제출대상

- 김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 제2호와 제15호(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함) 해당물품
  -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소액면세대상물품
  - 다.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른 감면대상 물품
  - 라.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 마.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 바.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기공물품
  - 사. 규칙 제8조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물품
  - 아.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 자.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 부과고지 대상물품
- 신고수리전 반출대상물품
- 제1호에서 제6호 이외의 경우로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전산장애 등으로 첨부서류 전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B/L분할신고 및 수리

-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관리에관한 고시」 제5장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 가능

### B/L분할이 가능한 경우

-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B/L을 분할하여 신고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 불가

## III 신고의 취하 및 각하

### ▶ 신고의 취하

- 수입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 가능
- 신고의 취하는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 취하(승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
- 수입신고의 취하는 수입신고로부터 수입신고수리가 되기까지는 물론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라 할지라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입물품의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취하 가능
  - 운송기관·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 취하 불가

### 수입신고 취하 사유 및 부적정 사례

#### ◆ 수입신고 취하 사유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입신고 취하 부적정 사례

- 경기불황 등에 따른 업체의 자금사정
- 감면신청,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누락
-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취하
- 국내 판매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국내 판로 미확보 등

### ▶ 신고의 각하

- 세관장은 아래의 경우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멸각 · 폐기 · 공매 · 경매낙찰 · 몰수확정 ·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보완요구 및 통관보류

#### ▶ 보완요구

- 수입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첨부서류 누락,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서류제출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신고인에게 당해사항에 대해 보완요구 가능

## ▶ 통관보류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이 보류되고 통관보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물품반출 불가

-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범칙협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
-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III 신고수리전 반출

- ▶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가능

### 신고수리전 반출 요건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축물자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 포함)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품목분류 및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수입신고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나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미조립상태 분할선적물품 범위 및 적용

#### ◆ 「분할선적물품」의 정의

- 수출국의 선적시점에서 이미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하나의 운송수단(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을 2개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수화에 걸쳐서 분할선(기)적하여 수입하는 물품

### ◆ 수리전반출 대상 : 아래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

-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HS관세율표해설서 통칙2(가))
-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되는 물품
- 수입통관 후 단순조립(연결, 리벳, 용접 등) 이상의 추가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 단일계약에 의해 1개국에서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단일계약에 의하더라도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회사에서 각각 수입되는 경우 제외)

-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세관장은 신고수리전 반출기간 중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도래전에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화주 또는 비축물자 수입자에게 당해관세를 부과 조치



#### 문의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51 / 042-481-7816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37조, 제241조 내지 제250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내지 제147조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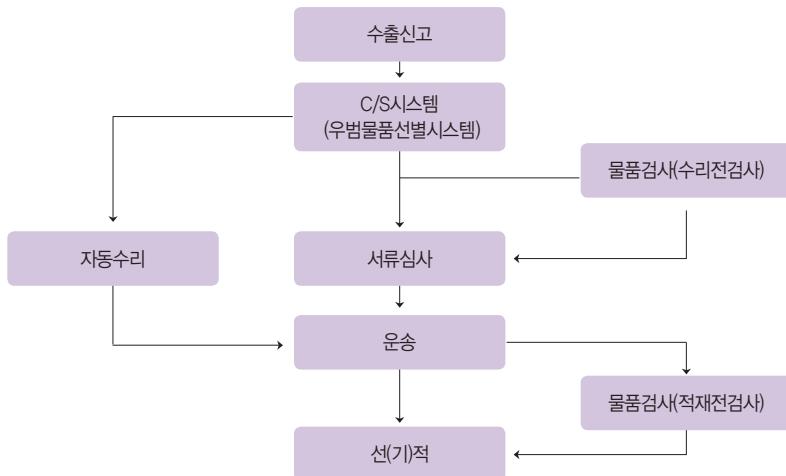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입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

## 02 > 수출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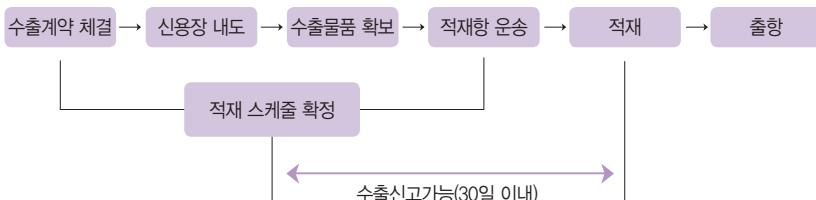
### III 수출통관시 정확한 내역 신고

- 수출신고는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죄(관세법 제276조), 밀수출입죄(관세법 제269조), 가격조작죄(관세법 제270조의2)

### ▶ 수출통관 절차



### ▶ 수출 절차



##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통하여 WMD 확산 통제
  - 우리나라는 4개 체제 모두 가입하였고, 대외무역법에 규정 · 통제

### 【국제수출통제 체제】

핵무기	생 · 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NSG <sup>1)</sup> 46개 회원국	AG <sup>2)</sup> 41개 회원국	MTCR <sup>3)</sup> 34개 회원국	WA <sup>4)</sup> 41개 회원국

1) NSG (Nuclear Suppliers Group) : 핵공급국그룹, 원자력 물자 관련 통제

2) AG (Australia Group) : 호주그룹, 생화학무기 관련 통제

3)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미사일 관련 통제

4) WA (Wassenaar Arrangement) : 바세나르체제, 재래식 무기 · 이중용도 품목 관련 통제

### 【국제수출통제 구조】

구 분	비핵산조약	다자협의체	비고(전략물자수출입고시)
재래식무기	–	· 바세나르체제(WA) – 설립 : 1996년 – 회원 : 41개국	· 별표2(제1부~제9부) – 이중용도품목 · 별표3 – 군용품목
WMD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 핵비확산조약(NPT) – 설립 : 1970년 – 회원 : 190개국	· 별표2 – 원자력전용품목(제10부) – 이중용도품목(제1부~제9부)
	미사일	–	· 별표2(제1부~제9부) – 카테고리1(로켓, 무인비행체 등의 원제품과 그 하위시스템 으로 사거리 300km 이상, 탑재중량 500kg 미만의 것) – 카테고리2(로켓용 추진시스템, 발사장비, 지상지원장비 또는 미사일개발 관련소재)
	화학무기	·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설립 : 1997년 – 회원 : 188개국	· 호주그룹(AG) – 설립 : 1985년 – 회원 : 41개국
	생물무기	·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설립 : 1975년 – 회원 : 165개국	· 별표2(제1부 · 제2부) – 1, 2, 3종 화학물질 – AG 1~6

### ■■■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 실시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짐
-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바꿔치기 등 행위 차단을 위해 적재지에서 불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에 하여야 함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혀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음

### ■■■ 중고차 및 스마트폰 수출시 유의사항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음.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반드시 수출말소하여야 함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함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 진행



###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 적재이행 완료 의무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관세법 제251조)

###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 방위사업청장 수출허가서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확인서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5)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 · 소총 · 기관총 · 포, 화약 · 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 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 · 식물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 · 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서
(7)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10)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11)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신고확인서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인삼증자	•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3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246조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동법 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제31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 03) 특송물품 · 우편물 수출입통관

### III 특송물품

#### ▶ 특송물품의 신고유형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분류

- (목록통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
  - (대상)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 되는 상용견품
  - 다만, 아래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됨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아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 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 · 주류 · 담배류 ⑧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⑩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⑪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간이수입신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한미FTA 특송물품 통관특례 해당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다만 아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함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①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②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할당 ·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④ 법 제83조에 따른 유통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⑤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⑥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⑦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⑧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⑨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⑩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⑪ 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 (일반수입신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통상 관세사 등을 통해 신고 위임(관세사 연락처 등 문의 :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
  - (대상)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용 물품, 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 배제대상물품이 대상이 됨
- (소액물품 등의 면세통관) 수입신고한 물품 중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면세통관 가능
  - ①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이하인 물품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법 제25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특급탁송물품, 전자상거래
  -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III 우편물

##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

- 국제우편을 통하여 해외 친지나 거래회사에서 송부해 주는 물품, 인터넷 등을 통해 반입하는 우편물품(서신은 제외)에 대해 별도 통관절차 운영
- 우편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방지를 위해 통관우편국을 지정하여 집중통관하거나 X-ray 투시기 등 검사를 통하여 면세대상물품, 정식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 제한 물품 등으로 구분·처리
- 현장면세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으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

## ▶ 면세대상 우편물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 ※ 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으로 나누어 수입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 등에 해당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 신고대상 우편물

- (일반수입신고)
  - ①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②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③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④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물품
  - ⑤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 ⑥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

#### ▶ 신고방법

- (일반수입신고) 일반적으로 관세사(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가 신고를 대행하며, 송품장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등 관련 서류 필요

- (간이신고) 간이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메일 (E-M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신주소 : minwon9@customs.go.kr</li> <li>간이통관신청서 내용 중 ① 통관번호, ② 우편물내용, ③ 우편물가격, ④ 수취사유, ⑤ 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 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여 이메일(E-mail) 송부</li> </ul>	
팩스 (F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팩스(Fax)번호 : 032-720-7491, 7492</li> <li>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Fax) 전송</li> </ul>	
인터넷 (Internet)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청 모바일웹(<a href="http://m.customs.go.kr">http://m.customs.go.kr</a>) 접속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gt; '항공편 국제우편물' 배너 클릭</li> </ul>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I-PASS(<a href="http://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a>) : 로그인 →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 통관신청서' 클릭</li> <li>세관 홈페이지(<a href="http://post.customs.go.kr">http://post.customs.go.kr</a>) '인터넷 통관신청' 배너 클릭 → 절차안내 확인 후 '관세청 인터넷포탈 바로가기' 클릭 ※ 공인인증서 필요</li> </ul>
우편 (P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송부</li> <li>보내는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li> </ul>	

-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관련 구매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미신청시 적용불가)
  - \*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원산지증명 면제 규정에 따라 구매처(국기) 및 가격 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 \* FTA 협정세율은 관세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
- ▶ 풍속저해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동·식물 검역 불합격 물품, 성분 불명확 의약품(다이어트약), 안보위해물품(모의총포, 조준경, 도검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수입이 불허된 물품은 반입 제한.
  - \* 「관세법시행령」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1개라도 통관 불허
- ▶ 우편물 보관기간은 「국제우편규정」 제31조에 따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45일 연장가능)이며 보관기간내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반송됨



### 문의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6, 7852

☞ 우편물 해당기관 연락처

통관	항공우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간이신고(콜센터) : 032-720-7400 ※ 일반수입신고 : 032-720-7421~7
	해상우편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비즈니스센터	• 통관안내 : 055-783-7420~3
동 · 식물 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032-740-2683~4 • 식물검역 : 032-740-2088~9
도착, 보관, 배달		국제우편물류센터	• 콜센터 : 1588-1300 • 통관계 : 032-745-9747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54조의2, 제258조, 동법 시행령 제261조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특급탁송물품, 국제우편물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http://post.customs.go.kr>)

## 04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

### III 관세감면 개요

- 관세 감면제제도는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그 수입자에 대하여 관세납부 의무를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
- 외교관례, 기술개발 주도산업 · 방위산업의 육성, 학술연구의 촉진, 가공무역의 증진, 기타 사회정책의 수행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승인시의 조건 유무에 따라 무조건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로 구분

### III 법 조항별 관세감면 내용

####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

- 의의
  - 외교관에 대한 국제관례상 면세특권을 관세법에 규정하여 외교관의 공용품과 공관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용품 등에 대하여 무조건 관세 면세
  - 정부와 사업계약을 하는 업무용품 및 국제기구 등이 파견한 고문관 등의 사용물품은 외교관 면제에 준하여 관세 면제
- 면세대상
  -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 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 · 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 ⑥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 양수제한
    - 외교적 특권이 남용되어 면세물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양수를 제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음
      - \* 자동차(자동차륜차, 자동이륜차 포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엽총
    -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

##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89조)

- 의의
  -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분품, 부속기기 포함)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부분품이나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수리함으로써 기술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적의 감면제도

- 면세대상
  - ①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②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지정공장제도
  - 원재료의 감면세를 받고 수입통관한 물품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도록 세관장이 3년 이내로 지정하여 그 공장에만 반입하여 제조 수리하도록 하는 제도

###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관세법 제90조)

- 의의
  - 교육,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의 촉진과 문화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 등에 대하여 감면하는 제도
- 감면대상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 · 교육용 · 훈련용 ·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③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 교육용품 · 훈련용품 · 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감면율

– 100분의 80. 다만, 공공의료기관(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제외)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

▶ 종교 · 자선 ·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1조)

○ 의의

–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한 관세감면으로 사회복지의 향상, 공익사업의 달성, 종교자선 등 사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통한 국가의 지원을 실현하는 감면제도

○ 감면대상

①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518호 및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파이프오르간 외의 관세율표 제8519호 · 제8521호 · 제8522호 · 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②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 ·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

③ 국제적십자사 · 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④ 시각 · 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 · 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 의의
    - 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기증 받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감면대상
    -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관세율표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하며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②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품 제외
    - ③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 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⑦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⑧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특정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3조)

○ 의의

- 사회정책목적상 공익사업, 공공이익추구, 국민체육향상 등 특정용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감면대상

- ①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③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 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④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
- 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 ⑥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 ⑦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⑧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 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 ⑩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 ⑪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 ⑫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⑬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⑭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 ⑮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 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⑯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 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4조)

- 의의
  - 상품목록, 견품 등 소액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감면대상
  -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 ②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 ③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관세법 제95조)

### ○ 의의

-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과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폐기물처리 및 기계, 기구 등과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 감면대상

- ①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②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③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감면율

- ① 및 ②의 물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
- ③의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100분의 30(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 ▶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6조)

### ○ 의의

- 여행자의 입국사유, 체재기간 등을 고려한 여행자 휴대품과 거주이전 사유,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

○ 감면대상

- ①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 체재기간 ·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②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③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 감면율

- 100분의 100으로 관세전액 면제

▶ 재수출면세(관세법 제97조)

○ 의의

- 일시 수입된 물품을 원형 그대로 재수출하거나 가공 · 제조된 후에 재수출함으로써 교역의 증진, 귀속의 증대, 외화의 절약, 기술의 도입,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 창출을 위한 감면제도

○ 감면대상

-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않은 비디오테이프
-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 중 해당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국제적인 회의·화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 일시 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 ·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 · 기구
-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 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
-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 ②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
-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 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

#### ○ 가산세 징수

-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100를 가산세로 징수

#### ▶ 재수출감면세(관세법 제98조)

##### ○ 의의

- 장기간의 내용연수를 가진 공사용 기계 · 기구나 수리 · 가공용 기계 · 기구를 외국으로부터 빌려와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다시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사용하여 사용 후 다시 돌려주는 경우 등에 국내에서 사용된 가치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재수출하는 잔여의 가치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

##### ○ 감면대상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② 해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 감면율

재수출기간	감면율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 관세액의 85%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 1년 이내	해당 물품 관세액의 70%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 2년 이내	해당 물품 관세액의 55%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 3년 이내	해당 물품 관세액의 40%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 4년 이내	해당 물품 관세액의 30%

▶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

○ 의의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어떤 사정에 따라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그 관세를 면제하는 감면제도입니다.

○ 감면대상

①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②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③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 ▶ 손상감세(관세법 제100조)

- 의의
  - 수입신고한 물품이 신고의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감세하는 경우와 관세감면 받은 물품을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로 추징할 때 그 물품이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감세하는 감면제도입니다.
- 관세경감액
  - 다음 각 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함
  - ① 수입물품의 변질 ·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 ②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변질 ·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관세법 제101조)

- 의의
  - 원재료 또는 물품을 수출하여 일정한 물품으로 제조 · 가공하여 수입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도록 하여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감면제도
- 감면대상
  - ①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②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 관세경감액

- ①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 ②의 물품 : 가공 · 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 ■■■ 관세감면 신청시기

### ▶ 신청시기(관세법 제88조)

-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면신청서 내용(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의 주소 · 성명 및 상호
-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 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 감면의 법적 근거
- 기타 참고사항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가능

#### 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

-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III 관세분할납부

### ▶ 대상물품(관세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59조)

#### ○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 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이상)
- 법 제51조 내지 제72조(탄력관세)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승인의 범위 확대

-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 가능

### ▶ 분할납부기간

-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
-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4을 참조

### ▶ 신청시기(관세법시행령 제126조)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



문의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903

## 05 › 관세감면 ·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 III 사후관리 개요

#### ▶ 사후관리 제도의 의의

- 용도세율 적용물품,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 부담의 경감을 받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건대로 사용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관세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경감된 세액에 대한 관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함

#### ▶ 사후관리 대상물품

- 용도세율 적용을 받은 물품
- 세율불균형물품 감면세
-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 종교용품 등 면세
- 특정물품 면세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관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 조세특례한법에 따라 관세 경감을 받은 물품
- 외교관용 면세 물품 중 양수제한물품
- 재수출 면세물품
- 재수출 감면물품
- 관세감면물품 중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물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관세감면받는 물품
- 기타 법령 · 조약 · 협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 ▶ 사후관리 기간

구 분	사후관리 기간
<p>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p> <p>가. 부분품 및 원재료</p> <p>나. 기계·기구·시설용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연수 5년 이상</li> <li>(2) 내용연수 4년</li> <li>(3) 내용연수 3년 이하</li> </ul> <p>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p> <p>※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p>	<p>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p> <p>3년 2년 1년 1년</p>
<p>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물품중 양수제한 물품)</p> <p>※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88조제1항의 물품</p>	3년
<p>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p> <p>※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p> <p>※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p>	<p>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p>
<p>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p> <p>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p> <p>※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 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p> <p>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p> <p>다. 연구용·교육용 등 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연수 4년 이상</li> <li>(2) 내용연수 3년 이하</li> </ul> <p>※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p>	<p>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p> <p>1년 2년 1년</p>
<p>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선·장애인용품)</p> <p>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연수 5년 이상</li> <li>(2) 내용연수 4년</li> <li>(3) 내용연수 3년 이하</li> </ul> <p>※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p>	<p>3년 2년 1년</p>

구 분	사후관리 기간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지 제17호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나. 제3호 해당물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1년 6개월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분할납부최종납부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및 제20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 이외의 물품	3월, 다만, 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최초사용일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3년 3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3년 3년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제1항 해당물품	3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제1항 해당물품	3년
1.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 · 인수하지 않음) 2.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자유무역예정지역 반입사실 확인일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 · 인수 하지 않음) (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관세감면물품 등	3년

## ▶ 사후관리 세관

-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할지세관)
- 단, 재수출 면세물품,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 · 조약 ·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통관지세관의 수입통관부서

## ■■■ 사후관리 절차



## ■■■ 업체 의무사항

### 1. 용도외 사용(양도 · 임대)시 승인신청 의무(고시 제11조)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 중에 해당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 양수 · 임대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설치(사용)장소 변경 신고 의무(고시 제12조제1항)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 3. 일시반출 · 기간연장 신고 의무(고시 제12조제3항, 제4항)

사후관리물품을 사후 보증수리 또는 고장수리 · 성능검사 · 시험 · 연구 등을 위해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일시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일시반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시반출기간 내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기간연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4. 멸실 사실 신고 의무(고시 제13조)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멸실 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폐기 ·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 의무(고시 제14조)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수출(일시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폐기 · 수출(일시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업체 합병 · 분할합병 등의 신고 의무(고시 제15조)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 중 ① 법인이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되는 경우 합병 등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②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인 ③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④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 ⑤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본인은 자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7. 설치(사용)장소에 1월내 반입 의무(고시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수리일(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수도 물품은 그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수리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8. 통관표지 부착 의무(고시 제18조제2항)

아래 물품(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제외)은 통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모델 · 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사후관리물품의 모델 · 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 9.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 · 관리의무(고시 제19조)

사후관리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하여 설치 · 사용 내역 및 일시반출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3

## 06 > 원산지 표시

### ■■■ 원산지 표시 개요

#### ▶ 원산지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 채취 · 제조 · 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 · 디자인 수행국 · 기술 제공국 · 상표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
- 그 외, 원산지로 표시될 수 있는 범주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홍콩, 마카오, 팜, 사모아제도 등과 같이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의 경우 독립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참조)

#### ▶ 원산지제도의 목적

- 원산지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
- 반면, 공급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여 사회 건전성을 높이고 불법 우회 수출입을 방지하여 국가 간 무역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
-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7월부터 원산지표시 제도를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도입 · 시행하고 있음

### ■■■ 원산지 표시 제도

- ▶ (대상물품)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8)
- 전체 수입품목수의 55% : HS 4단위 기준 총 1,224개 중 674개 품목  
(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

▶ (원산지표시방법) 해당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產)”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예외
  -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 가능
  -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위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 가능
    -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ly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 가능
    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 (원산지 표시 요령) 다음과 같이 수입물품에 표시

- 최종 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
- 최종 구매자가 식별이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의 방식으로 표시 가능)
- 다른 법령(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

▶ (원산지 표시의 면제)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음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7호)
-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대행의 경우 포함)
- 판매 및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 포함)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수입대행도 포함)
-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경유 하는 물품
-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 대상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물품

-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수입자의 상호 · 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 부속품 및 공구류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판정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순가공 여부로 결정

1) 1개국에서 100% 생산된 경우

- 완전생산기준 적용 : 주로 천연생산물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 해당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예 :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2) 2개국이상 걸쳐 생산된 경우

-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 :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세번변경기준(HS 6단위)의 원칙, 예외적으로 일부품목은 부가가치 또는 주요공정기준 적용\*),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 9 : 카메라, 가죽(소 · 돼지), 의류, 섬유

\*\* 단순가공에 대한 예시(『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 운송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가공활동
- 판매목적 포장 등
- 제조, 가공 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가공과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

‘통풍, 건조 또는 단순기열,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유통의 냉동,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도축, 펴기, 압착’

### ▶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

- (원산지 판정) 수입물품의 판정기준과 동일하나 수입국에서 정한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의무 : 없음(다만, 외국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 금지\*)
  - 원산지 표시방법 : 수입물품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되,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방법이 다를 경우 그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 「대외무역법」 제38조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거짓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그 수출물품이 외국산임에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수출 또는 외국으로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함

### ■■■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 단속

#### ▶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 현재 우리나라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관세청,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있음
-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단계 단속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07년 4월부터 위임받아 수행

## 【원산지관련 부처별 소관업무】

관련법령	업무	소관부처	단속기관
대외무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물품 원산지제도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 지정</li> <li>-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li> <li>- 수출입 및 국내생산물 원산지 판정기준</li> <li>-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li> </ul> </li> </ul>	산업통상 자원부	지자체 관세청(세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별 구체적 원산지표시 방법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무역법령상 일반적 표시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 표시방법을 지정</li> </ul> </li> </ul>	관세청	관세청(세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 원산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품 지정</li> <li>· 원산지표시 방법 및 판정</li> <li>· 국내 음식점 표시대상 : 쇠고기, 쌀, 배추김치, 침동, 갈치, 고등어 등 총 20개 품목</li> </ul> </li> </ul> </li> </ul>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원산지 위반에 따른 제재

## ▶ (통관단계) 통관제한 및 시정명령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또는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제한.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허용

## ▶ (유통단계) 보세구역 반입 명령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 관세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령,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도록 하는 사전적 피해 예방 제도

## ▶ (통관·유통단계) 과징금 부과

단계	위반유형	위반횟수		
		1차	2차	3차
통관 단계	허위표시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 (50% 가중)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위반			시정명령 과징금 (30% 가중)
	미표시			
유통 단계	허위표시	시정명령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경감)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50% 가중)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위반			미판매분 : 시정명령 판매분 : 과징금 (30% 가중)
	미표시			

\* 2차 이상 적발시 과징금부과와 함께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시정조치

## ▶ (통관·유통단계) 고발·송치 의뢰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 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유통단계) 과태료 부과

- 원산지 표시단속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문의처

-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44
- ☎ 관세청 기획심사팀 042-481-7897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 대외무역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91조(권한의 위임 · 위탁)
- 관세법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등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확인 > 원산지제도
  - 산업자원통상부 홈페이지([www.motie.go.kr](http://www.motie.go.kr)) > 정책 · 정보 > 정책브리핑 > 원산지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http://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http://www.nfqs.go.kr)) > 품질관리 > 원산지표시
  -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참조

## 07 >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 ☰ 개요

-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의 세관 권리보호 신고 및 수출입 통관보류 제도 운영
-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자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 ☰ 법령 근거

- ▶ WTO/TRIPs에서 회원국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침해상품의 수출입시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5조에 동 협약 내용을 수용하여, 보호대상 지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운용

### ☰ 통관단계 지재권 보호 업무처리 절차

#### ▶ 세관권리보호 신고

-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상표권 등 권리내역을 세관에 신고
- 세관 신고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 위탁(2010.4.)

### ▶ 침해여부 확인

- 수출입 심사과정에서 침해의심물품 발견 시 수출입자와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 지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 IntellectualPropertyInformationManagementSystem)을 이용하여 권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진위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 가능
- 사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미신고상표 5일)에 지식재산권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담보 120%제공), 수입자는 비침해 소명자료 제출

### ▶ 통관보류 등 조치

-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조사의뢰 등 조치
- 수입자가 위조상품임을 인정하는 등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여부 확인 생략하고 조사의뢰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담보(과세가격의 120/100, 중소기업은 40/100)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관보류 조치
- 통관보류 후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하는 경우 통관보류 연장
-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과세가격의 120/100, 중소기업은 40/100)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



## 문의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38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35조, 동법 시행령 제237조~제243조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확인 > 지식재산권 보호



## FTA 활용 안내

- 01 ›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 02 › 원산지 결정기준
- 03 › 원산지인증수출자
- 04 › 원산지증명서 발급
- 05 › 원산지 검증



## 01 &gt;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 III 원산지 사전심사 의의

- ▶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원산지 사전심사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판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현재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국,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중국 FTA에서 도입
  - 한-아세안은 협정에는 없으나 상품협정 개정합의(2015.8.23.)에 도입 되었고, 한-EFTA FTA는 관련조항 없음

## III 신청 및 심사절차

- ▶ (신청인 및 신청기관) 한국의 수입자, 협정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수입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함
- ▶ (신청대상) 당해물품의 역내산 여부, 당해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및 가격 결정방법, 역내부가가치 산정방법 및 조정가격 결정방법 등
  -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당해 물품의 생산 ·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 · 감면에 관한 사항
-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신청시기)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

▶ (처리기간)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 ☰ 신청서류 및 수수료

▶ 사전심사신청서

- 거래계약서 ·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 물품당 3만원

### ☰ 결정의 효력

- ▶ 관세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년
- ▶ 사전심사서의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없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동 유효기간은 3년간 연장 가능



### 문의처

-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042-481-3211, 042-481-3206
-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042-714-7523



### 관련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제14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9조,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

## 02 > 원산지 결정기준

### III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요

#### ▶ 원산지란

- 사람이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하듯이 상품도 원산지(Country of Origin)라는 나름의 국적이 존재
  - \* 동식물은 성장한 국가를, 공산품은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
- 여러 국가의 재료를 조달하거나 생산 공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

#### ▶ 원산지결정기준이란?

- 협정에서 각 품목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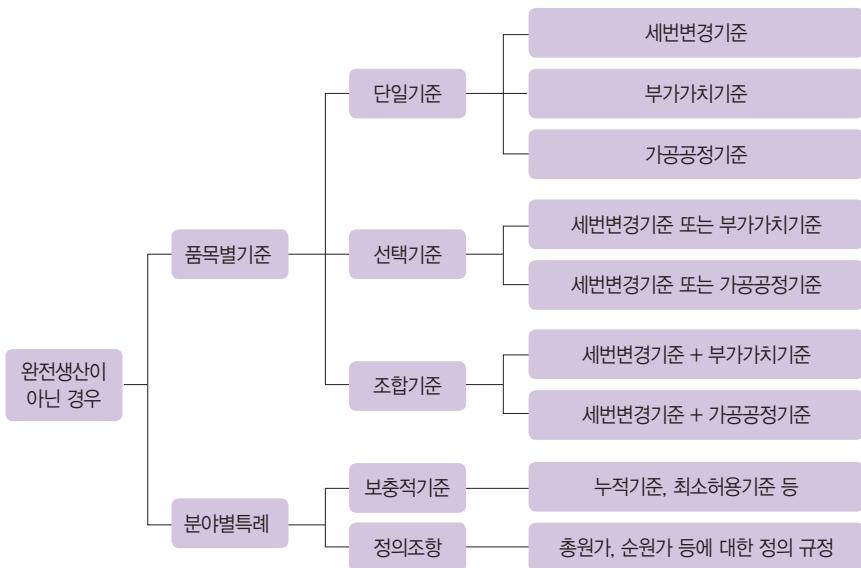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 직접운송 원칙
	분야별특례	• 누적기준 • 최소기준 • 포장 · 용기 • 대체가능물품 • 세트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 · 예비부품 · 공구
품목별기준	공통기준	일반 주 · 부 · 류 · 호의 주
	개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 III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

#### ▶ 완전생산기준

- 한-미 FTA에서는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
- 완전생산 되거나 획득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과 분야별 특례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



### III 분야별 특례(한·미 FTA의 경우)

#### ▶ 누적기준(협정 제6.5조)

- 한-미 FTA에서는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인정
  - (재료누적)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
  - (공정누적)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
- 각 협정별 '누적기준' 근거규정 비교

구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인도	아세안	EFTA	페루	EU	호주	중국
재료누적	○	○	○	○	○	○	○	○	○	○
공정누적	○	○	○	×	△*	×	×	×	○	×
근거규정	제6.5조	제4.5조	제4.9조	제3.7조	부속서3 제7조	부속서 1 제3조	제3.6조	의정서 제3조	제3.5조	제3.6조

\* 한-아세안 FTA의 경우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전생산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품목(굴,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은 공정누적 허용

### ▶ 최소허용기준\*(협정 제 6.6조)

\* 미소기준, 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이라고도 함

- (개념)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이면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 (내용) 한-미 FTA의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조정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정
- 각 협정별 '최소허용기준' 근거규정 비교

구 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페루	EU	호주	중국
가격 기준	일반 품목	10%	8%	10%	10%	10%	10%	10%	10%	10%	10%
	농수산물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외)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14류 적용제외 15류~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14류 적용제외	1~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14류 적용제외		1~1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일부제외)	15~2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증량 기준	섬유	7%	8%	8%	10%	7%	10%	10%	8~30% (가격/증량기준)	10%	10% (가격/증량기준)
근거 규정	• 제6.6조 부속서 6 나 • 제4.2조 제7항(섬유)	제4.6조	제4.10조	부속서3 제10조	제3.8조	부속서1 제5조 제2~3항	제3.7조	제5조 2항 부속서1의 주석5.1 부속서2 목록	제3.6조	제3.8조	

### ▶ 대체가능 상품 · 재료(협정 제6.7조)

- (개념) 대체가능상품(Fungible goods or materials)이란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
- (내용) 제품 생산과정에서 역내산과 역외산 재료를 함께 사용하지만 재료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업의 재고관리기법(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재료의 원산지를 구분
  - 단,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함

○ 협정별 '대체가능 상품 · 재료' 근거규정 비교

구 분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페루	EU	호주	중국
적용범위	상품 · 재료	상품 · 재료	상품 ·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상품 · 재료	상품 · 재료	상품 · 재료	재료
근거규정	제6.7조	제4.7조	제4.11조	부속서3 제14조	제3.12조	부속서1 제11조	제3.8조	의정서 제11조	제3.7조	제3.9조

▶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협정 제6.8조)

- 수출입하는 완성품에 부속되어 인도되는 부속품, 예비부속품, 공구는 해당 완성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부속품 등을 모두 함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완성품이 세변변경기준 적용 대상인 경우)
- 단, 완성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 대상물품인 경우 부속품 등은 원산지별로 구분해서 계상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의 예

- 부 속 품 : 전자제품 코드, 덮개, 매뉴얼 등
- 예비부품 : 에어콘 먼지수집기, 예비 타이어 등
- 공 구 : 차량용 잭, 자전거 도구세트 등

○ 각 협정별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 관련 규정 비교

구 分	미국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EFTA	EU	호주	중국
세변변경 기준	무시		무시(세변변경기준 충족여부 불문)			세변변경기준 충족 필요		무시	무시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별 구분 계상		원산지별 구분 계상	무시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계상	
근거 규정	제6.8조	제4.8조	제4.12조	부속서3 제12조	제3.9조	제3.10조	부속서1 제8조	의정서 제8조	제3.8조	제3.13조

▶ 상품의 세트(협정 6.9조)

- (개념) 세트물품이란 서로 상이한 세번에 해당되는 2이상의 물품이 조합에 대하여 해당 세트의 기능, 용도 등에 따라 구성물품 전체를 하나의 세번으로 분류한 물품을 의미

- (내용) 세트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세트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 단,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해당 상품의 조정가치의 15% (섬유관련 제품은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
- 협정별 '상품의 세트' 근거규정 비교

구 분	미 국		EFTA, EU	페루	칠레 · 아세안 · 싱가포르 · 인도 · 호주	중국
	일반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여부	○	○	○	○	×	○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조정가치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0% 이하	공정도 가격의 15% 이하	FOB 가격의 15% 이하	×	FOB 가격의 15% 이하
근거규정	제6.9조	제4.2조 제8항	부속서1 제9조 (EFTA) 의정서 제9조(EU)	제3.9조	×	제3.11조

#### ▶ 소매용 ·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 용기(협정 제6.10조, 제11조)

-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물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단, 통합품목분류표상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제품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음
  -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를 고려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한 재료비를 산정하여 반영)
-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하지 않음
- 협정별 '포장재료 · 용기' 근거규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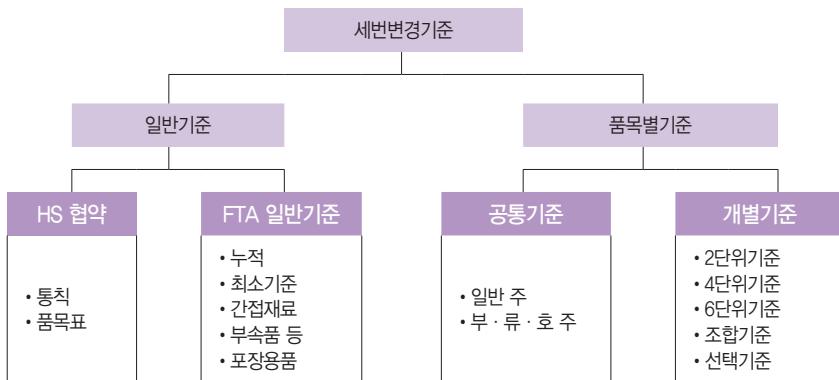
구 分	미국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FTA	페루	EU	칠레	호주	중국
소 매 용	세번변경 기준 적용시	무시	무시(세번변경요건 충족 여부 불문)						무시	무시
	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원산지별 구분계상	원산지별 구분 계상						원산지별 계상	원산지별 계상
수송용	무시	무시						무시	무시	
근거규정	제6.10조 제6.11조	제4.13조 제4.14조	부속서3 제11조	제3.10조 제3.11조	부속서1 제7조2	제3.11조 제3.12조	의정서 제7조	제4.10조 제4.11조	제3.9조 제3.10조	제3.12조

##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 세번변경기준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그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 한-미 FTA의 경우 약 3,254개 품목으로 61% 차지

【세번변경기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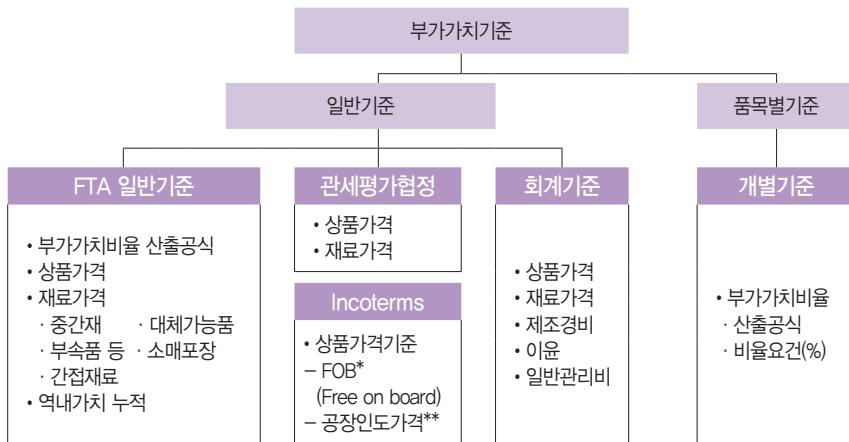
- 통상 가공도에 따라 세번을 부여하므로 세번이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는 점에 착안한 기준으로, 대부분의 FTA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음
  - 주로 2단위변경기준(CC), 4단위변경기준(CTH), 6단위변경기준(CTSH) 세가지 종류가 있음
    - CC(Change Chapter) : 2단위 변경기준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4단위 변경기준
    - CTS(Change of Tariff Sub-Heading) : 6단위 변경기준
-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난이도 : (弱)CTSH → CTH → CC(強)

### ▶ 부가가치기준

- 2개국 이상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한 종류로써, 역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

- 협정에서는 부가가치비율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
  - (일반기준) 부가가치비율 계산공식, 상품 및 재료 가격 계상기준 등 규정
  - (개별기준) 품목별로 요구되는 부가가치비율 규정
    - 재료비에 포함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 제조경비 ·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의 계상기준은 관세평가협정, 무역조건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및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 【부가가치기준 구조】



\* FOB(본선인도가격) : 최종 수출항구 또는 최종 수출지점까지의 수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 가격

\*\* 공장도 가격(ex-works) : 최종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국 내 생산자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 ○ 부가가치 계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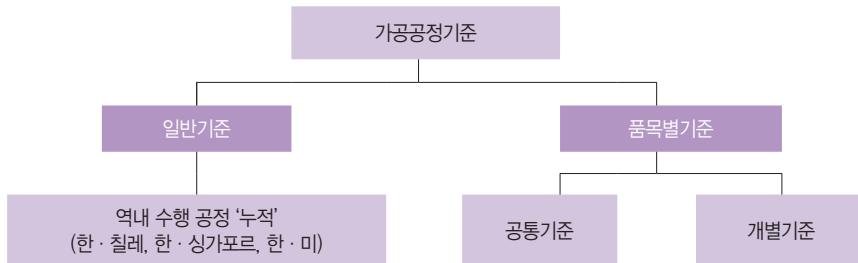
- RC법(Regional Contents) :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 \* RC법 :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으로 구분

### ○ MC법(iMport Contents) :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

## ▶ 가공공정기준

- 각 품목별로 주요 생산공정을 지정하고, 그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
-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하여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좁은 편
  - \* ① 어류 ② 식물성생산품 ③ 섬유제품 ④ 석유제품 ⑤ 화학, 플라스틱, 고무제품

### 【가공공정기준 구조】



### 문의처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042-481-3226, 3206



### 관련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한·미 FTA 등 15개 발효(2017.6월기준) FTA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안내
  - 관세청 YES FTA 포털( <http://www.customs.go.kr/portallIndex.html> ) > 한국어 > 원산지결정기준
  - 법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3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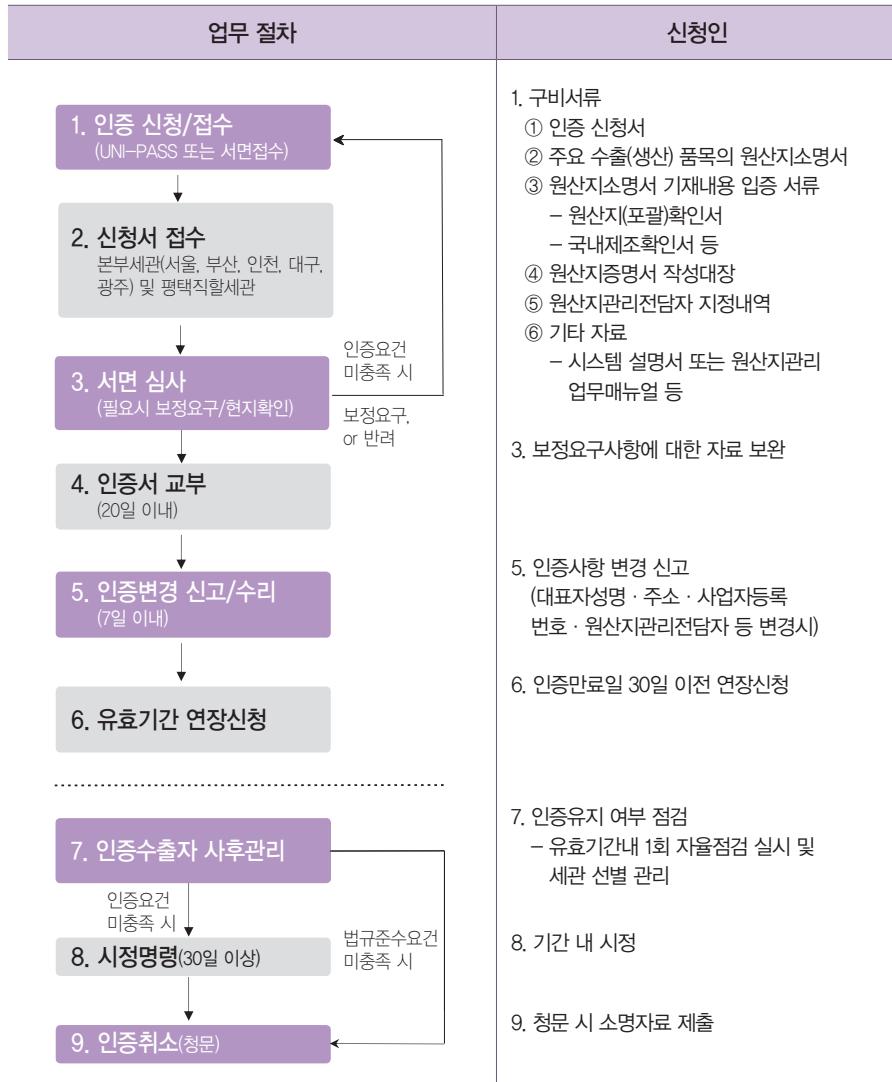
#### ▶ 도입취지

- FTA 체결 증가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전/후 비교】

협정	인증 전	인증 후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중국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필증 사본</li> <li>-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li> <li>- 원산지소명서</li> <li>-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수출자 상이)</li> <li>-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li> </ul> ③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② 첨부서류 제출 생략 ③ 현지확인 생략 가능
EFTA	①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서명 필요 * 전자 문서 이용 불가능	①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서명 생략 * 전자 문서 이용 가능
EU	①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할 경우 특혜 관세 혜택 불가능	①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절차



## ■■■ 원산지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방법

### ▶ 업체별 원산지인증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메뉴얼 보유 여부
  - ① 원자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 여부(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여부
- 4)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있는지 여부
  -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② 최근 2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③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 ▶ 품목별 원산지인증심사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 여부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 여부



## 문의처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042-481-3228, 3211



## 관련 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안내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portallIndex.html>) > 한국어 > FTA 활용 > 인증수출자제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04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개요

#### ▶ 개념

-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FTA 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

#### ▶ 발급방식의 종류

- 원산지 증명서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기관발급하거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 자율발급
- 각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에서 FTA특혜세율 적용이 가능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 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협정명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수출자 : 칠레, 페루, EU, 터키</li><li>수출자 또는 생산자 : EFTA,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li><li>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 미국</li></ul>

- \* (페루) 협정이 발효한 날 다음 날부터 5년간은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을 병행하고 6년차부터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자율 발급함  
\* (EU)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 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

## ■■■ 발급방법

### ▶ 기관발급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첨부서류
신규발급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근거〉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재발급	1. 사유서 〈근거〉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9항
정정발급	1. 원산지증명서 원본 2. 정정사유 입증서류 3. 사유서 〈근거〉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9항

### ▶ 자율발급

-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확인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협정상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명권자의 서명·날인으로 발급하고 원산지증명서 대장 관리

\*\* 수출자는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를 비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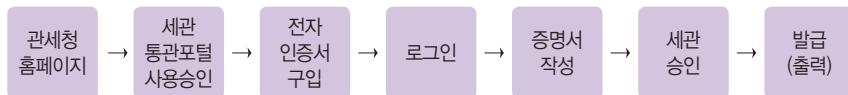
- 서명권자 변경·추가 :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 및 지정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 발급절차

### ▶ 기관발급

#### ● 세관 발급

온라인



####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온라인



#### ●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 ▶ 자율발급



## 05 원산지검증

### 원산지검증의 개요

#### ▶ 원산지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
  -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 기술 제공국과는 다르며, 원산지와 상표를 혼합한 개념이 지리적 표시(예 : 스카치 위스키, 모젤와인)와도 구분됨

#### ▶ 원산지검증이란?

- 원산지검증이란 FTA 체약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상대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활동
  - 원산지 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요건(거래 당사자 · 세율 · 운송경로 · 신청절차 등) 또는 협정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 ▶ 원산지검증의 특성

- 원산지 규범의 다양성
  - 원산지검증의 근거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의 FTA 협정문, 3개의 일반 특혜 협정 및 FTA 특례법령 등 국내 집행법령을 근거로 함
- 원산지 인정기준의 복잡성
  - 원산지 상품의 인정기준은 완전 생산기준, 1개 품목에 대한 세번변경 기준, 역내 부가가치 기준,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이러한 기준을 복합한 결합기준 등 복잡한 원산지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

○ 원산지 규범의 국제성

-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와 생산자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부 절차를 각 협정에 나열하는 국제성을 가짐

▶ 원산지검증의 유형

- 원산지검증 대상 물품의 지위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으로 구분
- 검증을 수행하는 장소에 따라 세관 사무실에서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서면검증과 검증 대상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지검증으로 분류
- 조사대상자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검증과 국제검증으로 구별하며,
  - 국내검증의 조사대상자는 수입업체, 수출업체, 생산업체, 원재료 생산·공급업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검증대상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대행과 관련된 업체
  - 국제검증 대상자는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업체, 해외 원재료 공급업체
- 원산지검증 수행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형태와 간접검증 형태로 운영
  - 직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이 상대국 수출자·생산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검증 형태로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한-캐나다, 한-호주 협정이 이에 해당
  - 간접검증이란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을 받아 수출국 세관 또는 증명서 발급당국에서 수출자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검증형태로서 한-EFTA, 한-EU, 한-터키 협정이 이에 해당
  - 이 밖에 1차적으로는 수출국 세관 또는 증명서 발급당국에서 수출자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결과가 충분치 않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에서 수출자를 방문하여 검증하는 혼합검증 형태가 있으며,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협정 등이 이에 해당
  - 원산지검증의 형태는 각 협정별로 운용방법을 각기 정하고 있으며, 점차 여러 검증형태를 혼합하거나 순차적으로 검증절차를 나열하는 추세

## ■■■ 원산지검증의 법적 근거

- (FTA협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협정에는 원산지검증의 목적, 절차 및 검증결과에 따른 사후조치(특혜배제 조항)를 규정하고 있음

### 【FTA별 원산지검증 형태와 근거규정】

협정	검증 방식	검증 주체	화신기간	협정 규정
한-칠레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30일	제5.8조
한-싱가포르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30일	제5.7조
한-EFTA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수입국은 참관기능)	10개월	제24조
한-아세안	(선)간접검증 + (후)직접검증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 (직접) 수입국 세관	2개월 (협의시 6개월)	제14조
한-인도	(선)간접검증 + (후)직접검증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 (직접) 수입국 세관	3개월 (협의시 6개월)	제4.11조
한-EU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10개월	제27조
한-미	직접검증 (섬유·의류는 간접)	수입국 세관	12개월 (섬유·의류 상품 간접 검증시)	제6.18조
한-페루	직접검증 + 간접검증	(직접) 수입국 세관 (간접) 수출국 세관	(직접) 30일 (간접) 150일	제4.8조
한-터키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10개월	제25조
한-호주	직접검증 (기관증명은 간접)	수입국 세관	30일	제3.23조
한-캐나다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	제4.6조
한-중국	(선)간접검증+ (후)직접검증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 (직접) 수입국 세관	6개월	제3.23조
한-베트남	(선)간접검증+ (후)직접검증	(간접) 수출국 발급기관 (직접) 수입국 세관	6개월	제3.21조
한-뉴질랜드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90일	제3.24조
한-콜롬비아	직접검증 + 간접검증	(직접) 수입국 세관 (간접) 수출국 세관	(직접) 30일 (간접) 150일	제3.25조

- (국내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제17조에서 원산지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
  - 기타 FTA특례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규정을 준용

\* 관세조사(제114조~제116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제233조) 등

## III 원산지검증의 절차

### ▶ 수입물품 원산지 조사

#### ○ 국내조사

- 국내 수입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 제출된 자료로 서면조사 실시(원칙). 서면조사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를 방문하여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시 업체에 사전 통지하며, 예외적으로 범칙사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

#### ○ 국제 직접 검증

- 직접검증의 경우 체약상대국 소재 수출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외 수출자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해 기한(30일 이내)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현지조사 동의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혜적용 배제 조치

#### ○ 국제 간접 조사

- 간접검증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발급기관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상대국으로부터 결과가 회신되면 그 내용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사후조치를 실시
- 협정에서는 조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회신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상대국으로부터 결과가 회신되지 않으면 수입자가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미납된 세금을 추징
- 간접조사의 결과 회신기한은 한-EFTA FTA, 한-EU FTA 및 한-터키 FTA의 경우 10개월, 한-아세안 FTA의 경우 2개월(양국 합의시 6개월), 한-인도 CEPA의 경우 3개월(양국 합의시 6개월), 한-페루 FTA의 경우 150일, 한-미 FTA(섬유·의류)의 경우 12개월, 한-호주 FTA의 경우 30일, 한-중국 FTA의 경우 6개월로 규정

## ○ 사후조치

- 조사결과 원산지에 관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을 유지하며,
-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가산세 포함)을 징수

###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 ①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요구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수출자·생산자 직접(서면·현지) 조사
  -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회신기한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지조사 등의 요청에 대해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현지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해 접근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등을 직접조사하거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간접조사를 요청한 결과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원산지 결정기준, 직접운송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④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⑤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조사대상자의 부도, 폐업,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⑦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생산 또는 수출하는 동종 동질 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

## ○ 협정관세 적용 보류

- 원산지검증을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음

- 보류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보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께 해야 함

#### 협정관세 적용보류 사유

- ①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 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 ③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 또는 관세청장·세관장의 인지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거나 관세청장·세관장이 원산지 위반을 인지한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
- 서면조사
  -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검증을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가 원칙이나, 서면 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현지조사에는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을 하여야 함
  - 한-미 FTA 제4장에 따른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양국 세관이 공동으로 현장 방문시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없음(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조사결과 체약상대국 회신

- 원산지검증을 완료하면 체약상대국에 그 결과를 회신기한 내에 통보

**간접조사 결과 회신기한**

한-EFTA FTA · 한-EU FTA · 한-터키 FTA(10개월), 한-아세안 FTA(2개월), 한-인도 CEPA(3개월), 한-페루 · 한-콜롬비아 FTA(150일), 한-미 FTA(섬유 · 의류)(12개월), 한-중국 · 한-베트남(6개월)

\* 한-아세안 및 한-인도의 경우 양국 협의시 6개월 범위내로 기간연장 가능

### ■■■ 원산지검증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벌칙(FTA 특례법 제44조)】**

조항(처분)	위반내용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1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한 자(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14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조항(처분)	위반내용
제3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 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양벌규정(FTA 특례법 제45조)】

조항(처분)	위반내용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

## 【과태료(FTA 특례법 제46조)】

조항(처분)	위반내용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항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 ▶ 과태료 부과기준(FTA 특례법 제46조제3항, FTA 특례법 시행령 제54조)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	200	500	800	1,000
나.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 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2호	200	500	800	1,000
다.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5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종 서울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500
마.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500
바. 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종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46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500



### 문의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042-481-3213, 3287



###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6조
- 한-칠레 FTA 제5.8조, 한-싱가포르 제FTA 5.7조, 한-EFTA FTA 제24조, 한-아세안 FTA 제14조~제15조, 한-인도 CEPA 제4.11조~제4.13조, 한-EU FTA 제27조, 한-페루 FTA 제4.8조, 한-미 FTA 제4.3조, 제6.18조, 한-터키 FTA 제25조, 한-호주 FTA 제3.23조, 한-캐나다 FTA 제4.6조, 한-중 FTA 제3.23조, 한-베트남 FTA 제3.21조, 한-뉴질랜드 FTA 제3.24조, 한-콜롬비아 FTA 제3.25조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YES FTA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portallIndex.html>) > 한국어 > 원산지검증 메뉴

## 관세부과·징수와 환급

- 01 › 납세신고
- 02 ›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 03 › 관세 납부기한
- 04 › 가격신고 제도
- 05 › 관세평가
- 06 ›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 07 › 품목분류
- 08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09 › 관세환급



## 01 &gt; 납세신고

## III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

## ▶ 신고납부

- 의의
  -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자진신고납부제”라고도 함
- 신고납부대상
  - 관세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
- 납세신고인
  -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 가능
- 납세신고 시점
  - 수입신고하는 때 가격신고와 납세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짐.
- 납세신고사항

- ①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 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 ②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 ③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 ④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 납세신고의 사후심사
  - 세관장은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할 수 있음

-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 ④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함

#### ○ 세액납부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에도 당해 세액 납부 가능

#### ○ 세액의 오류 수정

- 당초 신고한 혹은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 경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는 과소납부시 세액보정 및 수정신고, 과다납부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 부과고지

#### ○ 의의

- 세관장이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행 관세법에서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고지 방식을 적용

#### ○ 부과고지의 대상

- ① 법 제16조(과세물건확인정의 시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③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⑥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 납세고지

- 부과고지시에는 납세고지(서면)하여야 하며 여행자 휴대품 등은 구두고지 가능

### ○ 부족세액의 징수와 납기

-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음을 안 때, 그 부족액을 징수하며 납세고지시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

## ☰ 관세의 종류와 적용 우선순위

### ▶ 현행 관세율의 종류

#### ○ 국정관세율

- 기본관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표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는데,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
- 탄력관세율 : 관세법 제51조부터 제75조까지(제73조는 제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율, 즉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의 세율
- 환급에 갈음하여 인하한 관세율 : 수출 등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제조 또는 가공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수출 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 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으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협정세율

- 외국과의 조약 또는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로서 양국간의 협정에 의한 경우와 다자간의 협정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타국에 양허하고 있는 현행 관세율은 대부분 다자간 협정에 의한 것으로 WTO협정 양허세율 등이 있음

▶ 관세율의 적용 순위

순위	적용 관세율	비고
1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2	편의관세, 국제협력관세	3, 4, 5, 6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단, 국제협력관세 중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는 예외
3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단, 할당관세는 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4	일반특혜관세	
5	잠정관세	
6	기본관세	

▶ 특정관세율의 적용

○ 간이세율

-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한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

(1) 간이세율적용 대상물품

- 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 ② 우편물(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 ③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 ④ 택송품 또는 별송품

## (2) 간이세율 적용 제외물품

- ①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② 수출용 원재료
- ③ 관세법의 범위 행위에 관련된 물품
- ④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상업용인정수량,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 ⑥ 화주가 수입신고시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물품

## (3) 간이세율의 일반적인 산출방식

간이세율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의 합산세율

### ○ 합의에 의한 세율

- 일괄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① 전품목이 일괄 수입신고 되어야 하고, ② 물품별 세율이 달라야 하며, ③ 화주의 신청이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같은 불복신청 불가

### ○ 용도세율

- 용도에 따라 세율(기본, 잠정, 양허, 탄력 등)을 달리 정한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 용도세율의 예

HS 8443.32-50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 5010 반도체 제조용의 것	양허 0%(용도세율)
	- 5090 기타의 것	기본 8%(용도세율 아님)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 02 > 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경정

### ■■■ 세액보정

#### ▶ 의의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 가능

#### ▶ 보정의 통지

- 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 가능

#### ▶ 보정이자의 징수

- 보정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천분의 1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 면제

#### ▶ 납부기한

-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 ☰ 수정신고

### ▶ 의의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 가능

### ▶ 신고서의 제출 및 납부기한

-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

### ▶ 가산세

- 세관장은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 ①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 3
- 그러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 ☰ 경정

### ▶ 의의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음

### ▶ 경정사유

-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 ▶ 경정절차

- 경정통지서의 교부
  -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
- 납세고지
  -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납세고지

### ▶ 가산세

- 세관장은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며, 가산세는 수정신고하는 때의 가산세와 같음.

## ☰ 경정청구

### ▶ 의의

- 경정청구제도는 신고납부제 하에서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존재로 인하여 과다납부시 행정쟁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

### ▶ 경정청구 사유 및 기한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 경정청구 절차

-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

### ▶ 경정청구의 효력

- 경정청구 자체가 납세의무를 감액변동시키는 확정력은 없으며 단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여

#### 【세액변경 주체 및 방법】

구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명칭	정정	정정안내 직권정정	보정신청	보정통지	수정신고	경정
주체	납세의무자	세관장	납세의무자	세관장	납세의무자	세관장
조치	납세신고(수입신고) 시점부터 신고납부 전까지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		보정기간 경과 다음날부터 제척기간 도래시까지		
변경 사유	과다/과소 신고		과소 납세	과소 납세	과다/과소 납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정안내에 불응시 세관장 직권경정가능</li> <li>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li> </ul>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 03 > 관세 납부기한

### ▶ 원칙적인 납세제도와 납부기한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는 매 수입행위마다 각각 발생하며, 납세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매 수입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납세신고(수입신고하는 때 함께 합니다)한 관세 및 내국세는 납세신고가 수리(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 같이 됩니다)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
  -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제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가 수리됨
  - 만일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게 되며,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세법 또는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 또는 관세환급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관세법 또는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납세신고를 정정하는 때의 납부기한

- 세액을 납부한 후 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납세신고 사항을 고치는 정정은 납세자에 의한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경정에 의함
  -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한 세액의 부족함을 알고 납세준비가 완료된 후에 신청(신고)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신청(신고)일의 다음 날까지임
  -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을 발견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한 경우는 부과고지로서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 ▶ 월별납부제도와 납부기한

-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그 달의 1일이거나 30일이거나를 막론하고, 또 납세신고가 몇 건인지를 막론하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에 한 건으로 일괄 납부하는 것이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의 납기 연장 효과 발생

-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①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관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다만, 체납액 300만원 미만 제외), ③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거나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서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며, 승인 유효기간은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가능(자동갱신 의사를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결격 조회 후 자동갱신 처리)
-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월별납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 가능

#### ▶ 징수유예제도와 납부기한

- 관세의 징수유예제도는 관세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관세법 제1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징수유예를 통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인한 일시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관세법 제10조의 징수유예 신청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전쟁 ·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관장은 징수유예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가능

#### ▶ 분할납부제도와 납부기한

- 분할납부제도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업경영의 위기가 있거나 국내산업 진흥 및 사회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부할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수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승인하는 것
- 관세 분할납부는 천재지변 등 관세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유와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 세관장은 변경된 납부기한별로 각각 납부고지서를 발행

-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서 정하는 물품은 시설재·건설재·학교용품·공익사업용품·의료기관용품·사회복지용품·연구소용품·중소제조업체 사용물품·국내제작 곤란 교육훈련용품 등이 해당되며, 물품별 구체적인 분할납부 요건은 관세법을 참고
- 분할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음
  - 관세법 제10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3회, 9개월 4회, 12개월 6회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
  - 관세법 제107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에 따라 1년 6개월에서 최장 4년 6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승인기간 동안 매 6개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되, 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 분할납부 승인받은 물품을 용도외 사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 또는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
  - 다만, 지정된 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잔여금액에 대하여 담보제공시 분할납부 유지

### ▶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제도와 납부기한

-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 환급 기관이 세무서장이고 환급액의 계산 등도 관세 등과 차이가 있으므로 일괄 납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일괄납부제도를 적용할 경우 납세자는 앞서 설명한 월별납부제도와 유사하게 경제적 부담 완화와 금융비용 절감효과
  - 그 효과는 수입물품에 부과될 세액이 월별납부의 경우보다 대체로 장기간 징수 유예되는 대신 수출 후 환급받을 세액도 환급이 유예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름

- 일괄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월별납부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 납부와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
  -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신청은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서 징수형태란에 사후정산 일괄납부코드(33)를 기재
- 일괄납부제도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세관장이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지급내역,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세액이나 지급해야 할 환급액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안내하며, 이때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대하여 같은 달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함께 고지

### 【관세 납부기한】

납부제도		주요목적	납부기한	법적근거
원 칙	일반적인 납세	–	신고납부제도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관세법 제9조제1항
			부과고지제도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즉시반출제도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예 외	납세 정정 제도	보정 신청	부족세액 납부	관세법 제38조의2제4항
		수정 신고	부족세액 납부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월별납부제도	납세편의, 금융 비용 절감	일반적인 납세의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	관세법 제9조제3항
정수유예제도	재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관세법 제10조, 국세징수법 제15조~제17조	
	분할 납부 제도	천재 · 지변 등	분할납부승인일부터 5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날	관세법 제107조제2항
일괄납부제도	특정 물품 등	산업시설건설, 중소기업지원 등	일괄납부기간(6월 범위내) 종료일의 다음달 15일	환급특례법 제5조
	납기전 정수제도	수출지원	세관장이 정하는 날	국세징수법 제14조



###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54

## 04 > 가격신고 제도

### ▶ 가격신고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가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 과세 가격의 결정에 관련되는 자료 등
  -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련되는 자료에는 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있음

### ▶ 가격신고 생략

-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 생략 가능
  -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 과세가격결정에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함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9.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 가격신고 필수 신고대상

-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과세가격 가산요소)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 ▶ 잠정가격 신고와 확정가격 신고

-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 가능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 \*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
  - 법정가산요소가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업체일 것
    - \*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 ACAV 또는 APA 승인서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 참조)

1.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함.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신고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음
  -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한 신고기간 연장 가능. 이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지정한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세관장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직접 잠정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

## 05 > 관세평가

### III 관세평가 개요

#### ▶ 의의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제30조제1항)라고 하여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라는 원칙과 함께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비용을 가산하는 것으로 정의

$$\text{과세가격} = \text{거래가격} = \text{실제지급가격} + \text{가산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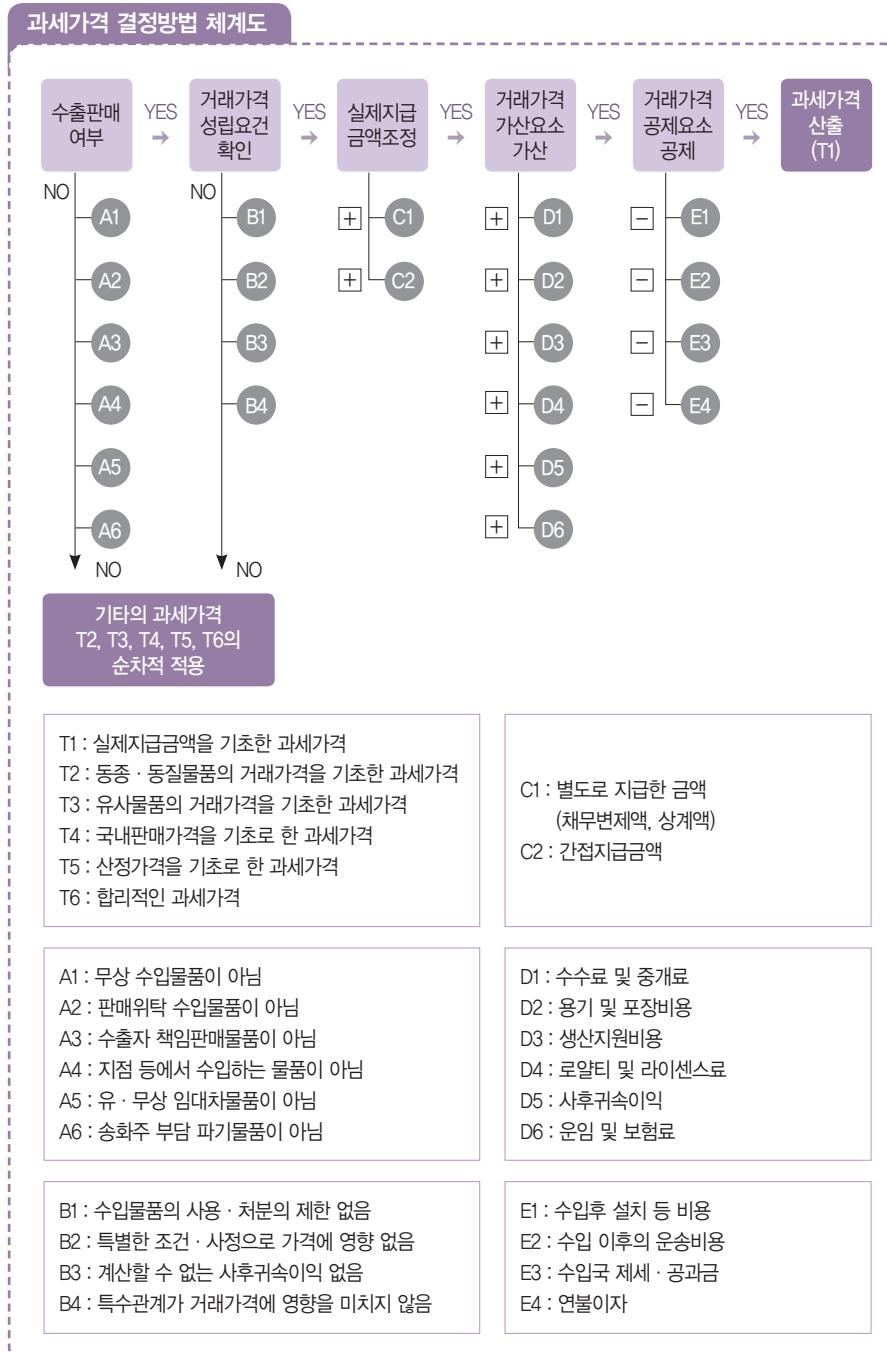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비용

- ① 수수료 및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 ②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 ③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 ④ 권리사용료(Royalty)(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는 제외한다)
- ⑤ 사후귀속이익
- ⑥ 운임 및 보험료

#### ▶ 결정방법과 적용순위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보충적인 5가지 다른 방법을 적용. 실무상 이들 6가지 방법 중 원칙을 “제1방법”, 보충적인 5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제2방법”, … “제6방법”으로 지칭

- 제1방법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며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이 방법에 의하여 평가됨. 따라서 제1방법은 그 비중으로 볼 때 단순히 6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 관세평가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제2방법과 제3방법은 각각 동종동질인 물품의 거래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
  - 제4방법은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 후의 판매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법.
  - 제5방법은 당해 물품의 생산원가 등 제비용을 합산하는 방법.
  - 제6방법은 앞의 5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이들 6가지 방법은 각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선순위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방법을 적용해야 함
-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순서는 바꿀 수 있음



##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 ▶ 의의

-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평가협정 및 우리나라 관세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만이 아닌 모든 수입거래에 대한 가격평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 과세가격의 1차적인 기초는 거래가격이 원칙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 관세평가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 특수관계 범위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즉, 일방이 타방에 대해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일방은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함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독점대리인 등의 경우에도 '특수관계'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특수관계자로 간주할 수 있음
  - \* WTO 관세평가협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 ▶ 특수관계 영향여부 판단기준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방법(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거래상황 검토 방법과 동종, 동질,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과 근접 등 비교가격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인정될 경우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거래가격을 관세가격으로 수락 가능성은 검토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련이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이러한 조사는 가격의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만 요구되며, 세관당국이 가격의 인정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수입업자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함이 없이 당해 가격 인정
    - \* (예) 세관당국이 당해 관계를 미리 조사해 두었거나,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조사 또는 정보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이미 납득하고 있을 수 있음
  -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는 당해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당국은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

## (1) 비교가격 기준

- 적용가능한 비교가격은 세관장이 거래가격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판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산정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있음
- 수입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이하로 근접(closely approximates)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비교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더라고 해당 물품의 특성, 거래내용, 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는 수입물품의 본질, 산업자체의 특징, 수입되는 물품의 계절적 특징 및 가격에 있어 그 차이가 상업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포함
- 또한 당해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의 비교시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거래수량, 용기 및 포장비용, 수수료, 로열티, 사후귀속이익 등 각종 가산요소 등 차이가 고려되어야 함
-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않음

## (2) 거래상황 판단기준

- 거래상황 판단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작하는 방법과 해당가격이 결정된 방법 등 아래와 같은 거래상황을 검토. 검토 결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
  -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
  -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
  -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함.

-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함.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문의처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7



#### 관련 규정

관세법 제30조 ~ 제35조, 관세법시행령 제17조 ~ 제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 제7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WTO관세평가협정



#### 참고자료

- 관세평가정보검색시스템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kcsass/index.jsp>)
  - 관세평가분류원(<http://cvnci.customs.go.kr>) > Quick Menu > 평가정보검색(CUVIS)

### ▶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여부 자체 체크리스트

구분	검토내용					해당유무
거래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음을 입증</li> <li>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li> <li>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li> <li>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li> <li>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li> <li>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li> <li>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li> <li>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li> <li>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li> </ul>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li> </ul>					<input type="checkbox"/>
비교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거래가격	신고 과세가격 ①	비교가격 ②	차액 ③ (②-①)	비율(%) (③/②)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input type="checkbox"/>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input type="checkbox"/>
	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input type="checkbox"/>
	-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					<input type="checkbox"/>
	-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input type="checkbox"/>
	다. 수출자가 제시하는 산정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가격					<input type="checkbox"/>
	-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					<input type="checkbox"/>
	-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input type="checkbox"/>

## 06 >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독립당사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 APR; Advance Pricing Rule)와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특수관계 사전심사; 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로 구분

### 【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 비교】

구 분	일반 사전심사(APR)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심사대상	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심사기간	30일	1년
시행시기	1990. 12. 31.	2008. 1. 1.
신청자격	국외 수출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사·관계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납세자 * 1회성 수입물품은 APR로 신청
심사절차	일방 결정	납세자 협의 → 동의 → 승인
심사담당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본부세관)
주요 심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공제요소 확인</li> <li>-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 (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 제한, 사후 귀속이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li> <li>-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제6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li> <li>-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li> <li>-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li> </ul>
잠정신고	적용대상 아님	신청시점에 잠정가격신고하고, 승인내용으로 확정가격신고
가산세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승인기간 가산세 면제</li> <li>- 승인내역으로 신청이전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10% 면제</li> </ul>
유효기간	3년(확인물품에 한함)	3년(승인내역과 동일 거래물품)
사후관리	해당없음	연례보고서 제출
법적근거	관세법 제37조제1항제1, 2호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 ■■■ 일반 과세가격 사전심사(APR)

### ▶ APR 의의

-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가격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관세 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신청하는 것
- APR는 해외의 수출판매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독립당사자간 거래인 경우와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1회성 수입물품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 심사절차 및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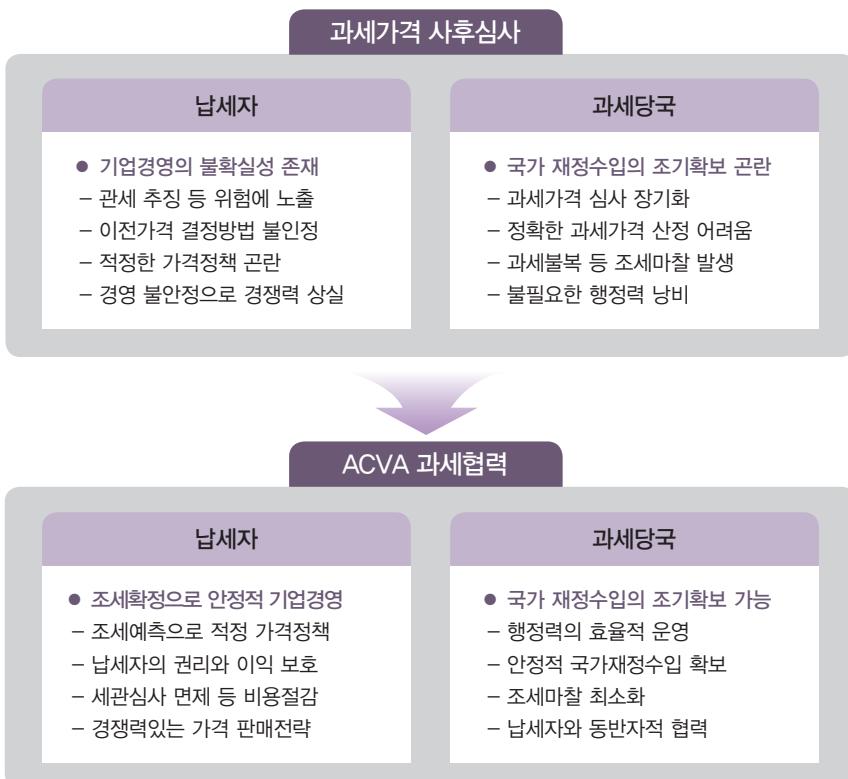
- APR는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실제지급가격의 적정성, 과세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야 금액의 유무, 해당 물품의 처분이나 사용의 제한 유무, 거래 또는 가격의 성립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통관후 처분 이익이 수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심사
- 관세청장으로부터 APR 확인받은 내역과 향후 3년 이내 수입하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내용, 거래관계, 적용법령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확인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 ■■■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 ▶ ACVA 의의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심사를 받는 내용은 APR과 같으나 ACVA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외 수출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본·지사 또는 그 관계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한정
- 그리고, ACVA는 특수관계자간에 해당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 사전심사받은 내용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통관 후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는 안정적인 가격정책과 기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음.  
또한 수입가격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소비자 또는 거래처 등에게도 기업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 ACVA 혜택

#### ○ 사전심사기간 잠정가격신고

- ACVA 신청물품은 신청시점부터 승인시점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승인내역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아 추가로 관세 등을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음

-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기간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나, ACVA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성실신고 가산세(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납부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관세조사 유예
  -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ACVA 사전심사기간 동안 세관의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음
- AEO 공인의 지름길
  - ACVA 업체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어 국내외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ACVA 운영 · 심사 및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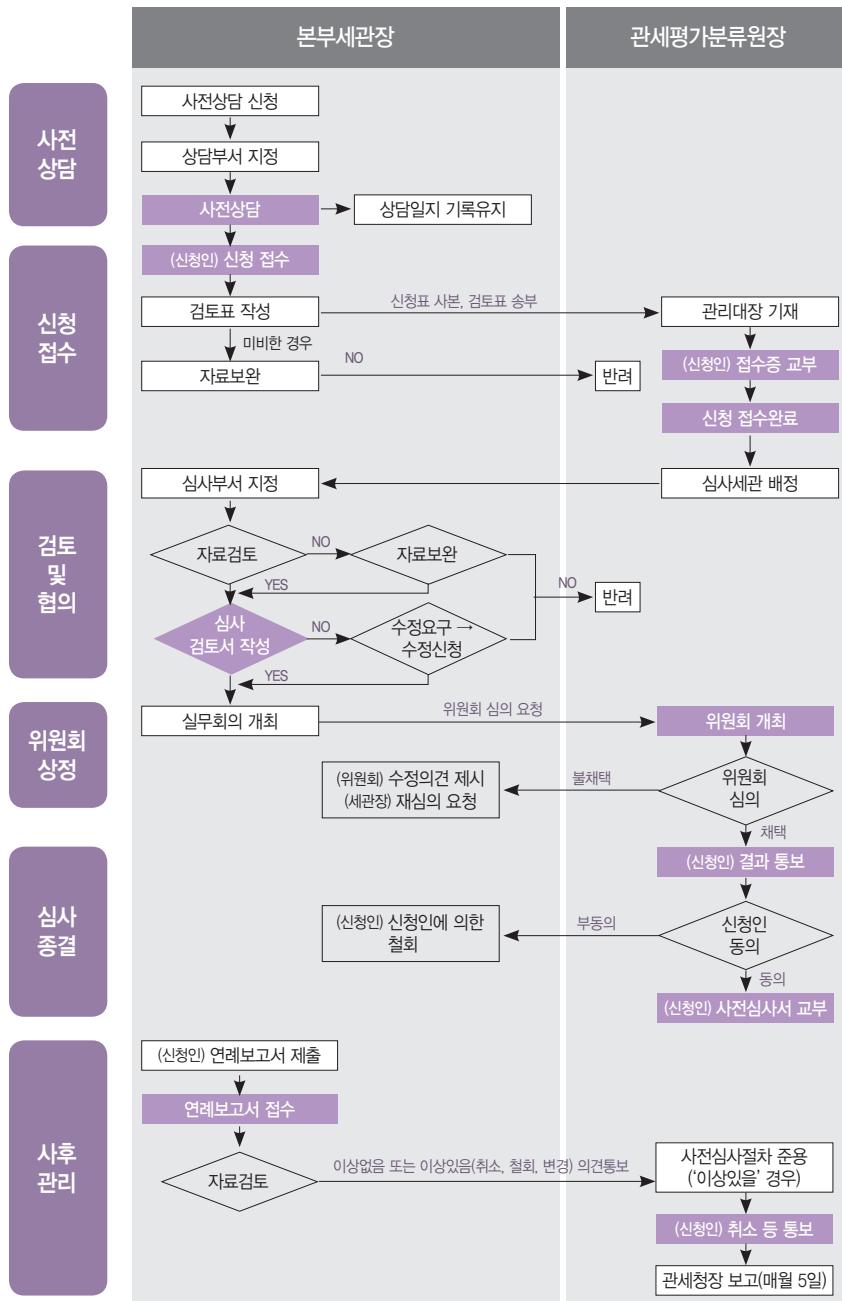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37조제1항, 관세법시행령 제31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 ~ 제67조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품목분류/관세평가 > ACVA 및 관세평가자료실

## ▶ ACVA 처리절차



## 07 > 품목분류

### ▶ 품목분류 정의

-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
  - WTO에 가입된 회원국은 HS 체약국이 되며,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 관세와 품목분류 관계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 결정

### ▶ 품목분류표 기본구조



## ▶ 품목분류 신고 및 심사

- 품목분류 신고 및 심사방법(관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 (기본원칙) 수출입 신고인은 자기 책임하에 품목분류 신고\* 의무를 가짐
    - \* 신고인의 품목분류 부담을 덜기 위해 품목분류사전심사 지원제도 운영
  - (심사원칙) 품목분류는 (선) 신고수리 (후) 심사 원칙

## ▶ 품목분류 결정절차



※ 물품 특성상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운 경우 품목분류위원회, WCO 질의 등 상정



### 문의처

-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1~3
- ☎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28



### 관련 규정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법 제84조, 관세법시행령 제98조,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등



### 참고자료

- HS코드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이며, 관세법에서 별표 관세율표에 HS코드를 반영 · 시행
- HSK(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 HSK(HS of KOREA)는 한국의 관세 · 통계통합 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이며 HS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한 10단위 분류체계를 갖춤(EU-8단위, 일본-9단위)

## 08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III 개요

#### ▶ 품목분류사전심사 의의

-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수출입 하려는 자가 수출입 하려는 물품이 HS\* 품목분류표 상 어느 번호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 회신받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임

\* HS(Harmonized System, HS 협약에 의한 국제 공통 품목분류표)

#### ▶ 신청대상자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대상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 신청시기

-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 실적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 ▶ 사전심사 효력

-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된 품목분류 번호는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관세법시행령 제107조 규정의 품목분류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품목분류번호의 변경사실을 통지
- 다만, 이 경우 변경고시일 30일 전에 우리나라로 수출·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있음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님(대법원 판례, 2005두6225, 2006.4.28.)

## ▶ 사전심사 분석수수료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구성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신청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사전심사결과 통지 전까지 납부

## ▶ 처리기한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다만,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 조기심사 신청 대상

-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사전심사 신청하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 지연 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 요구 가능.(이 경우, 보정요구 기간은 처리기한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 ■■■ 사전심사신청 준비와 심사절차

### ▶ 신청인 준비사항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1부
- 물품설명서 1부(용도설명서, 성분함량표 및 제조공정도 포함)
- 견본 1점(분말제품 및 액상제품 – 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분말 500g 이상, 액상 500ml 이상)  
※ 견본제출이 어려운 기계류 등은 사유서와 대체사진 3매 제출

### ▶ 신청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우편, 직접방문 접수
  - 관세평가분류원(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214, ☎ 042-714-7535, Fax 042-936-3528)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처리 절차



####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1~3,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28



#### 관련 규정

관세법 제86조 ~ 제87조,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 제107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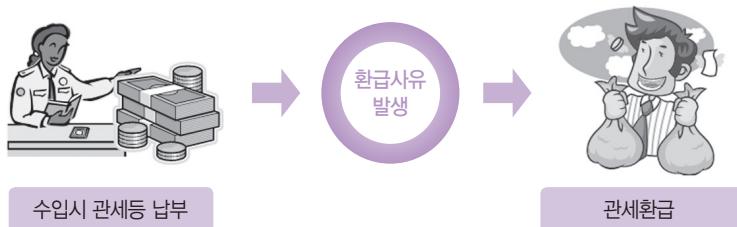
#### 참고자료

- 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인터넷 사이트
  - 관세청(<http://www.customs.go.kr>), 관세평가분류원(<http://cvnci.customs.go.kr>)
  - 세계 HS 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09 관세환급

## III 관세환급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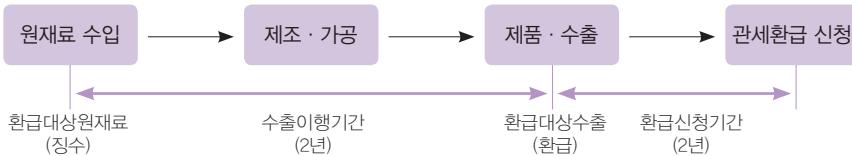
- 관세환급 : 납세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되돌려 받는 것



- 관세환급에는 과오납환급(관세법 제46조)과 계약상이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 등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환급과,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지칭

## III 관세환급 요건

## ▶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절차 및 요건



- ①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 제3조)
- ② 수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하여(법 제9조)
- ③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해야 환급 가능

### ▶ 수출용원재료 요건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법 제3조제1항제1호)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 \*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법 제3조제1항제2호)

### ▶ 환급대상 수출 요건

- 일반 유상수출(법 제4조제1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법 제4조제1호 단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공사(법 제4조제2호)
-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내의 업체에 대한 공급(법 제4조제3호)
-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법 제4조제4호)
- 타 법령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대북반출물품 등)

### ▶ 수출이행기간 요건

-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신고 수리한 날 또는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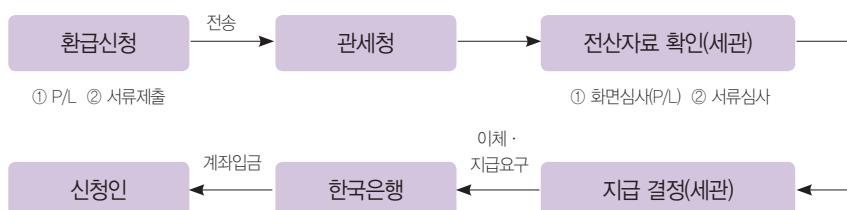
### ▶ 환급신청인 요건

- 수출신고 수리된 유상수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의 경우 : 수출자 또는 제조자(단,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제조자)

- 국내 외화판매 · 외화공사 중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 판매자 또는 공사자
-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와 외국왕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용품 공급과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는 물품의 경우 : 공급자 또는 제조자

### ▶ 환급신청기간 요건

-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환급신청기간의 기산점)로부터 2년 이내일 것 (법 제14조제1항)
-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점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은 수출신고수리일
  -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출은 해당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중 단위공사가 완료된 날
- 환급절차도



### ☰ 관세환급 방법

- ▶ **개별환급** :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지급하는 것
- ▶ **간이정액환급**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

### ▶ 관세환급 방법별 적용대상, 적용품목 및 제출서류

개별 환급	적용 대상	• 모든 수출기업
	대상 품목	• 모든 수출품목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사실 확인 서류 • 납부세액 증명 서류 • 소요량계산서</li> <li>• 조견표, 자재명세서</li> </ul>
간이 정액 환급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li> <li>•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이고,</li> <li>•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일 것</li> </ul>
	대상 품목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 품목
	제출 서류	• 수출사실 확인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 III 관세환급신청 시 제출하는 납부세액 증명서류

#### ▶ 수입신고필증

####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해당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해당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 ▶ 평균세액증명서

- 해당 수출업체에서 그 달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수출용원재료를 HSK10단위별로 통합함으로써 규격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
-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환급액산출에 있어서 규격확인 때문에 구비서류와 환급절차가 복잡해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 ☰ 소요량제도

#### ▶ 소요량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

#### ▶ 자율소요량

-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
- 현재 환급에 사용되는 소요량은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을 스스로 산정하는 자율소요량제도를 운영



문의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7



## 관세조사 안내

- 01 보정심사
- 02 관세조사
- 03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
- 04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 05 납세 및 통관 의무이행 위반 사례
- 06 불성실신고에 대한 관세 제재
- 07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 08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 01 > 보정심사

### ▶ 의의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보정한 세액을 포함)의 부족 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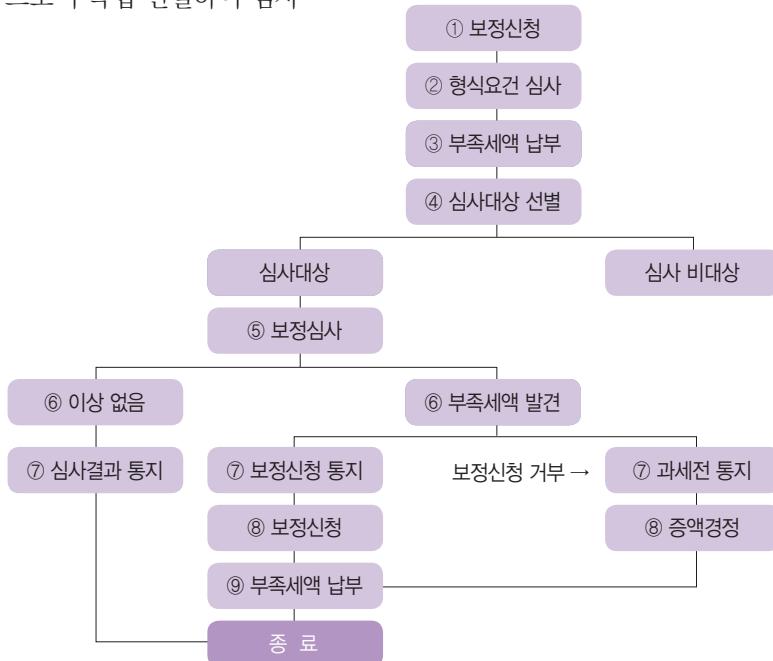
### ▶ 보정심사 절차

- 업체 보정신청 건

- 업체가 보정신청한 건은 수정신고와 같이 형식적 요건\* 심사 후 신청승인하고,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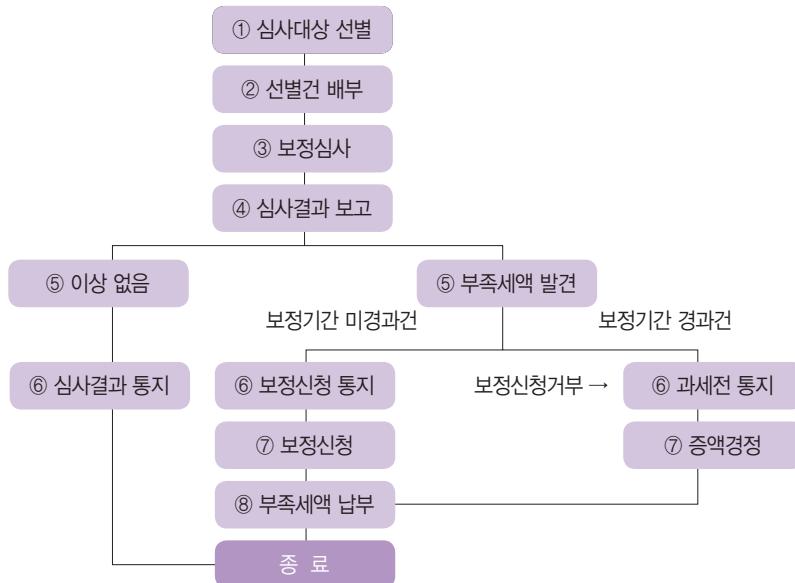
\* 첨부서류 구비여부, 보정신청내용과 첨부서류의 일치여부, 보정대상 여부 등

- 세관에서 실질요건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정심사대상으로 수작업 선별하여 심사



○ 업체 보정신청이 없는 납세신고한 건

– 업체의 보정신청이 없는 납세신고 건에 대한 보정심사 대상은 전산선별(R/S) 또는 수작업선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 납부세액

○ 납부세액은 부족세액에 기간이자\*를 합한 금액

\*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 납부기한

○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

\* 처리절차 : 보정승인 ⇒ 납부서 생성 ⇒ 보정승인 익일까지 부족세액 납부

▶ 보정에 따른 혜택

○ 불성실 신고 가산세 10% 면제



문의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58

## 02 &gt; 관세조사

## III 기업심사

## ▶ 사후심사제도(Post Clearance Audit)

- 1996년부터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통관단계 세관통제(Movement Control)는 최소화하고, 세액탈루, 법규위반 등 신고 내용 검증은 통관 이후 심사(Post Clearance Audit)를 실시
- 통관 후 기업심사는 세액심사 이외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기업단위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 주요 심사항목은 관세평가(과세가격), 품목분류(관세율), 관세환급,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원산지표시 및 통관적법성(통관요건 관련 66개 법령) 등
- 통관 후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사대상 기업의 납세협력도와 수출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방식을 차별화
  - 납세협력 의지와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어 AEO 공인심사를 받은 우수공인업체는 컨설팅 위주의 종합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 Non-AEO업체로 수출입규모가 큰 업체는 4~5년 주기 정기심사를 실시하며 고세율 품목, 위험이 높은 업체는 수시 기획심사를 실시

## ▶ 기업심사의 종류

AEO 공인업체		非AEO 업체	
공인/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심사 실시 후 AEO로 공인</li> <li>• AEO 공인 후 5년 주기 종합심사 실시</li> <li>• 민·관 파트너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수입규모 이상 기업</li> <li>• 4~5년 주기 정기심사</li> <li>• AEO 편입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업체</li> <li>• 수시심사(정보 분석)</li> <li>• 조사부서 공조심사</li> </ul>	

## III 정기 법인심사

### ▶ 개요

- 2010년부터 기업심사는 크게 ① AEO 공인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② 일정수입규모 이상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기 법인심사, ③ 특정 우범업체·품목에 대한 수시 기획심사로 구분하여 운영
- 법인심사 대상 업체 선정 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위원과 학계·법조계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법인심사 대상 선정규모,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등을 적용하여 반기별로 선정

### ▶ 정기 법인심사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수입규모가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 불 이상(AEO 공인업체는 제외) 업체를 법인심사 대상군으로 지정
- 법인심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4~5년 주기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수입규모, 업체특성, 과거 심사이력에 따른 심사실익을 고려하여 심사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또한, 법인심사 대상의 선정은 새로운 위험 동향과 심사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반기 단위로 선정하여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세관에 배정

### ▶ 심사방법

- 기업심사는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나 장부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 실시
  - 실지심사 : 심사대상자의 사무실·공장·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심사하는 방법
  - 서면심사 : 심사대상자로부터 실지심사를 대신하여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방법

### ▶ 사전통지

- 관세조사(법인, 기획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세조사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관세조사 개시 10일전에 심사기간, 심사범위, 심사대상기간 등을 기재한 「기업심사 통지서」를 송부

### ▶ 심사착수 연기

- 천재·지변 기타 관세조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심사착수의 연기 신청 가능

### ▶ 심사기간

- 실지심사는 20일 이내 기간으로 실시하며 세관장은 필요시 심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 심사범위

- 기업심사하는 때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의 적정성 뿐 아니라 관세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감면, 관세환급, 원산지표시, 수출입 요건, 외환검사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통합하여 심사

### ▶ 심사결과의 조치

- 실지심사가 종료되면 추징이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오류 원인을 찾아 내부 통제시스템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하여 향후에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 스스로 자발적 법규준수 기반을 제고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세관별로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증하는 한편 공평하고 적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관련 규정

관세법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9조의2

## ■■■ 수시 기획심사

### ▶ 개요

- 세액탈루, 법규위반 위험이 높은 업체(품목)에 대해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수시 기획심사 하는 제도로서 수출입통관요건 위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 지재권 등 일괄 심사체계로 운영

### ▶ 운영현황

- 수시 기획심사는 통관 후 사후심사하는 측면에서는 법인심사와 동일하지만 심사대상 선정, 심사주기 등은 차이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기획심사 대상으로 선정
    - ① 납세자가 관세법에 의한 신고·신청이나 과세자료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③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④ 수출입 물품 또는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분석결과 탈세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수출입요건 위반 등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수출입 물품 또는 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분석결과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및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
    - ⑥ 범죄조사부서, 납세심사부서 등으로부터 기획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 ⑦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다환급(과다 소요량계산 포함)을 인정할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 수시 기획심사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 실시
- 기획심사는 AEO 공인업체와 법인심사\* 대상업체를 제외한 전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함

\* AEO, 법인심사 대상업체라도 탈루제보 등 기획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기획심사 대상

### ▶ 심사 방법

- 수시 기획심사의 심사방법은 정기 법인심사의 방법과 동일

### ▶ 심사 범위

- 정기 법인심사와 마찬가지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만 심사 실시
  - 세금탈루 혐의,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혐의,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III 통합 관세조사 원칙

### ▶ 개요

- 관세조사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료 등의 요구 및 조사권한, 물품 등의 검사권한 및 방문조사권한 등에 의하여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심사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
- 통합조사 개념은 관세조사하는 때 관세법과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신고·납부 그 밖의 의무에 대한 진위여부,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능한 통합하여 조사하여 수출입업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납세자가 경영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수평적·대등적 납세협력 환경을 조성

- 또한, 관세조사하는 때 무역행위에 수반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일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사를 함으로써 업체의 편의성과 관세조사 업무의 효율성 향상

### ▶ 관세조사의 구체적 범위

- 관세조사 하는 때 통합하여 조사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이 경우 수시 기획심사 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한 사안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추가 조사 가능
  - 다만, “FTA 원산지조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에 따라 관세조사하는 때 통합조사의 범위에서 제외. (이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FTA 원산지조사”의 대상자, 조사방법, 사전통지 및 조사기간 등 절차가 관세법에 의한 관세조사 절차와 상이하고 같은 법령의 규정이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것임)
  - ▶ 과세가격 및 세율에 관한 사항
  - ▶ 수출입에 관한 혜가 · 승인 · 추천 등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 ▶ 품목분류(세율 및 통관요건 포함)에 관한 사항
  - ▶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 · 규격 · 수량 · 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 관세 환급(소요량계산 포함)에 관한 사항
  - ▶ 관세 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 ▶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 기타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 관련 규정

관세법 제1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2

## ■■■ 관세조사 절차 및 준비사항

### ▶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수출입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납세자는 관세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관 세 청 장

## ▶ 관세조사 절차 개요

### ○ 관세조사 절차 흐름도



## ▶ 관세조사 준비

- 조사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 관세조사대상자는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선정  
(관세법 제110조의3)
  - 정기 법인심사 선정 사유

1.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주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성실도 분석은 관세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관세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

- 수시 기획심사 선정 사유

1.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 「관세조사 사전 통지」 송달

-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세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관세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관세조사 사전 통지」 송달

관세법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세조사 사전 통지」를 받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전 통지의 내용을 차분히 확인
- 귀하게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조사사유’란 참조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관서로 연락  
※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생략 가능

○ 관세조사 연기 신청 가능

- 관세조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기 연기
- 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관세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전까지 조사관서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

1.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 관세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관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되지 않음

## ▶ 관세조사 진행

- 관세조사를 시작합니다.
  - 관세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불편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관세조사 첫날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 조사착수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납세자권리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십시오.

\* 납세자권리현장 요지를 낭독하여 납세자권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셋째,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와 대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금품·향응·식사·숙박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명한 관세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 관세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조사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관세전문가(변호사·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2조)
    - \* 이 경우 관세전문가가 귀하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부, 서류 등은 해당 사안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관세조사는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합니다.
    - \*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질문·조사는 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266조)
    - \* 조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조사공무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질문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부 · 서류」등의 「제출 · 열람 · 해명」요구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여 조사공무원의 사적인 자료 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장부, 서류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 조사공무원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 · 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교부해 드립니다.
- 조사가 끝나면 일시 보관한 서류 등을 납세자에게 반환합니다.
  - \* 조사 중에도 일시 보관한 장부 · 서류 중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납세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 조사공무원은 관세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세조사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합니다.
  - 조사범위는 「관세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하여 미리 알려드립니다.
- 관세조사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기간 동안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은 「관세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하여 미리 알려드립니다.
  -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조사는 하지 않으며, 조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습니다.
  -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 \* 다만, 납세자가 원하시거나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외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또한,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조사기간 연장 사유

-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세조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의 질병, 사업상 심한 어려움 등 조사 중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도 관세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 관세조사 중지 사유

-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노동쟁의 등의 발생으로 관세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세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관세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조사중지 기간이 경과하거나 중지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중지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재개하여 잔여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 관세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조사재개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 조사공무원은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관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 관세조사 결과 통보

- 관세조사 결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관세조사 마지막 날에는 관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세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 조사종료일을 「관세 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해 드립니다.
  - 관세조사가 종료되면 「관세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 \* 추징사유, 과세근거, 예상 고지세액 등 관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내 드립니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관세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보내드립니다.
    - \* 관세조사 결과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수정신고를 하거나 받으신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 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03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

### ☰ 개요

#### ▶ AEO의 개념

- AEO제도는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무역의 안전과 통관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
-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각국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
  -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 (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로서 세계 각국 관세당국이 실시하는 유사한 민·관 협력제도를 일컫는 대명사로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관 환경에 적합하게 수용한 제도명은 『종합인증 우수업체』임.

#### ▶ AEO 제도의 도입 의의

- 세관통관절차의 통합(Non Stop, Free Pass)
  - 「AEO 제도」 도입은 그간 물류주체별로 단편적인 성실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물류주체의 성실성과 안전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포괄적으로 부여
- 관세행정 정책방향 전환(Informed Compliance)
  - 수출입 기업(특히 물류업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Enforced Compliance)’ 방식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업체 스스로 법규준수 능력을 높이는 관리(자율법규준수 : Informed Compliance)’ 방식으로 전환

○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상호인정약정(MRA\*)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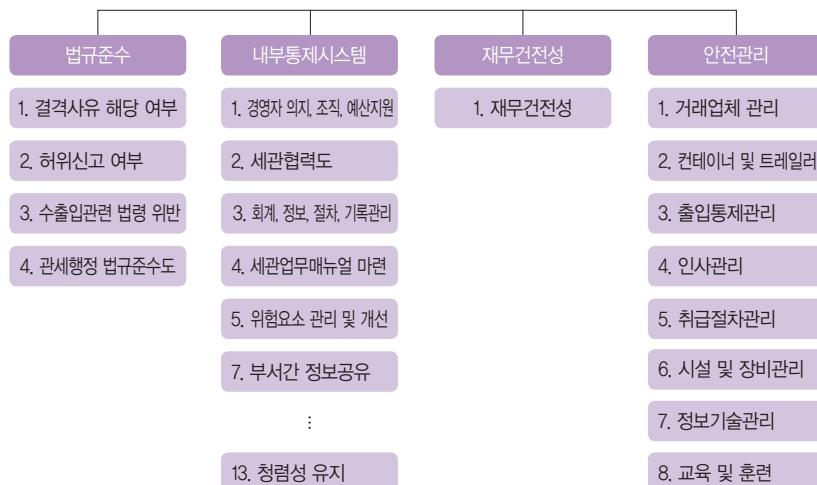
\*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AEO 공인기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추인되므로 AEO 공인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 특례를 적용받게 됨
- AEO 공인은 거래선 확보와 유지 등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

### ▶ AEO 공인기준과 등급

- (공인기준) AEO 공인기준은 법규준수도 · 내부통제시스템 · 재무건전성 · 안전관리 4개 부문 27개 세부기준으로 구성

#### 【AEO 공인기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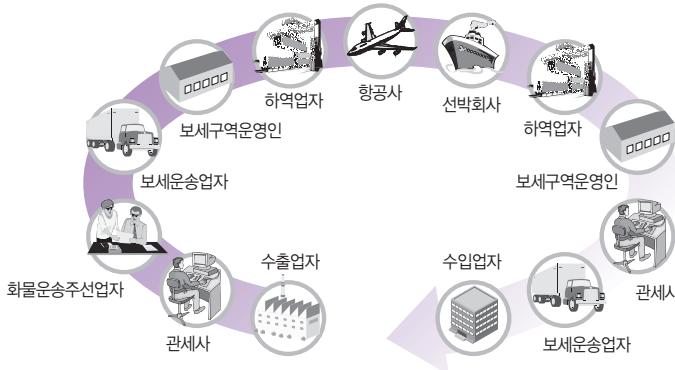
- (공인등급) 재무건정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는 A등급
-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는 AA등급
- 공인 후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 할 수 있는 모범사례(BP ; Best Practice)를 보유한 업체는 AAA등급 부여
- 공인등급에 따라 관세행정상 혜택은 차등 적용

## III 공인신청 준비와 심사 절차

### ▶ AEO 공인신청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별로 신청



-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 ▶ AEO 공인심사 절차

-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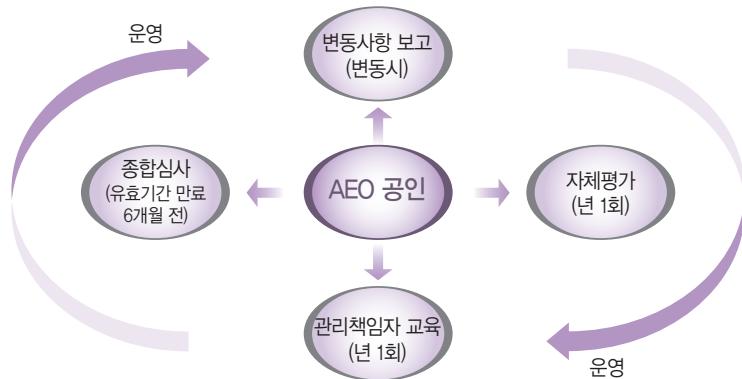


## III AEO 사후관리와 종합심사

### ▶ 사후관리의 개요

#### ○ AEO 사후관리 의의

- AEO 사후관리는 AEO 공인받은 업체가 공인이후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행위로서, 공인 후 갱신기간까지 각종 변동사항의 보고, 정기 자체평가 실시, 갱신·종합심사 실시 등 AEO 공인 후의 모든 활동을 통칭



### ▶ 종합심사

#### ○ 종합심사 개요

-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서 실시
- AEO 공인기업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인기준 이행여부, 업무수행 체계 점검, 우수사례(BP) 발굴 및 종합심사 법규준수도 측정 등 심사
-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실시
- 종합심사 대상기간은 종합심사 신청 전 유효기간, 기업상담관의 정보제공, 통합법규준수도 측정기간(8분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종합심사 프로세스

프로세스 단계별 진행사항	
종합심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O업체의 종합심사 신청 (유효기간 만료전 1년전부터 6개월전까지)</li> </ul>
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EO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서류심사</li> </ul>
업체 자율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오류 예상정보</li> <li>- 심사관련 정보 및 준비사항</li> </ul>
종합심사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의 특성 파악, 업무수행체계 점검</li> <li>- 정보분석</li> </ul>
심사계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팀, 심사일정, 심사방법, 중점 심사 사안 등을 적시하여 심사계획 수립</li> </ul>
종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기준 이행여부 확인, 오류원인 분석</li> <li>- 법규준수도 실측</li> </ul>
심사강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류원인 및 개선책, 위반사항 조치계획 설명</li> <li>- 모범사례 적시로 업체 직원들의 사기진작 도모</li> </ul>
심사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통보</li> </ul>
보완조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징,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li> <li>- 법규준수 개선계획 수립 · 이행</li> </ul>
AEO 심의위원회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유지, 등급조정</li> </ul>

▶ 기업상담전문관 및 자율점검지원관

○ 기업상담전문관 및 자율점검지원관의 지정 및 운영

-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의 AEO기업 지원 담당직원
- 일정기간 심사업무 경험 또는 전문 자격이 있는 직원 중에서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자율점검지원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자율적 위험관리 지원을 위해 통관적법성 관련 정보분석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심사부서의 직원
- 주요 임무
  - 기업상담전문관 : AEO의 공인기준 이행확인, 법규준수도 개선지원, 기타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및 컨설팅 업무
  - 자율점검지원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수출입신고 내용의 수정·정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그 처리 결과의 기록 유지

## III AEO 혜택과 MRA

### ▶ AEO 공인기업이 받는 혜택

-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
  - AEO 공인기업은 안전관리역량,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잘 갖추어진 우수 기업으로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되므로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
- 신속 통관 보장
  - AEO 공인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리대상화물 선별 제외, 물품검사생략, 모든 물류 공급망이 AEO 공인을 받은 경우 전산에 의한 자동수리 등 수입통관 절차상 신속통관 보장
  - AEO 공인기업은 협력에 의한 자율적 종합심사로써 법인·기획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형별에 우선하여 행정질서별을 검토하고, 통고처분금액이나 과태료 등의 경감, 출입국심사 편의제공 등 혜택
- 기업 경영 안정성 제고
  - AEO 기업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안전관리수준 등 기업 내부환경이 Up-grade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제고되며, 제2의 9·11 테러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하는 경우 무역중단 및 물품검사율 확대 등의 위험에 우선적 혜택을 받게 되어 위기상황에 효과적 대처 가능

## ○ 관세행정상 혜택

WCO	미국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속한 화물반출</li> <li>물류 비용 혜택</li> <li>위기상황시 특별조치</li> <li>자율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검사 축소</li> <li>우선검사</li> <li>위기상황시 우선 반출</li> <li>자율심사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입 검사 축소</li> <li>관리대상화를 선별 제외</li> <li>ERP 수출입신고 허용</li> <li>종합심사(자율)</li> </ul>

##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 AEO 상호인정약정의 의의

- 일방 상대국의 AEO 공인 및 사후관리 기준이 다른 상대국의 AEO 공인 기준을 충족하므로, 일방 상대국의 AEO 공인결과를 다른 상대국에서 공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

### ○ 상호인정약정 추진절차



### ○ 추진현황

- 2015년 2월말 현재 65개 국가가 AEO 공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총 33개의 MRA가 체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멕시코, 홍콩 등 9개 국가와 MRA 체결

## ▶ 상호인정 혜택

### ○ 수출입 비용 절감

– 국가간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업체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상대국 통관절차에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어 물품 인도의 신속성, 안전성 및 예측성을 확보하고, 통관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절감 가능

### ○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 세계 각국에서 거래업체 관리를 요구하는 AEO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해외 거래업체가 우리 기업에게 AEO 공인이나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新무역환경에서 AEO 공인기업은 거래선의 유지와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 ○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 면제

– 외국 관세청의 해외 거래업체 방문심사에 의해 업체의 기술, 시설, 영업 정보 등 소중한 자원이 해외 세관당국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



#### 문의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84

☞ 한국AEO진흥협회 02-701-3325



#### 관련 규정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등



#### 참고자료

#####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AEO
- 한국AEO진흥협회([www.aeo.or.kr](http://www.aeo.or.kr))

##### ● 참고자료

- AEO 가이드북 :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기업의 필수조건, AEO”

## 04 >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 ☰ 개요

#### ▶ 정산제 의의

- 기업이 매년 직전 회계연도에 납세신고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의 심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 ▶ 도입 배경

- 관세는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세액산출요소인 과세가격(관세평가)과 관세율(품목분류)은 국제협약에 기반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
  - 최근에는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확대 등으로 거래구조가 복잡·다양화되고, 신상품 등장 등으로 수입세액 신고납부에 있어 납세자의 어려움 가중
    - ⇒ 신고세액 오류치유 부담을 납세자에게만 지우기보다 ‘기업-과세관청’간 협치를 통해 과세문제 해결하는 제도 마련 필요
- 현재의 과세관청 일방의 ‘추징 ↔ 소송’ 반복 방식은 기업 경영안정성을 저해하며, 5년단위 대규모·일시적 추징으로 기업 경영부담 가중
  - ⇒ 기업과 과세관청이 수시로 탈루요인을 치유하여 재정부담을 축소할 필요

#### ▶ 법적근거

- 관세법 제3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 자율심사제도의 하나로 수입세액 정산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내지 4
  - ※ 법제처 법령위임범위 일탈여부 검토 완료(2017.3.23.)

## III 정산 절차

### ▶ 정산업체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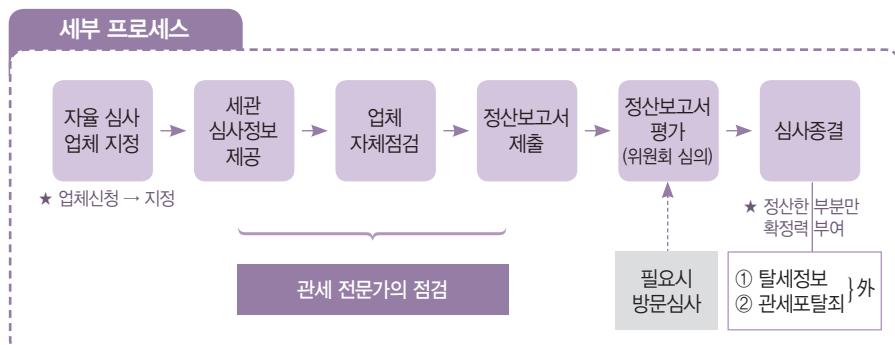
- AEO 수입기업중 희망기업이 대상이며, 심사인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
  - 매년 1월경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대상으로 정산기업 모집공고 하며,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로 지정함
  - 최근 2년이내 AEO 특례정지를 2회이상 받은 업체 및 관세법·외국환 거래법 등 수출입관계법령 위반혐의로 범칙조사 진행중인 업체는 배제

### ▶ 자율점검 및 관세사 검증

- 정산업체는 직전 회계연도에 수출입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환급, 보세공장, 외환절차 준수여부(6개분야)에 대하여 자율점검 실시
  -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이 제공한 탈루위험 정보까지 포함하여 점검
- 자율점검 내용은 확인관세사\*의 검증확인 받아 정산보고서에 작성 제출
  - \* 확인관세사는 2명이상 선임하되, 해당기업 통관법인 관세사는 50% 제한

### ▶ 정산결과 통지 및 조치

- 정산보고서 심사결과는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 결과 통지
  - 질의·자문 등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차기연도로 유보 가능
- 정산결과 통보서를 받은 정산업체는 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에 의한 보정·수정신고 등 조치



## 정산기업 혜택

### 관세조사 면제

- 허위·부정한 자료제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10조3에 따른 관세조사(법인·기획심사) 면제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정산결과 추가 납부하는 부가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참고) 관세조사 결과 추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발급 불허하고 있음

### 정기 자체평가서 면제

- 매년 공인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제출하는 자체평가서 면제
  - 정산기업이 공인받은 모든 부분의 자체평가서를 면제함



####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84



#### 관련 규정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등



#### 참고자료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AEO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05 > 납세 및 통관 의무이행 위반 사례

### ||| 개요

- 관세조사 시 주요 심사 분야와 통관요건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업체 스스로 점검하여 수입신고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유형별 점검 법규】

유 형	관 련 법
주요 심사 분야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관련법
통관요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수입식품법
	화장품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사료관리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 세관장은 법 위반을 적발 시 세액추징,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그 외 관계기관에 적발사실 통보
  -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허가 · 승인 ·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확인하고 있어서 사후 관세조사에 많이 적발되지는 않지만,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통합공고상 추천물품이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그 적발사항도 추천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 관계기관에게 통보

## ■■■ 단순·동일 사안 빈번 적발 사례

### ▶ 단순사안 빈번 추징 및 동일사안 지속 적발

- 현재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의 단순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추징되고 있으며, 단순한 사안이 빈번·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단순사안이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관련비용, 보험료, 수수료, 생산지원비용, 용기·포장비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누락으로 추징이 발생하는 건을 말함

### ▶ 사전 예방 노력

- 유류할증료나 수수료 등 과세의 단순사안은 수입자 또는 협력업체(관세사, 운송인, 화물운송주선인 등)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오류를 사전에 예방가능한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수입업체는 관세의 과세가격 신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업무매뉴얼 마련, 통관부서, 재무부서, 구매부서 및 협력업체(관세사 등) 간의 긴밀한 연락망 구축과 함께 비용 지급사실을 통보할 필요
  - 예를 들어 운송관련 비용중 원유가격 인상에 연동된 유류할증료가 추가 발생하여 이를 수입자가 지불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납세자가 관세사에 유류할증료 지급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관세사는 수입신고 시 반영하게 됨

### ▶ 단순 사안 적발 사례

- 다음은 동일업체가 단순 사안을 반복적으로 오류 신고한 실제 사례임

#### 사례 1

D인터내셔널사는 2008년 8월 기업심사(서울세관)를 통해 중개료 누락으로 9백만원을 추징당했으나, 2011년 8월 기업심사(광주세관)를 통해 동일한 사인인 중개료를 누락하여 75백만원을 또다시 추징당함

사례 2

B사는 2010년 5월 기업심사(서울세관)를 통해 생산지원비 누락으로 3,110백만원을 추징당했으나, 2013년 7월 기업심사(인천세관)를 통해 동일한 사안인 생산지원비 누락으로 1,210백만원을 또다시 추징당함

사례 3

P사는 2004년 12월 기업심사(부산세관)를 통해 용기임차료(운송관련비용) 누락으로 9백만원을 추징당했으나, 2010년 12월 같은 부산세관의 기업심사를 통해 용기임차료 누락으로 또다시 5백만원을 추징당함

사례 4

R사는 2009년 3월 기업심사(서울세관)를 통해 수수료 누락으로 300백만원을 추징당했으나, 2011년 10월 기업심사(인천세관) 기업심사를 통해 동일 사안인 수수료를 누락하여 또다시 80백만원을 추징당함

사례 5

S사는 2005년 12월 기업심사(서울세관)를 통해 보험료 누락으로 4백만원을 추징당했으나, 2007년 2월 기업심사(광주세관)를 통해 생산지원비를 누락하여 또 다시 402백만원을 추징당함

사례 6

H사는 2002년 11월 기업심사(서울세관)를 통해 생산지원비 누락으로 39백만원을 추징당했으나, 2008년 6월 기업심사(인천세관) 기업심사를 통해 동일 사안인 생산지원비를 누락하여 또다시 72백만원을 추징당함

### ■■■ 통관적법성 위험요소 적발사례

#### ▶ 통관요건 법령 현황

- 통관요건 관련 법령은 국민보건 분야 9개, 사회안전 분야 15개, 환경보호 분야 12개, 농수축산 분야 13개 및 기타 7개(이상 '통합공고' 대상)가 있으며,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10개 법령을 추가하여 총 66개의 수출입요건 법령이 있음

#### 【분야별 통관요건 관련 66개 법령】

통관요건	국민보건(9), 사회안전(15), 환경보호(12), 농수축산(13), 기타(7), 비개기(10)
------	---

#### 국민보건(9)

- 약사법, 3. 화장품법, 4. 식품위생법, 5. 검역법, 32. 축산물 위생관리법,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7. 의료기기법, 48. 인체조직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사회안전(15)**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현재 폐지, 15번 법령에 통합), 1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6. 계량에 관한 법률, 17.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18. 원자력안전법, 19. 전파법, 25. 자동차관리법, 26. 산업안전 보건법, 28. 건설기계관리법, 3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35. 방위사업법, 3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5.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6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환경보호(12)**

6. 화학물질관리법(6의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 대기환경 보전법, 24. 소음·진동 관리법, 2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29. 먹는 물 관리법,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2. 하수도법, 5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폐기물관리법, 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농수축산보호(13)**

7. 양곡관리법, 8. 비료관리법, 9. 농약관리법,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11. 식물방역법, 12. 종자산업법, 13. 축산법, 3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37. 수산업법, 5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51. 사료관리법, 5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5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7)**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1.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43. 주세법, 44. 지방세법, 4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9.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이상 통합공고 게기법령 번호순, 세관장확인대상법령은 진하게 표시

**통합공고 비계기 법령(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석면안전 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이상 세관장확인대상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소금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통관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입요건을 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35개와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 · 절차를 통합하여 규정한 통합공고 법령 56개로 구분됨(통합공고 대상이면서 세관장확인대상인 29개 법령 포함)
- 통관단계에서 통관적법성의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세관장확인대상인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 승인 등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이 제출되어야만 통관이 가능함
  - 통합공고 및 개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더라도 세관장확인고시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의 요건구비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세관장확인대상 법령】

구분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수입	(1) 「약사법」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li> <li>(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li> <li>(다) 한약재</li> <li>(라) 동물용 의약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li>○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li> <li>○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li> <li>○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ul>
수출입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입승인(요건확인)서
수입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수입	(4)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기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수입	(5)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구분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수출입	(6) 「가축전염 예방법」 해당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수입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 안전인증대상 제품 (나)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 (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서 ○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 ○ 제조자·수입업자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수출입	(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입허가확인서
수입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 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수출입	(10)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신고필증 ○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수출입	(11)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입허가서
수입	(12) 「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제한물질 (나) 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다)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라) 유독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 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 허가증 ○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 신고증
수입	(13)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수출입	(14)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입요건확인서 ○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입요건확인서
수출입	(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구분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수출입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수입만)  (라)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수입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입허가증</li>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허가서</li>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수입허가서</li>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수입허가서</li> </ul>
수출입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장관의 반출입승인서</li> </ul>
수입	(18)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검사 대상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 증명서</li> </ul>
수입	(19)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li> </ul>
수입	(20)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가) 식량작물종자 (나) 채소종자 (다) 버섯종균  (라) 약용종자  (마) 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li> <li>○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li> <li>○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 확인서</li> <li>○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 확인서</li> <li>○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li> </ul>
수입	(21) 「화장품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ul>
수입	(22)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가) 의료기기 (나) 동물용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li>○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ul>
수입	(2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li> </ul>
수입	(24)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li> </ul>

구분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수입	(25)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가) 석면함유제품 (나) 제조등 금지물질 (다) 안전인증대상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확인서</li> <li>○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li> <li>○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 결과 적합확인서</li> </ul>
수입	(2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li> </ul>
수입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li> </ul>
수출입	(28)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입신고확인서</li> </ul>
수입	(29) 「전파법」 해당물품 (가)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li> <li>○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 (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li> </ul>
수입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고위험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li> </ul>
수입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고압가스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li> </ul>
수입	(3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li> <li>○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li> </ul>
수입	(33) 「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확인서</li> </ul>
수출	(34)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li> </ul>
수출	(35)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li> </ul>

## ▶ 주요 적발 사례

- CITES 대상 멸종위기동식물 미허가 수출입(통고처분)
- 화장품 부당 표시 · 광고 및 안전성심사 미필(식약청장에게 적발 사실 통보)
- 자율안전 확인 미신고 자전거 부정수입(관계기관 통보)
- 전기용품 안전 미인증 커피메이커 등 부정수입(관계기관 통보)
- 수입식품법 식품검사 받지 아니한 식품등 수입(관계기관 통보)
- 전기용품 안전 미검사 종고복사기 부정수입(관계기관 통보)
- 안전확인미신고 리튬전지 부정수입(관계기관 통보)
- 사료관리법상 미추천 사료 수입(관계기관 통보)
- 수입식품법 미신고 유리컵 수입(관계기관 통보)
- 비료관리법 중금속위해성 미검사 동물성 비료 수입(관계기관 통보, 조사의뢰)
- 안전확인과 다른 배터리 사용 휴대용 선풍기 수입(관계기관 통보, 조사의뢰)
- 적합성평가 대상임에도 허위 인증번호로 수입(관계기관 통보, 통관보류)
- 안전확인미신고 배터리 사용 전동퀵보드 수입(관계기관 통보, 통관보류)

## ■■■ 주요 심사적발 사례

### ▶ 생산지원비용 신고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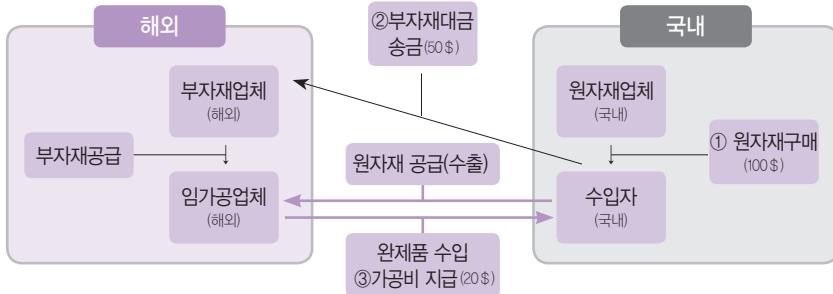
- 해외 현지공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 부착생산,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세 누락 형태로서, 물품의 수입 시 수입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 동 물품의 수입을 위해 별도로 제공한 물품 또는 금액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경우가 해당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입을 위해 물품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자(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또는 차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 해외임가공 물품 수출입 신고요령

### ○ 무역거래도(예시)



### ○ 수출입신고요령

신고항목	수출신고	수입신고
거래구분	위탁가공 원자재 수출(29)	위탁가공 완제품 수입(29)
신고가격*	국내 구매원가(100\$)	① 원자재비(100\$) + ② 부자재비(50\$) + ③ 기공비(20\$) + 기타비용(운임 등) = 170\$ + @

\* 수입물품 과세가격 :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 + 현지 구매자재 가격) + 가공비 지급액 + 기타비용(운임 등)

## ○ 적발사례

사례 1 중국 및 베트남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하면서 동 의류의 원단, 부자재 등을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가공료만을 신고한 경우

사례 2 프랑스산 코냑을 수입하면서 포장용기(병, 캡, 상표 등)를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였으나 동 물품의 가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사례 3 중국 A공장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사출물을 수입하면서, 동 사출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금형을 중국내 B공장에 의뢰하여 생산한 후, 이를 A공장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동 금형의 제작비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사례 4) 독일에서 제작한 설계도를 중국 현지공장에 제공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면서, 동 설계비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사례 5

중국에서 발전기 및 수력터빈 기자재 제작에 설계도를 제공하고 설계자에게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과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지급한 비용을 신고 누락한 경우

▶ 로열티 등 권리사용료 신고 누락

- 수입물품 자체의 가격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 기술 등에 대한 권리 사용료에 있어서도, 동 권리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나 이를 가산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적발사례

사례 1

이탈리아의 △△△社로부터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입하면서 가방 대금과는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수입신고 가격에서 동 상표권 사용료를 누락한 경우

사례 2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동 의약품의 특허기술료 명목으로 국내 판매가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동 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사례 3

일본 모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연마기기를 수입하면서 제조·연마기술과 노하우의 대가로 별도 지급한 로열티를 신고 누락한 경우

사례 4

일본 모회사로부터 인쇄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납땜용 합금을 수입하면서 동 합금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를 신고 누락한 경우

사례 5

유럽 본사와 제3자에게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수입하면서 별도 지급한 상표사용료를 신고 누락한 경우

## ▶ 조건 · 사정에 의한 영향

- 수입거래를 하면서 당해 수입거래와는 별도의 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조건 또는 사정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을 미친 만큼 조정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는 거래가격을 불인정함(단,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동 금액만큼을 가산하여 신고해야 함)

- 적발사례

**사례 1** 종국으로부터 냉동간마늘을 수입하면서 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특별할인을 적용하면서 이를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DISPLAY 산업에 소요되는 부자재인 ITO-TARGET을 수입하면서, 동 물품을 사용 후 IN(인듐)이 70% 정도 남게 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

**사례 3** 이탈리아로부터 자전거 및 부품을 수입하면서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미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단가를 조정(할인)한 후, 동 조정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사례 4** 2008년 금융위기에 기인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손실 보전 차원에서 환율 변동폭보다 과다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 무상 수입물품 저가신고

-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상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 · 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나,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적발사례

사례 1) 중국에서 샘플용 의류를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사례 2) 대만에서 수입한 LED칩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정상물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사례 3) 일본으로부터 금융자동화기기 수리를 위한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사례 4) 하자가 발생한 태양광발전소 설비 부분품에 대한 무상 대체품을 독일에서 수입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수입물품의 처분 · 사용상의 제한

-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약정 등에 의해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을 둘으로 인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30조제3항제3호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을 불인정함

○ 적발사례

사례 1) 유럽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용 기기를 수입하면서 특정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상가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면서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동 할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사례 2

이탈리아 B사로부터 제빙기 등을 수입하면서, 일반 수입품과 동일한 물품을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상가의 50% 수준의 가격으로 구매한 후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사례 3

해외 제약회사인 E사가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인 M사에게 원료의약품을 공급(수출판매)하여 M사에서 이를 수입, 중간재료를 생산한 후 E사의 국내지사인 e사에만 판매도록 약정하면서 M사의 원료의약품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 사례 4

일본 소재 본사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성능 시연을 위한 데모용 또는 고장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용으로 용도가 한정된 물품의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 ▶ 특수관계로 인한 저가신고

-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본래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경우

##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거래가격을 불인정함

- 적발사례

## 사례 1

프랑스로부터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본사)와 수입자(지사) 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타사의 경쟁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 사례 2

국내지사가 미국본사에서 반도체장비를 수입하면서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수용될 수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결과가 아닌 이전가격 정책과는 모순되는 거래가격 결정방식을 채택하여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 ▶ 품목분류 신고오류

- 수입물품은 품목분류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저세율로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

#### 관세법 제4절(제84조~제87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품목분류표를 고시함(동 품목분류표에 따라 품목별 세율이 결정됨)

- 적발사례

**사례 1** 저주파 자극기 부분품(관세율 8%)을 맷사자용 기기 부분품(관세율 0%)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사례 2** 발전기 부분품(관세율 8%)을 발전기 완성품(관세율 0%)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사례 3** 교육용 완구(관세율 8%)를 전자식 게임기(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사례 4** 헬리콥터 제조에 사용된 볼트, 너트 등의 범용성 부분품은 해당 세번(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나, 항공기 부분품(관세율 0%)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사례 5** 기타의 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관세율 8%)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체용 여과기와 청정기(관세율 0%)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

## ▶ 부당환급

- 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으면서 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세관장은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액 중 과다환급 등이 있는 경우 환급받은 자,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분증(수입세액분할증명서)을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그 환급액을 징수함

- 적발사례

**사례 1** 수출물품의 소요량을 계산하면서 정상 소요량인 단위당 0.000085보다 10배 많은 0.00085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사례 2** 전기동을 제조·수출하면서 실제 제조에 사용된 동정광, 동스크랩, 동브리스터 등을 환급받아야 하나, 동 스크랩만 전량 사용한 것으로 신청함으로써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에 대해 환급받은 경우

**사례 3** PCB를 제조·수출하면서 동 스크랩 등 잉여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환급신청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환급 받은 경우

**사례 4** 보석류를 수입 후 불량(하자)품으로 분류되어 매장에서 보관하다가 다시 미국 본사로 수출한 바, 이는 환급특례법상 원상태환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상태 환급받은 경우

**사례 5**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합성 사파이어로서 HS 7104호(간이정액 환급대상 아님)에 분류되는 웨이퍼를 불순물 처리된 화합물이 분류되는 HS 3818(간이정액 환급대상)호로 분류하여 간이정액 환급을 받은 경우

**사례 6**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경우

## ▶ 원산지표시 위반

- 수입물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현품 등에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해야 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해당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적발사례

**사례 1** 가정용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활자체가 아닌 흘림체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중국산 간고등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

**사례 3** 자동차용 안전유리에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손톱으로 쉽게 제거되는 종이스티커로 표시함으로써 부정적표시에 해당한 경우

**사례 4** 의류의 케어라벨에는 원산지가 적정히 표시(Made in Vietnam)되어 있으나, 목 부분에 위치한 메인라벨에는 브랜드명 아래에 'FRANCE'로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 경우

**사례 5** 미국 등에서 수입한 오토바이용 악세사리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 6** 중국산 텐트의 경우 포장 뿐만 아니라 현품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06 > 불성실신고에 대한 관세 제재

### III 관세제재의 종류

#### ▶ 강제징수

- 관세 체납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 실시

#### ▶ 관세형별

- 관세법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 · 변조죄 등)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조항(처분)	위반 내용
제1항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제234조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가. 헌법질서문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기밀누설 첨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다. 화폐 ·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항 (5년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1. 제241조제1항 정상신고 절차 없이 물품수입 · 제241조제2항 간이 신고 절차 없이 휴대품, 우편물 등 물품수입 또는 제244조제1항 입항 전 신고 절차 없이 물품수입 다만, 제253조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한 물품 제외 2. 제241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3항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 벌금)	1. 제241조제1항 정상신고 절차 없이 물품 수출하거나 반송 · 제241조 제2항 간이신고 절차 없이 휴대품, 우편물 등 물품수출하거나 반송 2. 제241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 또는 반송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조항(처분)	위반내용
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제241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한 자 중 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기위해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나.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다. 법령에 의한 수입제한회피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 하여 수입한자
제2항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41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한 자 중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
제3항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41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한 자 중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
제4항 (3년이하 징역 또는 감면, 면탈세액 5배 이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 받거나 관세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징수를 면탈한 자
제5항 (3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 5배 이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을 받은 자(부정한급세액 즉시 징수)

## ○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조항(처분)	위반내용
(2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다음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 가. 제38조의2제1항 ·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다. 제241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신고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 ○ 관세법 제274조(밀수품 취득죄)

조항(처분)	위반 내용
제1항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 벌금)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감정한 자 가.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물품 나. 제270조제1항제3호(수입제한 회피목적의 부분품, 미완성·불완전 물품, 완제품을 부분품의 분할) 제270조제2항(허가 등 수입제한물품의 부정수입) 해당물품 제270조제3항(허가 등 수출제한물품의 부정수출) 해당물품

##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조항(처분)	위반 내용
제2항 (물품원가 또는 2천 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1. 제198조제1항 종합보세사업장 신고 없이 종합보세기능을 수행 2. 제204조제2항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 3. 제238조 보세구역반입명령에 전부,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함 4. 제241조제1항 수출, 수입, 반송, 입항전수입신고시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5. 제248조제3항 수출, 수입, 반송 등 신고수리 전 반출
제3항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과실로 제2호 부터 제4호 해당 시 300만원 이하 벌금)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 2. 제12조 서류 미보관(5년이내), (단 신고필증 미보관 제외(과태료)) 제98조제2항 재수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및 무단양도 시, (단, 직접 수입한 경우 감면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양도한 자는 제외(과태료)) 제109조제1항 관세법 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른 관세감면 물품은 3년 용도외 사용 및 무단양도 시 제134조제1항 외국무역선(기)의 불개항장 무단출입 제136조제2항 출항적하목록 미제출 제148조제1항 국경출입차량의 관세통로 비경유, 통관역(장) 미정차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미이행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외국무역 선(기) 준용 시 포함) 하역, 보세운송, 선용품 및 용역업자 등의 미등록 제225조제1항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등의 보세화물취급 미신고 3. 제83조제2항 용도세율물품의 용도외 사용 및 무단양도 시 제88조제2항 외교관용 등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 및 무단양도 시 제97조제2항 재수출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 및 무단양도 시 제102조제1항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및 무단양도 시 다만, 직접수입 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동일용도에 사용한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외(제277조제3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대상)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조항(처분)	위반내용
<p>제3항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과실로 제2호 부터 제4호 해당 시 300만원 이하 벌금)</p>	<p>4. 제227조 타 법령에 의한 수입 후 세관장의 사용의무요구를 미이행 5. 제38조제3항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자 6. 제178조제2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구역 특허를 받은 경우) · 제5호(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및 제22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운송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p>
<p>제4항 (1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과실로 제2호 부터 제4호 해당 시 200만원 이하 벌금)</p>	<p>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입항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입항 보고 시 선용품 목록, 여객 및 승무원 명부, 휴대품 및 적하목록 미 제출자 (단, 과실은 과태료)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외국무역선(기) 출항허가 없이 무단출항 제137조의2제1항후단 승객예약자료 미제출자(단, 과실은 과태료) 제140조제1항 입항절차 종료 전 허가 없이 물품의 하역 및 환적 제140조제2항 물품의 하역 및 환적 시 미신고 제140조제4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허가 없이 외국무역선에 내국물품적재, 내항선에 외국물품 적재 제141조제1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외국물품을 신고없이 일시적으로 무단양륙 제141조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타 운송수단으로 신고없이 환적, 복합환적, 사람이동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무허가 항외하역 및 환적 제144조 세관장 승인 없이 자격전환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통관역(장)의 미허가 출발 제151조 국경출입차량의 외국물품의 하역 미신고 제213조제2항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미신고 4. 제135조제2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입항보고서류의 입항 전 제출조치 위반(단, 과실은 과태료) 제200조제3항 종합보세구역 반출입물품 제한 위반 제203조제1항 종합보세구역 인원, 차량 통제, 물품검사 위반 제262조 운송수단의 출발증지 위반 5. 제248조제1항 단서 수출수입반송 전산신고필증 부정 발급 받은자 6. 제263조 서류제출, 보고 등의 명령 불이행, 거짓보고 7. 제265조 물품, 운송수단의 검사, 봉쇄에 대한 거부, 방해자 8.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장부, 자료 제시, 제출요구 거부자</p>

## ▶ 과태료

- 관세법은 각종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277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서 관세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관세형벌과는 다름
- 법 제277조는 위반경중에 따라 1억원, 1천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관세법 제42조 등에서 규정)
-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즉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관세법 제41조에서 규정)
- 정정, 보정, 수정, 경정(경정청구)

구분	근거 규정	사유	납부기한
정정	법 제38조 (신고납부)제4항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 과부족 있을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
보정	법 제38조의2(보정) 영 제32조의4 (세액의 보정)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세액 부족이 있을 경우 ※보정이자 부과	보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
수정	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제1항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세액부족이 있을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
경정	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제2항 · 제3항	① 경정청구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② 경정 :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 신청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을 경우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 ○ 정정방법별 보정이자 및 가산세부과여부

정정 방법	정정 주체	정정시기	가산세 부과여부		비고(관세법상)
			이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정정	납세 의무자	납부 전	X	X	
보정	납세 의무자	신고납부 후 6월 이내		보정이자 부과 ※가산세 아님	이자율 : 연 1천분의 16 - 추징시(보정이자) : 법 제38조의2(보정) 제5항, 영 제32조의4(세액의 보정)제4항 - 환급시(환급가산금) : 법 제48조(환급 가산금), 영 제56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제2항, 규칙 제9조의2(관세 등 환급 가산금의 이율)
수정	납세 의무자	신고납부 후 6월 이후	○	○	부족세액의 10%+1일 3월/1만원[법 제42조(가산세) 및 영 제39조(가산세)]
경정 (+)	세관장	신고납부 후 6월 경과후	○	○	부족세액의 10%+1일 3월/1만원[법 제42조(가산세) 및 영 제39조(가산세)]
경정 (-)	세관장	신고납부후 6월 경과후	○	X	직권환급(환급가산금)(연 1천분의 16)[법 제48조(환급기산금), 영 제56조(환급기산금 등의 결정)]

## ○ 보정이자 및 가산세 면제사유별 부과여부

정정 방법	면제사유	보정 이자	가산세 부과여부	
			이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보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우편물	X		
수정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결과 부족세액 발생		X	X
	확정가격신고		X	X
	과세가격사전심사결과에 따라 2개월 내에 사전심사 전 신고납부한 세액 수정신고		○	X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X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우편물		X	X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	X

-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신고 시 가산세 40% 적용
  -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방법을 말함
    1. 이중송품장 ·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 · 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 내국세 가산세

- 종전에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7. 1. 1.부터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가산세율 산정
-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다만, 「국세기본법」에는 보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정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보정제도가 적용되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보정이자만 부과
  - 무신고
    1.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60% +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1일)
    2.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1일)
  - 과소신고
    1. 부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60% +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1일)
    2. 일반 : 신고불성실 가산세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1일)
-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6월 ~ 1년 이내 20%, 1년 ~ 2년 이내 10%)  
다만, 무신고의 경우는 1월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

### ■■■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 ▶ 환급특례법 제23조에서 관세법과 별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조항(처분)	위반 내용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5배 이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제3항 (2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4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심사 시 요청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FTA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조항(처분)	위반 내용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을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조항(처분)	위반내용
제2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제3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III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

#### ▶ 외국환거래업무 및 환전업무(법8)

- 외국환업무 및 환전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 등록사항 변경, 폐지 :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 ▶ 지급 및 영수 허가 등(법15)

- 국제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지급·영수 : 금지

#### ▶ 지급 및 영수 방법(법16) : 아래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거주자

- 상계, 기간초과 지급·영수, 제3자 지급·영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 한국은행 신고

##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법17)

### ○ 세관신고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제외한 지급수단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특송화물, EMS, 서신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고하자는 경우(단, 다른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등에 신고된 경우는 제외)

## ▶ 자본거래 신고(법18)

-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예외
  - 자본거래의 종류
    - 예금, 신탁
    -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 현지금융
    -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 등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증권의 발행 및 취득
    - 파생금융거래
    -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투자 등

## ▶ 외환사범에 대한 벌칙(법27~31조)

조항(처분)	위 반 내 용
제27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li> <li>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li> <li>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li> <li>제6조제1항제3호의 조치에 따른 회수의무를 위반한 자</li> <li>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li> <li>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자</li> </ol>
제27조의2제1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이하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li> <li>제9조제1항 전단·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증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증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증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li> <li>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li> </ol>
제28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제29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li> <li>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li> <li>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li> <li>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li> <li>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li> <li>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li> </ol>

## ▶ 외환 과태료 부과기준(법32조)

### 1. 과태료 부과기준표

처벌조항(법)	위반내용(법)	부과금액
제32조제1항 제1호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중대한 사항의 경우 : 5천만원 경미한 사항의 경우 : 1천만원
제32조제4항 제1호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
제32조제2항 제2호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 · 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높은 금액 단, 거짓으로 증빙한 경우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높은 금액
제32조제1항 제3호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신고사항 위반시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4% 중 높은 금액
제32조제1항 제4호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 위반시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높은 금액
제32조제1항 제5호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자본거래 위반시 : 100만원 위반시 : 100만원
제32조제1항 제6호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제32조제2항 제3호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불 이하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한 경우	위반금액의 5%
제32조제3항 제1호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100만원과 위반금액 2% 중 높은 금액
제32조제4항 제3호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300만원
제32조제4항 제4호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700만원
제32조제3항 제2호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천만원
제32조제4항 제5호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700만원
제32조제3항 제3호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 2.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중 됨.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각 항에서 정한 최고액을 넘을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사유를 여러 개 적용하는 경우에도 총감경액은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수 없음
  - 1)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 4)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가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경우
  -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6) 그 밖에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자의 위반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외환 과태료 부과절차

### 1.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안내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15일내 의견 진술할 수 있다는 안내문 통지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별다른 의견 없이 의견진술 기간내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납부 고지서 통지

## 2. 의견 제출 기한 경과후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및 고지서
- 과태료에 불복하는 경우 60일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3. 과태료 불복에 따른 이의제기시 절차

-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
- 이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문의처

- ☎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73
- ☎ 관세청 조사총괄과 042-481-7824
- ☎ 관세청 외환조사과 042-481-7938
- ☎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042-481-3233

## 07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 제도 개요

-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및 수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개정 (2013.7.26.시행)

## ■■■ 기본 발급대상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72조제2항)

- 가.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관세법 제28조제2항)하는 경우((±)계산서 발행)

- ① 관세법(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잠정가격 신고하는 경우
- ② 수입물품의 운임, 보험료가 수입신고 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
- ③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수입신고이후 확정되는 경우
- ④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 수입 후 발생비용 등 공제금액이 수입신고이후 확정되는 경우
- ⑤ 수입물품 특별할인분 과세여부에 대한 과세가격사전심사(관세법 제37조)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 ⑥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ACVA)에 대해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 나. 관세법상 보정(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 (+)계산서 발행), 수정(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계산서 발행), 경정청구(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 보정통지(안내)를 받아 보정신청하는 경우
- 기업상담전문관(AM)의 정보제공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 세관장으로부터 보정통지(안내)를 받고 통지받은 보정대상 수입신고건 이외의 건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 사전세액심사기간(관세조사부서 조사포함) 중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보정신청하는 경우

- 다. 후발적 경정청구(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의 경우 ((-)계산서 발행)

- 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관세법 제38조의4제1항)의 경우 ((±)계산서 발행)

- 마. 관세를 환급(관세법 제46조)하거나,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관세법 제47조)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 바.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제106조)의 경우 ((-)계산서 발행)

### ■■■ 발급제한 대상(단, 관세조사 등의 통지 후라도 예외적 발급 허용)

#### ▶ 발급제한

-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①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 ②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 ③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 ▶ 발급제한 예외

- 발급제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 발급 가능(부가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가.~나.'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4항제1호.~제5호.')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다른 경우
- 다. 「관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라.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마.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바.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사.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된 경우

- 세관제출 부속서류 기재내용과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서 잘못 작성
- 수입後,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재수출면세 대상(관세법 제97조)
  - 재수출감면세 대상(관세법 제98조)

※ 단, 허위서류 제출·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

아.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세관장이 부과고지(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後, 재경정하는 경우
- 사전세액심사시 세관장이 인정한 감면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 납세자가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관세청장이 재심사하여 변경한 경우(법 제37조제3항)
- 납세자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재심사하여 변경한 경우(법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면제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단, 허위서류 제출·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

## 08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 ☰ 추진 배경

#### ▶ 추진 배경

- 국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 · 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방안으로, 관세조사 유예방안 마련

### ☰ 유예기업 선정기준

####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 선정대상

-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20% 이상인 기업으로서, 전년대비 일자리창출비율 이상 채용할 계획인 기업

#### 【수입 규모별 적용대상 일자리 창출비율】

전년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5천만불~1억불
일자리 창출비율 (전년대비)	2% 이상	3% 이상	4% 이상

\* 청년 근로자(15세~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 일자리창출기업 외 관세조사 제외 대상 : 신청 없이 관세청이 적용요건 및 배제사유 확인 후 적용

적용대상	적용요건
①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
②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수입금액 1억불 이하 법인 중 2016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장애인고용률이 5% 이상인 중소제조기업
③ 2016년도 신설 중소기업	수출입실적이 있는 중소제조기업(인수·분할합병 제외)
④ 벤처기업 확인받은 기업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중소 제조기업
⑤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	수입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 수입실적 있는 기업
⑥ 고용부인증 장애인표준 사업장	수입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 수입실적 있는 기업
⑦ FTA 업체별인증수출자	수입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 수입실적 있는 중소 제조기업
⑧ 연구소기업	수입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 수입실적 있는 기업
⑨ 뿌리기술전문기업	수입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 수입실적 있는 중소 제조기업
⑩ 개성공단입주기업	
⑪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수입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 수입실적 있는 중소기업
⑫ 특별 재난지역·위기산업	

■■■ 지원 및 선정방법(일자리창출기업의 경우)

- 지원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 전송
  - 접수처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계획서”
- 선정방법 : 관세청의 지원대상 적용요건 확인 후 선정
  - ※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신청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지원(조사유예) 기간

- 관세조사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



### 문의처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73



### 참고자료

#### ● 제도, 규정, 서식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납세자권리구제 안내

01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02 불복청구 주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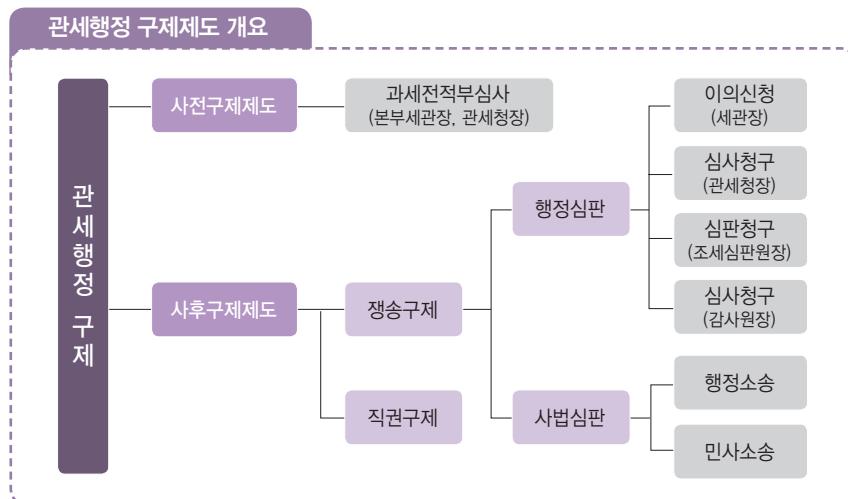
03 관세 종합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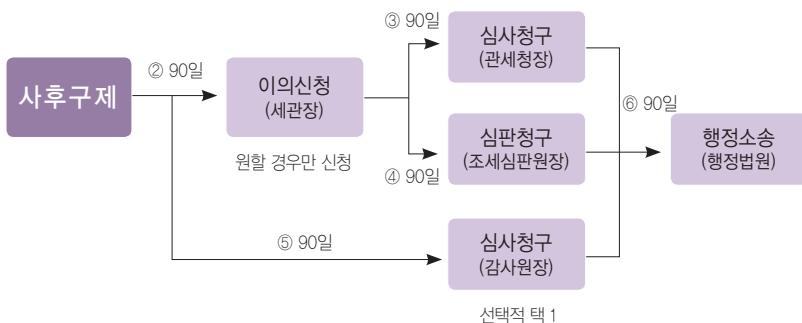
## 01 &gt;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 III 개요

-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현행 제도상 관세관련 행정쟁송 중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제외한 행정쟁송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III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 세관장의 과세전 통지

- 세관장은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3월내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등은 통지생략 가능

###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요건

- (청구기간)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청구기관) 원칙적으로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하며, 예외적으로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관세법 제118조제2항 단서)  
1. 관세청장의 훈령 · 예규 · 고시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른 부족세액 징수  
3.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부족세액 징수  
4. 동일 납세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둘이상의 세관장에게 적부심 청구  
5.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효과

- 세관장은 결정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경정 · 고지 유예 다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유예할 수는 없음

### ▶ 심리와 의결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과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하게 기속력 등 효과 발생
- 청구인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불가. 결정에 따라 해당세관에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불복청구 가능

## ■■■ 심사청구(관세청)

### ▶ 청구인 적격과 청구의 대상

- 심사청구자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이며, 청구대상은 과세관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아님
  - ①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②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 ▶ 청구기간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그 결정기간(30일) 내에 받지 못한 경우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가능

### ▶ 결정기간

-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관세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

#### ▶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이 심사청구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III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 심판청구의 요건

- 청구인 적격과 그 범위, 심판청구의 대상, 청구기간 등은 심사청구와 동일

####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와 의결

-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다음과 같이 소액 또는 경미한 것일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 가능

- ①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것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 나.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국제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을 것
- 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을 것

#### ▶ 결정과 통지

- 심판청구에 대한 원칙적 결정 기한은 90일이며, 조세심판관회의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때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결정서를 당해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

## ■■■ 감사원심사청구

### ▶ 청구인 적격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가능

### ▶ 청구기간

-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세관운영과장)에게 감사원심사청구서 3부 제출

### ▶ 심리와 결정

- 감사원심사청구는 감사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을 거쳐 결정
- 결정은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세청장에게 문서로 통지

### ▶ 심사청구결정에 따른 조치

-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2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

## 02 > 불복청구 주요사례

### III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처분

#### ▶ 처분의 의미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처분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처분을 인정한 사례



[판례 1]

일정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내부에 있어서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의 사실이 있었다거나 그 의사결정의 내용을 담은 서면이 작성·준비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예: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청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정이 거부 내지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없이 정확하게 전달(예: 세번을 변경하는 경정처분)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한한다.(大判 1990.9.25, 89누4758)



[판례 2]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大判 1985.12.10, 84누243)

#### ▶ 처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행정입법, 일반처분과 고시, 행정청의 내부행위 및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사실행위,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등



## [판례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大判 1987.3.24, 86누656)



## [판례 2]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大判 1995.5.12, 94누13794)



## [판례 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그 자진 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서울고등법원 판결 1988.1.13, 87구524)



## [판례 4]

행정각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소관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大判 1992.10.13, 91누2441)

### III 불복청구기간과 관련된 사례

#### ▶ 원칙적인 청구기간

-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관련한 판례

- 교부 · 통지 ·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지는 않음



[판례 1]

1997.12.27.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토요일이라 원고직원들은 퇴근하고 없어 문서실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월요일인 29일 원고의 담당부서에 전달하였다면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로서는 27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옳다.(大判 1999.12.28, 99두9742)



[판례 2]

우편법등의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2.3.27, 91누3819, 92누13127)



[판례 3]

재무부장관이 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필연코 원고들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만한 우편제도상이나 일반실태상의 보장도 희박하다.(大判 1977.2.22, 76누263, 1993.5.13, 92다2530)



[판례 4]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본다.(大判 2001.7.27, 99두9490)

## ▶ “처분이 있는 날”과 관련한 판례

- 처분의 주체·절차·형식·내용상의 요건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함



[판례 1]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에서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1986.8.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자 오락실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당시 원고에게 고지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9.5.26.에 이르러 원고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89.5.30. 제기된 이 사건의 소가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大判 1990.7.13, 90누2284)

## ▶ 예외적인 청구기간

- 아래 사유로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 ① 천재(天災) · 지변(地變)이 있는 경우
  - ② 전쟁 ·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④ 기타 세관장이 위에 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은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大判 1992.7.28, 91누12844)

## ☰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된 사례

### ▶ 화주가 일정기간 품목분류를 일관되게 신고한 상황에서 세번이 잘못되었다 하여 제척기간 내에서 한꺼번에 추징할 경우

- 납세자에게 경제적으로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원가에 소급반영하지도 못하는 등 가장 대표적으로 납세자 불만이 있는 사례임

### ▶ 외국의 입법례

- 개정 교토협약에서 관세당국은 부족세액 등 발견 시 오류 정정 및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부속서 3.39)
- 일본은 우리나라 제도와 동일하며,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제척기간 제도 운영하는 등 일괄 추징은 보편적 추세

2007년 독일 등 EU 국가는 우리나라 수출물품 DMB폰에 대해 품목분류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일괄 추징

- ▶ (적용요건)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장기간 비과세사실 존재 여부가 중요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의견표명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

구 분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법률규정	관세법 제5조	관세법 제6조
적용대상	과세관청	과세관청, 납세자
적용납세자	불특정 납세자	특정 납세자
적용요건	① 장기간 비과세 사실 존재 ② 불특정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질 것 ③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 ② 견해표명신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 없을 것 ③ 견해표명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할 것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경제적 불이익 부과
관청언동	일반성	개별성
입증책임		납세자

▶ 장기간 비과세 사실 존재관련 판례

- 판례에서 ‘장기간’에 대해 정립된 바 없어 사안별로 수입신고 반복정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 “장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 납세자들도 동일 세번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동일 세번 신고확률이 90% 이상일 것을 요구(관세청 심사청구 2009-30호)

다른 업체의 동일물품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개 업체가 10년 동안 계속하여 같은 세번으로 수입통관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 인정 <대법원 80누203호, 1983.4.12.>

## ▶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관련 결정례

- 품목분류 유권해석은 질의된 특정물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유사품목에 대해서는 효력 불인정(관세청 적부심 2001-66호)
- 공무원의 구두 행정지도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결이 있음

### 인정사례 <대법원 88누5280, 1990.10.10.>

세무서직원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세무지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 불인정사례 <대법원 91누7569, 1992.4.10.>

담당공무원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하여 납세자가 이를 믿고 무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같은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할 경우 공적 견해 표명의 성립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판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2001.4.24., 2000두5203)



문의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757

## 03 > 관세 종합 상담

### III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소개

-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에 대한 모든 분야(수출입 통관, FTA, 품목분류, 평가·감면, 특송물품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 보세화물, 환급, 조사 분야 등)에 걸쳐 “one-call, total service”를 제공
- ▶ 상담은 전화,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으로도 가능

### III 전화상담

-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5번(해외 : 82-2-3438-5199)

상담번호	상담분야 내용	상담번호	상담분야 내용
1	FTA	6	수출통관
2	해외직구	7	관세환급
3	우편물, 여행자, 이사자물품	8	보세·화물관리
4	품목분류	9	조사, 외환 및 기타 상담
5	수입통관 및 평가·감면		

- ▶ 전화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며, 야간 자동응답서비스 제공으로 ARS를 통해 사전예약하면 다음날 우선 처리

### III 인터넷상담

- ▶ (상담신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all.customs.go.kr>) > 인터넷상담코너]에 상담 등록 시, 2근무일 이내에 답변
- ▶ (사례검색) [인터넷상담코너 > ① 상담사례조회(Q&A)/② 자주하는질문(FAQ)]를 검색하여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조회 가능

### III 방문상담

- ▶ 전화로 예약(02-3438-5113)한 후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2동 706호

## 부록4

# 인터넷으로 관세자료 찾기

인터넷상에서  
업무 관련 자료 찾는 법







## 인터넷상에서 업무 관련 자료 찾는 법

### ▶ 각종 법령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법령정보 ⇒ 해당란을 클릭 후 검색어 검색

### ▶ 과세환율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조회서비스 ⇒ 주간환율
- 관세청 홈페이지 ⇒ 오른쪽 중단에 관세환율 정보 클릭 ⇒ MORE 클릭

### ▶ 과세가격

-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표 : 관세평가분류원(<http://cvnci.customs.go.kr>) ⇒ 이윤 및 일반경비기준표
- 관세평가예규 : 관세평가분류원(<http://cvnci.customs.go.kr>) ⇒ 관세평가사례

### ▶ 기본적인 수출입통관절차 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수입/수출

### ▶ 수출입요건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요건

### ▶ 개인용품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개인용품

### ▶ 예상세액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오른쪽 중단 ⇒ 예상세액조회 ⇒ 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 세액조회 Click!!

▶ 관세청홈페이지 상의 외화관련 사항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조사/감시 ⇒ 외환범죄조사

▶ UNI-PASS 사용자 등록 및 인증기관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고객지원

▶ 수출이행내역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중단 ⇒ 수출이행내역 조회

▶ 수출입통계 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수출입무역통계 ⇒ 무역통계 조회

▶ 원산지 증명서 신청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수출통관 ⇒ 신청서작성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전략물자 사전판정

-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yestrade.go.kr](http://www.yestrade.go.kr))

▶ UNI-PASS 시스템 장애 발생시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

▶ 민원업무서식

- 관세청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 통합자료실 ⇒ 민원업무편람
- UNI-PASS ⇒ 고객지원 ⇒ 민원안내 ⇒ 민원업무서식

▶ 간이정액환급율표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정보제공 ⇒ 신고지원정보 ⇒ 간이정액환급율(세번부호별 전체년도 조회)

## ▶ 관세환급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환급

## ▶ 환급금지급은행 코드조회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환급 ⇒ 관세환급  
절차 및 신청서작성 ⇒ 환급금지급은행
- ※ 바로가기 <http://www.kftc.or.kr/kftc/data/EgovBankListMove.do>

## ▶ 관세환급사례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환급 ⇒ 관세환급사례

## ▶ 관세사시험 관련 공지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 관세사시험

## ▶ 외국관세청 사이트

- 관세청홈페이지 HOME ⇒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 해외통관정보 ⇒ 외국관세청

## ▶ 외국의 관세율

- 관세청홈페이지 ⇒ 세계 HS 정보시스템 ⇒ 관세율 ⇒ 외국 국기 클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홈페이지(<http://www.globalwindow.org>)  
⇒ 무역자료실 ⇒ 관세율 FAX서비스 ⇒ 서비스신청

## ▶ CRM 서비스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고객지원센터 ⇒ CRM고객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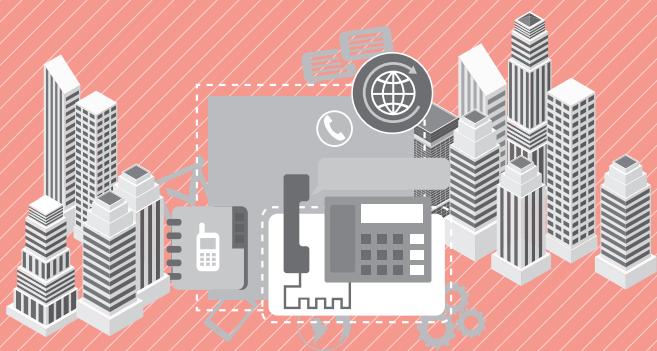
## ▶ 습득물 조회 및 유실물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 ⇒ 고객광장 ⇒ 유실물관리소



부록5

관세·수출입업무 관련  
연락처 모음





 **수출입 · 관세업무 관련 연락처**
**관세청 연락처**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a href="http://call.customs.go.kr">http://call.customs.go.kr</a>	관세행정 상담전반
관세청 밀수, 관세탈루 신고	국번없이 125	<a href="http://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a>	밀수/관세포탈, 마약, 불법외환신고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HELP-DESK)	1544-1285	<a href="http://portal.customs.go.kr">http://portal.customs.go.kr</a>	UNI-PASS,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관세청 세관신문고	080-512-2339	<a href="http://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a>	관세행정불만, 개선건의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05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과세환율, 평가
관세평가분류원 분류1과	042-714-7535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 안내
관세평가분류원 분류2과	042-714-7583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품목분류(01~81, 84류)
관세평가분류원 분류3과	042-714-7556	<a href="http://cvnci.customs.go.kr/">http://cvnci.customs.go.kr/</a>	품목분류(82~83, 85~97류)
중앙관세분석소	055-792-7312~5	<a href="http://ccls.customs.go.kr">http://ccls.customs.go.kr</a>	분석, 과학기술지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720-7400~6	<a href="http://post.customs.go.kr">http://post.customs.go.kr</a>	국제우편물통관
부산국제우편세관	055-783-7412	<a href="http://www.customs.go.kr/busanpostal">http://www.customs.go.kr/busanpostal</a>	국제우편물통관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181~9	<a href="http://customs.go.kr/seoul">http://customs.go.kr/seoul</a>	이사물품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1~4	<a href="http://customs.go.kr/incheon">http://customs.go.kr/incheon</a>	이사물품

**수출입관련 문의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2-3416-5000	<a href="http://www.kctdi.or.kr">http://www.kctdi.or.kr</a>	수출입실적, 무역통계표 교부
한국관세물류협회	02-701-1455~8	<a href="http://www.kcla.kr">http://www.kcla.kr</a>	보세사시험, 보세운송업자 차량 등록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	<a href="http://www.kcba.or.kr">http://www.kcba.or.kr</a>	관세사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a href="http://www.kotra.or.kr">http://www.kotra.or.kr</a>	외국의 관세율, 외국통관제도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02-759-5779, 5793	<a href="http://www.bok.or.kr">http://www.bok.or.kr</a>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상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a href="http://www.nts.go.kr">http://www.nts.go.kr</a>	내국세 문의
한국무역협회	1566-5114	<a href="http://www.kita.net">http://www.kita.net</a>	무역업체조회, 무역상담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a href="http://www.patent.go.kr:7078">http://www.patent.go.kr:7078</a>	위조상품신고센터
특허청 고객센터	1544-8080	<a href="http://www.kipo.go.kr">http://www.kipo.go.kr</a>	상표등록확인, 지식재산권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33	<a href="http://koreapost.go.kr/se/ipo">http://koreapost.go.kr/se/ipo</a>	우편물도착확인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http://www.kosti.or.kr/	전략물자 판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00	http://www.sw.or.kr	무체물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 처리
대한민국 식이군경회	02-782-2263	http://www.kdvo.or.kr	세관물품위탁판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	1577-8863	http://www.komdi.or.kr	위험물 분류, 선적허가 등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1566-2119	http://www.ktnet.co.kr	전자통관서비스, 무역서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	02-6050-3303	http://cert.korcharm.net	원산지증명서, 까르네 발급
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http://www.naqs.go.kr	농산물원산지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44-203-4029	http://www.motie.go.kr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44-203-4045	http://www.motie.go.kr	원산지제도 문의

### 수출입요건 확인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www.mfds.go.kr	약사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96-7404	www.kmdia.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법)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www.kahpa.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	www.kpta.or.kr	표준통관예정보고(약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국번없이 110 044-201-1822	www.mifaff.go.kr	수입허가(양곡관리법), 양허관세추천(보리, 쌀)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www.qia.go.kr	동축산물, 식물 검역
국립농업과학원	063-238-2000	www.naas.go.kr	중금속검사합격(비료관리법)
농협중앙회	02-2080-5114	www.nonghyup.com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쌀보리수출추천(양곡관리법)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www.kfeedia.org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www.kofeed.org	사료수입신고(사료관리법)
한국종자협회	031-760-1620~1	www.kosaseed.or.kr	종자산업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51-400-5717	www.nfqs.go.kr	수산물 검역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114	www.nfrdi.re.kr	이식승인(수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397	www.motie.go.kr	생화학무기법
국가기술표준원	1381 043-870-5600	www.kats.go.kr	안전인증,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전기생활용품안전법), 형식승인확인(계량기기법)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	www.ksafety.kr	전기용품 안전인증면제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www.kcl.re.kr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www.ktc.re.kr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80-808-0114	www.ctl.re.kr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www.katri.re.kr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11	www.ktr.or.kr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FITI시험연구원	02-3299-8000	www.fiti.re.kr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KOTITI시험연구원	02-3451-7000	www.kotiti-global.com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www.kgs.or.kr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1577-8866 044-201-7184	www.me.go.kr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0	www.me.go.kr	야생생물보호법, CITES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www.me.go.kr	수출입허가(폐기물국간이동 및 처리에관한법률, 바젤협약), 수출입신고(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4177	www.keco.or.kr	폐기물부담금(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25, 6755	www.kcma.or.kr	화학물질관리법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114	www.nier.go.kr	소음인증(소음진동규제법), 배출기스인증(대기환경보전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1577-0990	www.ts2020.kr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044-201-3540	www.molit.go.kr	형식승인, 형식신고(건설기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00	www.nssc.go.kr	원자력안전법
한국방사선진흥협회	02-3490-7114	www.ri.or.kr	원자력안전법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www.rra.go.kr	적합성평가인증(전파법)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조사용보팀)	02-761-1101, 1104	www.aerospace.or.kr	수출입공고(항공기 등), 관세감면
한국석유공사	052-216-2114	www.knoc.co.kr	석유수입부과금(석유사업법)
통일부 남북경협과	1577-1365 02-2100-5795	www.unikorea.go.kr	반출입승인 (남 · 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2647	www.police.go.kr	총포, 도검, 화약류수입허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00	www.kdia.or.kr	방위사업법 (일반방산물자수출허가)
방위사업청	1577-1118 02-2079-6449, 6455(수출진흥과)	www.dapa.go.kr/	방위사업법 (주요방산물자수출입허가)
문화재청 공항감정관실	032-740-2921~2	www.cha.go.kr	문화재보호법(비문화재확인서)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136	www.cha.go.kr	문화재보호법(반출허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02-2088-7245	www.kscia.or.kr	수입금납부, 수입확인서 (오존층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안전보건공단	052-703-0500 1644-4544	www.kosha.or.kr	위험기계, 보호구검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02-2669-0791~5	www.kpec.or.kr	추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영상물등급위원회	051-990-7200	www.kmrb.or.kr	등급분류(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게임물관리위원회	051-720-6800	www.grb.or.kr	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관세감면추천확인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2-2052-9300	http://www.kocema.org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02-565-2721~5	http://www.komma.org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02-369-8600	http://www.koami.or.kr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02-576-3472~4	http://www.ksia.or.kr	감면(국내제작곤란) 추천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22	http://mosf.go.kr	감면, 반덤핑(44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14	http://www.koita.or.kr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관세감면)
외교부	02-2100-2114	http://www.mofat.go.kr	외교관용품 확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4	http://mosf.go.kr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인베스트 코리아)	1600-7119	http://www.investkorea.org	외국인투자촉진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6	http://www.mw.go.kr	장애인용품(관세감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8	http://www.mke.go.kr	재수출감면세(관세감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7	http://www.mke.go.kr	재수출감면세(관세감면)

### 양허관세추천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5	http://www.aiak.or.kr	종우, 종돈
대한양계협회	02-588-7651~4	http://www.poultry.or.kr	종계, 조란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http://www.koreadia.or.kr	분유, 연유, 유장, 버터, 유당
국립종자원	054-912-0119	http://www.seed.go.kr	종자용감자, 종자용옥수수, 종자용조, 대두, 사료용근채류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과수종묘협회	041-575-5337	http://www.kkja.org	종묘
산림조합중앙회	02-3434-7114	http://www.nfcf.or.kr	대추, 밤, 잣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064-739-5401	http://www.citrus-cheju.com	오렌지, 감귤
한국대두가공협회	02-712-9431		대두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http://www.milkreplacer.or.kr	기타 배합사료, 보조사료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http://www.kofeed.org	매니옥펠리트, 보리, 옥수수, 대두, 사료용근채류, 참깨유박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http://www.kfeedia.org	골분, 사료용근채류, 육분, 보조사료
대한잠사회	02-783-6071~5	http://ksa.silktopia.or.kr	잠종, 봉나무
한국생사수출입조합	02-785-5915		누에고치, 생사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752-8097	http://www.weaving.or.kr	생사
한국섬유수출입조합	02-528-5151~8	http://www.textra.or.kr	생사
한국전분 · 당협회	031-440-9941		옥수수
농협중앙회	02-2080-5114	http://www.nonghyup.com	천연꿀, 고구마, 매니옥펠리트, 종자용흙밀, 종자용귀리, 맥주맥, 종자용옥수수, 종자용수수, 맥아, 전분, 이눌린, 변성전분, 고구마전분, 인조꿀, 참깨유박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14	http://www.at.or.kr	감자, 양파, 마늘, 고추, 녹두, 팥, 기타서류, 오렌지, 감귤, 목차, 생강, 옥수수, 메밀, 기타가공곡물, 감자분, 대두, 낙화생, 참깨, 인삼, 참기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http://www.kpta.or.kr	옥수수, 매니옥전분, 밀전분, 변성전분등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02-3474-7124	http://www.kcca.or.kr	옥수수, 매니옥전분, 변성전분등
한국제지연합회	02-549-0981	http://www.paper.or.kr	옥수수, 매니옥전분, 변성전분등

## ☞ 할당관세추천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대한석유협회	02-3775-0520~5	http://www.petroleum.or.kr	석유, 역청유
한국프라스틱업협동조합연합회	02-2280-8200	http://www.kfpic.or.kr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02-782-7880		폴리(락트산)
한국생사수출입조합	02-785-5915		생사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02-752-8097	http://www.weaving.or.kr	생사
한국섬유수출입조합	02-528-5151~8	http://www.textra.or.kr	생사

## 부록5. 관세·수출입업무 관련 연락처 모음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철강협회	02-559-3500	http://www.kosa.or.kr	페로실리코망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02-576-3472	http://www.ksia.or.kr	동의박
한국비철금속협회	02-567-2313~4	http://www.nonferrous.or.kr	니켈분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http://www.milkreplacer.or.kr	유장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http://www.kfeedia.org	유장, 귀리(사료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한국주류산업협회	02-780-6412, 6414	http://www.kalia.or.kr	매니옥침(주정용), 조주정
한국사료협회	02-581-5721~33	http://www.kofeed.org	매니옥 침과 펠리트(사료용), 겉보리(사료용), 귀리(사료용), 옥수수(사료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당밀(사료용), 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농협중앙회	02-2080-5114	http://www.nonghyup.com	매니옥 침과 펠리트(사료용), 호밀(녹비용), 맥주액, 겉보리(사료용), 귀리(사료용), 옥수수(사료용), 밀전분, 맥아(맥주제조용), 면실(사료용), 사료용식물, 식물성박류, 당밀(사료용), 동물성유지, 유박, 사료용면실피
한국콘협회	02-571-6082~3	http://www.kocac.org	팝콘용 가공용 옥수수
한국곡물차재가공협동조합	02-2652-5166		가공용 옥수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http://www.kpta.or.kr	옥수수전분
한국제지연합회	02-549-0981	http://www.paper.or.kr	옥수수전분, 매니옥전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02-3474-7124	http://www.kcca.or.kr	옥수수전분
한국제분협회	02-777-9451	www.kofmia.org	밀(제분용)
한국전분·당협회	02-521-7741		가공용 옥수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2-6300-1114	http://www.at.or.kr	가공옥수수(콩그리조제조용)
한국대두가공협회	02-715-1618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http://www.koreadia.or.kr	유당
한국식품산업협회	02-585-5052	http://www.kfia.or.kr	카세인 및 카세인유도체 (커피크리미제조용)
한국비료공업협회	02-552-2811~2	http://www.fert-kfia.or.kr	요소(비료 및 비료제조용)
한국작물보호협회	02-3474-1590~4	http://www.koreacpa.org	농약원제

 **한 · 아세안 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강낭콩(기타용)
국립종자원	054-912-0114	<a href="http://www.seed.go.kr">http://www.seed.go.kr</a>	강낭콩(종자용)
한국주류산업협회	02-780-6404	<a href="http://www.kalia.or.kr">http://www.kalia.or.kr</a>	매니옥
한국제지연합회	02-549-0981	<a href="http://www.paper.or.kr">http://www.paper.or.kr</a>	매니옥전분
한국수산무역협회	02-6300-8901	<a href="http://www.kfta.net">http://www.kfta.net</a>	새우, 새우살, 냉동갑오징어, 새우가공식품

 **한 · EFTA 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051-254-9011~5	<a href="http://www.sunmang-suhyup.co.kr">http://www.sunmang-suhyup.co.kr</a>	냉동고등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스워스치즈

 **한 · 칠레 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 유장, 기타채소, 맥더린, 자두

 **한 · EU 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오렌지, 맥주액, 맥아, 텍스트린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a href="http://www.koreadisa.or.kr">http://www.koreadisa.or.kr</a>	식용 유장, 치즈류, 조제분유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a href="http://www.kfeedia.org">http://www.kfeedia.org</a>	보조사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a href="http://milkreplacer.or.kr/">http://milkreplacer.or.kr/</a>	보조사료

 **한 · 미 FTA 할당추천기관**

기관명 (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631-1114	<a href="http://www.at.or.kr">http://www.at.or.kr</a>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김자(침용 및 종자용 제외), 오렌지, 보리, 맥주액, 맥아, 옥수수전분, 수삼, 백삼, 텍스트린
한국유가공협회	02-584-3631	<a href="http://www.koreadisa.or.kr">http://www.koreadisa.or.kr</a>	식용 유장, 치즈류, 조제분유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a href="http://www.kfeedia.org">http://www.kfeedia.org</a>	사료용 식물, 보조사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02-597-0688	<a href="http://milkreplacer.or.kr/">http://milkreplacer.or.kr/</a>	



##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행일 2017년 8월

발행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481-7973 FAX : (042)481-7989

편집 김용식 심사정책국장  
윤인채 법인심사과장  
유승정 서기관, 곽승만 사무관, 김원석 사무관  
김지영, 김준형, 김 준, 박종호, 김상우, 김동익  
양도열, 손동희, 최형권, 최영주, 선영임, 문경환  
신근호, 김동원, 서태진, 박진민, 정동균, 하원구  
문성환, 황대수, 문현준, 김정희, 박제현, 박형철  
김정미, 이석영, 조영천, 김은득, 심성훈, 고현주  
박형준, 박주영, 이세경

인쇄처 (주)협동문고  
Tel : (02)545-6188

※ 본 「성실신고 가이드북」은 관세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참고용 안내서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전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세 내용에 대하여는 본 책자 내용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관세청 125 콜센터(국번없이 125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